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 -

2003.12

교육인적자원부

발 간 사

교육행정의 일선현장에서 교직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인사관련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는 교직사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교육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의 법령으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사업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력이 소모됨은 물론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인사업무의 일관성, 정확성을 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교육공무원 인사업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그동안의 인사관련 지침이나 주요내용 및 질의회신을 정리하여 지난해에 하나의 책자로 처음으로 묶었습니다. 이번에 법령·지침의 개정을 반영하고 질의응답사례를 보완하여 증보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인사관리 추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 12.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이 수 율

차

- i -

제4장 교육공무원 승진업무	67
제1절 교육공무원승진 평정 개관	69
제2절 교육경력 평정	70
제3절 근무성적 평정	80
제4절 연수성적 평정	91
제5절 가산점	108
제6절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	120
제7절 참고자료	137
 제5장 초빙교원 임용	 167
제1절 초빙교장제	169
제2절 초빙교사제	173
제3절 행정사항	175
 제6장 휴직과 복직	 179
제1절 휴직제도의 개요	181
제2절 휴직업무처리 일반사항	184
제3절 휴직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191
 제7장 복무·상훈·징계	 277
제1절 교육공무원의 복무	279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295
제2절 상 훈	313
제3절 징 계	324
 부록 : 관련법령	 335
• 교육공무원법	337
• 교육공무원임용령	366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395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414

제 1 장

교육공무원의 의의

- 제 1 절 교육공무원의 성격
- 제 2 절 인사 관련 법규
- 제 3 절 공무원의 구분
- 제 4 절 교육공무원의 분류
- 제 5 절 교육공무원의 자격
- 제 6 절 용어 정의

제1장 교육공무원의 의의

제 1 절 교육공무원의 성격

공무원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헌법 제7조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

좁은 의미로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각종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함.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그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적용

제 2 절 인사 관련 법규

법률상충시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다.

헌 법	교육의 권리 및 의무, 균등 교육, 의무교육, 평생교육 등 (제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제31조)
↓	
법 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상훈법 등
↓	
명 령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총리령, 교육인적자원부령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공무원근무상향에관한규칙 등



자 치 법 규	조례 ; 학생수련장설치조례 등 교육규칙 ; 교육위원회규칙 등
------------	--------------------------------------



기 타	훈령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 예규 ; 인사관련예규 등
-----	-------------------------------------

제 3 절

공무원의 구분(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은 임용 주체와 보수지급 주체에 의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기관에 근무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의 업무 성격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직업공무원을 말한다.

이 분류기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경력직의 특정직에 속한다.

경력직	일반직	기술, 연구,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담당 공무원
	특정직	법관, 검사, 외교관, 경찰관, 소방관,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정원직원, 다른 법률에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기능직	기능직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 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 또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비서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
	별정직	국회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국정원기조실장, 각급노동위상임위원, 해양심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 비서, 기타 법령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
	계약직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고용직	단순 노무 종사자

제 4 절 교육공무원의 분류(교육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가 있다.

※ 교육공무원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제 5 절 교육공무원의 자격

1. 교원의 종별과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 교사·실기 교사 및 보건의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2. 교육전문직원의 종별과 자격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법 [별표]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9조)

제 6 절 용어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1. 교육기관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
2. 교육행정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관서
3. 교육연구기관 :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
4. 임용 :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5. 직위 :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6. 전직 :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7. 전보 :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8. 복직 :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9. 강임 :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제 2 장

교육공무원 임용일반

- 제 1 절 임용일반
- 제 2 절 신규채용
- 제 3 절 전 직
- 제 4 절 전 보
- 제 5 절 파 견
- 제 6 절 겸 임
- 제 7 절 강 임
- 제 8 절 직위해제 등

제2장 교육공무원 임용일반

제 1 절

임용 일반

1. 임용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함

2. 임용의 원칙(교육공무원법 제10조)

-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
-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3.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상 결격 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인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미경과자
- 징계에 의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미경과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참조

4. 임명장 또는 임용장

-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
- 대학의 교수 이하의 교원 및 각급학교의 교사의 전보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의 교부로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음

5. 인사 발령(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재확정, 승급, 전출, 전입, 각종위원 임명, 위촉 또는 해임, 해촉시
- 교원 및 각급 학교의 교사전보시, 인사발령통지서의 교부로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음
- 인사기록카드 및 발령대장의 기록·보관
- 인사보고
 - 전보, 승급, 국내 연수, 국외 연수, 국외 출장, 포상, 사망, 징계 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및 파견 근무 사유 발생시 발령일 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

6. 임용일자 소급 금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없음

-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 2 절 신규채용

1.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임용령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 교사임용후보자명단작성규칙

2. 교사의 신규채용

-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하며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함
 - ※ 특별채용
 - 교육공무원법 제9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참조
- 응시연령 : 최초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령 연장)
-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교사임용후보자명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제12조, 교사임용후보자명부 작성규칙 제3조~제8조)
 -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순위 명부 작성 비치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과목별), 특수학교(초등은 과정별, 중등은 과목별), 실기(교과목별), 보건(초·중등별), 사서교사로 구분하여 작성
 - 고순위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
 - 명부의 유효기간 : 작성일부터 1년(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처리 : 유효 기간 연장의 경우 연장 기간내의 새로 시행한 공개 전형 합격자 순위보다 상위에 등재
 - 명부에서의 삭제

- 교사로 임용된 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의 결격 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때
- 임용후보자의 부활
 - 결격사유 해당자 : 삭제된 자로 해당 결격 사유가 소멸된 때, 다만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삭제된 자 : 심신의 장애가 치유된 때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한 의료기관장의 증명 첨부)
 - 부활되는 자의 순위 : 그 명부의 최하 순위
- 임용의 연기 신청 : 병역법에 의한 병역 복무시-복무 만료시
명부의 최상 순위자 보다 상위에 등재
- 신규채용 구비서류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 참조
- 신규채용시의 전력조회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4조 참조

3. 교원의 임용

〔교장의 임용〕

- 교장의 임기 : 4년(1차에 한하여 중임가능)
단, 초빙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함
- 교장의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때 :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함
- 1차 임기를 마치고 정년 잔여 기간이 4년 미만인 자 :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교장으로 재임용(중임)
- 2차 임기가 종료되고도 정년까지 잔여 기간이 있는 자는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면 수업 담당 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원로교사로 임용
-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
 - ※ 제5장 초빙교원 업무처리요령 참고

[보직교사 임용]

- 보직교사의 임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5조 참조
-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함

[기간제교원 임용] : ※ 제5장 계약제 교원 운영 참고**제 3 절 전 직****1. 전직과 승진의 구분**

- 전직 :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
 - 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 ↔ 교육전문직
 - 교육연구사 ↔ 장학사, 교육연구관 ↔ 장학관
 - 초등학교교원 ↔ 중등학교교원
 - 유치원교원 ↔ 초등학교교원, 중등학교교원
- 승진 :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는 임용(교육공무원법 제13조)
 - 교사 → 교감(원감) → 교장(원장)
 - 장학사 → 장학관
 - 교육연구사 → 교육연구관

2. 전직임용시 유의사항

- 장학사에서 교육연구관, 또는 연구사에서 장학관의 직에 바로 임용할 수 없음
- 【이유】 장학관은 장학사, 교육연구관은 교육연구사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장학관·교육연구관과 장학사·교육연구사는 별개의 직위로 규정(교

육공무원법 제2조 참조)하고 있음. 따라서 장학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면서 동종의 직무가 아닌 상위 직위로 승진까지 이뤄지는 임용행위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의한 승진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임

제 4 절 전 보

1. 전보의 정의

- 동일 직위 또는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2. 전보의 시기

- 교육전문직 : 매년 3월, 9월
- 교장, 교감, 교사 : 매년 3월, 9월
- 학기도중 전직, 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3. 정기전보

- 전보기간 : 교육감·교육장이 정하는 기간

4. 비정기 전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상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가능

5. 전보유예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보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 가능



질의 회신 사례

□ 교원전보시 휴직기간의 근속기간산입여부

【질의】 교원인사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제 근속경력 2년 미만의 교사는 시·군간 전보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상태하에서 동일교 근무 1년 후 2년간 육아 휴직을 한 교사의 경우 전보에도 육아휴직 기간중 1년간을 근속경력으로 산입하여 동일교 2년 근무로 보아 시·군간 전보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교원81800-962, 2001.12.24)

임용권자가 정한 교원인사관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고,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5조(전보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는바, 귀직의 견해와 같이 ○○도 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은 임용권자가 해당 직위의 전문성 및 업무효율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임용권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든 교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조직내 부관리지침임. 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에서 전보제한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법적 이익이 아님. 따라서, 전보기간에 휴직기간의 근속경력 산입 여부도 임용권자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

헌법소원 사례

헌법재판소 1990.9.3. 90헌마13全員裁判部

【全羅南道教育委員會의 1990學年度 人事原則(中等)에 대한 憲法訴願】

【판시사항】

교육위원회(教育委員會)의 인사관리원칙(人事管理原則) (중등(中等))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與否)

【판결요지】

가.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행정관청(行政官廳)에 법령(法令)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裁量權行

使)의 준칙(準則)인 규칙(規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規則)에 따라야할 자기구속(自己拘束)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拘束力)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인사관리원칙(人事管理原則)은 중등학교(中等學校) 교원(敎員)등에 대한 임용권(任用權)을 적정하게 행사(行使)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일반적(一般的)·추상적(抽象的)형태로 제정한 조직 내부의 사무지침에 불과하므로,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청구인(請求人)(교원(敎員))의 기본권(基本權)이나 법적(法的) 이익(利益)이 침해(侵害)당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관리원칙 제10조(인사지역 및 근속상한연한). 끝.

제 5 절 파 견

1.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

2. 파견 사유 및 기간(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2년 이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 2년 이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필요한 기간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 1년 이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 2년 이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의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년 6월 이내,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년 이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

3. 파견 절차(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소속인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인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파견권자(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 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파견의 발령은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함
-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

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함

5.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

-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특별연수를 위한 파견외의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제 6 절 겸 임

1. 관련법규

교육공무원법 18조

-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2. 겸임 사유(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 학예·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간
-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
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단
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
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
는 경우

3. 겸임기간

- 2년 이내,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4. 임용방법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겸
임시킬 수 있음
-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함

제 7 절 강 임

1.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8조

2. 강임의 정의

- 동종의 직렬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3. 감임의 요건

- 직제·정원의 변경,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4. 감임의 범위

- 바로 하위 직위로 임용함이 원칙

5. 감임의 순위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 부터 행함

제 8 절 직위 해제 등

1. 직위 해제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1항)	조 치 (동법 제73조의2 2~5항)	보 수 (공무원보수 규정 제29조)
1. (삭제 '73. 2. 5.)	•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자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봉급의 8할
2. 직무 수행 능력 부족, 근무 성적 극히 불량한 자		
3.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 제1항 제2호와 3호 또는 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시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함	• 제3호 또는 제4호 해당자는 직위해제일부터 3월까지 8할, 3월 경과시 5할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위해제 사유소멸시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2. 퇴직

[당연 퇴직]

-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의 결격 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개정 2002.12.18)

[직권 면직]

-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시키는 경우
-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음
 -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 발생시
 - 휴직 기간 만료, 휴직 사유 소멸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되어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징병 검사, 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재영중 근무 이탈시
 -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경우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직위 해제되어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의 사유에 의거 면직시킬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정년 퇴직]

- 교육 공무원 정년 퇴직 연령 : 만 62세
- 정년 퇴직일 :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 정년 퇴직자의 신분 유지 : 정년 퇴직 전일까지 유지
- 직위 해제 중인 자의 정년 : 직위 해제 기간에 불구하고 정년퇴직

[명예 퇴직]

-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 교육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 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교장이 임기 만료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만 62세로 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36조)
- 적용 범위
 - 교육공무원(임용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 제외), 일반직 공무원,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 공무원 등
- 교육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 (교육공무원법 제36조)
- 수당 지급액 산정(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4조 별표)

정년 잔여 기간	산정 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 당시(특별 승진자는 특별 승진 직전)월 봉급액의 반액×정년 잔여 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60+(정년 잔여 월수-60)/2]
10년 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정년 잔여 기간의 계산은 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잔여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의원 면직]

-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 의원 면직자의 신분 유지
 - 면직 발령일 전일까지 신분 유지

[징계 면직]

-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 해임시키는 경우
 -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사 망]

- 사망자 면직 일자 : 사망 다음날
- 사망자의 보고 : 발생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0조)

**질의 회신 사례****□ 사망자에 대한 명예퇴직 대상 여부 질의**

【질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신청일과 동일자에 사망하였을 경우, 명예퇴직 심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교원12100-40, 2003.1.17)

1.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조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해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 신청일과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으로 인한 사망 당일의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음날 00:00시에 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대판1985.12.24 85누531)에 따라 심사대상에 포함됨
3. 다만,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의 자필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망 전에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심사하여야 함

제 3 장

교육공무원 인사업무처리

- 제 1 절 교육공무원 직급별
임용행위별 임용권자
- 제 2 절 교육공무원 인사의
일반원칙
- 제 3 절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안
작성요령
- 제 4 절 제출서류
- 제 5 절 행정사항
- 제 6 절 서 식

제3장 교육공무원 인사업무처리

제 1 절 교육공무원 직급별 임용행위별 임용권자

1.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1999. 9. 30)의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 ① 대통령은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
 4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
 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
 1 교장의 임용
 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 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 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교장임용을 교육감·대학의 장에게 위임

○ 시·도교육청 과장인 장학관의 전보를 교육감에게 위임

[교육공무원 직급별 임용행위별 임용권자]

구 분	신규 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장학관(교육장)	P	P	감	P	M	감	M	P	감	감	P	감	P	P	P
장학관(국장)	P	P	감	P	M	감	M	P	M	M	P	M	P	P	P
장학관(과장)	P	P	감	P	감	감	감	P	감	감	P	감	P	P	P
교육연구관(§29②)	P	P	감	P	감	감	감	P	감	감	P	감	P	P	P
장학관·교육연구관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장학사·교육연구사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교장	P	P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원장,교감,원감,교사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 범례 P : 대통령, M : 장관, 감 : 교육감

※ 장학관(국장·과장)은 시·도교육청 본청의 국장·과장임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의 용어 적용 예시〉

《승진》

[직급승진]

- 교사를 교감으로 임용
- 교감을 교장으로 임용
-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임용

[직위승진]

- 무보직 장학관을 과장(장학관)으로 임용
- 과장(장학관)을 국장(장학관)으로 임용
- 과장(장학관)을 교육장(장학관)으로 임용

《전직》: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
- 교육전문직원을 교원으로 임용
 - 교장·교감·교사 ↔ 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
- 교육전문직원을 종별이 다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
 - 장학사 ↔ 교육연구사
 - 장학관 ↔ 교육연구관

《전보》: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 '가' 과장(장학관)을 '나' 담당관(장학관)으로 임용
- '가' 교육청 교육장(장학관)을 '나' 교육청 교육장(장학관)으로 임용
- 교육청의 교육장(장학관)을 시·도교육청의 국장·과장(장학관)으로 임용
- '가' 학교 교장을 '나' 학교 교장으로 임용

2. 임용권자별 임용사항

가. 대통령 임용사항

▣ 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

- 1) 교감 → 교장(승진 및 특별승진)
- 2) 교장 초빙임용
- 3) 교장 중임
- 4) 교장 초빙계약 임용
- 5) 교육전문직원을 교장으로 전직 임용

▣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1) 시·도교육청 과장 이상 및 직속기관장인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명
(예)·장학관 → 장학관(과장 이상)
·장학관 → 장학관(교육장)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관(직속기관장)
- 2) 시·도교육청 과장 이상 및 직속기관장인 장학관 ↔ 직속기관장인 교육연구관
- 3) 시·도교육청 과장 이상인 장학관 및 직속기관장인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면직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육감·총장 임용사항

▣ 교장전보(교육감·총장)

- 1) 국립 교대·사대 부설학교 교장 ↔ 시·도교육청 소속 교장의 전보
- 2) 국립 교대·사대 부설학교 교장의 대학 내 전보

▣ 장학관·교육연구관

- 1) 장학관의 전보
 - 본청 과장 ↔ 본청 과장·담당관(교육감)
 - 본청 과장 ↔ 지역교육청 국장(교육감)
 - 본청 과장·국장 ↔ 교육장(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육장 ↔ 교육장(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그밖에 같은 직급내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보는 교육감 발령

2) 시·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의 직위해제·휴직·복직(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총무과 소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상의 발령사항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 국립대학, 교육인적자원부 직속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
-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교육공무원 ↔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 교육인적자원부 직속학교 교장 ↔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 국립대학 소속 장학관·교육연구관 ↔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 ※ 국립 교대 및 사대 부설학교의 교감의 교장승진 등은 교원정책과 소관

제 2 절

교육공무원 인사의 일반원칙

1. 인사대상의 선정

- 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직위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함
- 실업계학교 교장·교감은 당해 실업과목 전공자 배치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종 실업학교 장기 근속자 배치
- 여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 배치
- 전직·전보의 원칙
 - *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학기 도중 전직·전보 억제

※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전직 등의 제한) 제1항

- ① 법 제21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삭제 97. 12. 5.)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중 관련 규정

- 제18조의2 (비정기전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8조 (심의사항) ①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
 3. 교육공무원의 승진·전직 및 전보에 관한 기본 방침
 4. 임용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증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전직 또는 전보(신설 97.10.28)
 7. 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교장임용적격자 선정을 위한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 전직·전보 허용

※ 임용예정직위 상응 근무실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예시]

-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교육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 직업교육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실업계고 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 연수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연수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등

2.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 승진 원칙

-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3배수 범위 이외의 자 또는 미등재자 제외
- 다음 경우에는 교육감 의견서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임용 추천
 -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에 의하지 않는 승진의 경우
 -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를 교장으로 임용 추천하는 경우
 - * 정년 잔여기간 6개월 이하인 자는 학교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추천 억제

3. 특수학교 교장의 임용

- 「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 : 유특81801-644(2000.12.29)」에 따라 임용 추천
 - 일반학교 교장과 특수학교 교장 상호간 전직시 임기는 교장의 전보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임기는 변동없음

4. 교장중임심사

- 관련근거 : 1차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에 대하여는 「제2장 교장임용심사절차」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8조에 의하여 중임심사절차 이행
- 인사위원회의 심의

- 개인별 특별한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심의
 - 신체·정신상 건강상태, 학교관리능력상 결함의 유무
 - 기타 교장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 임용서류 제출시 회의록 등 관련자료 첨부

※ · '91. 3. 8 교장임기제 실시 이후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된 자의 교장으로의 재전직 임용은 위 규정에 따라 처리

· 기타 교장 임기 만료 후 중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교장 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72호)] 참조

5. 초빙교장의 임용

○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

○ 초빙교장의 임용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장 자격증 또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④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2장의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원의 초빙]

제12조의4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96.6.3]

6. 교원의 교육전문직 전직(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3조)

- 교육전문직은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로 선발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장·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 교장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별첨 소정 서식)
-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을 위한 전형기준, 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함
- 교사를 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시킬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
 - 장학사·교육연구사는 5년 이상 근속할 수 있는 우수인력으로 선발
- ※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에 근무할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정규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경력이 6년 이상이고 만36세 이하인 자로 함.

7. 교육전문직의 교원 전직(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

- 교육전문직을 신규 교장으로 전직하는 경우,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와 연령, 총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포함) 등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고려(교육감 의견서 첨부)
- 교육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전문직 이전 직위로 전직
 - 교육전문직 2년 이상 근속자로서,
 -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 이상인 자 : 교장으로 전직 가능
 -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17년 이상인 자 : 교감으로 전직 가능
 -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 : 교장·교감·교사로 전직 가능

8.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및 순회교사 활성화

- 교육과정 운영의 연계성 강화와 교원인력 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및 순회교사 운영 적극 확대

- 교장·교감·행정직원 등을 통합운영하여 인력운용 효율화 도모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통합운영학교에는 통합운영되는 학교에 각각 적용되는 교직원배치기준에 의한 교직원을 배치하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④교육과정의 운영, 사무관리 기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 시·도별 표준수업시수 미달 교사는 인근 학교를 순회(겸임) 근무시킴으로써 학생의 과목선택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생략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 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4~5 생략

9. 기타 유의사항

○ 동일인에 대한 중복임용 금지

예) 초빙교장 임용대상자를 중임대상자로 중복임용 등

○ 교육공무원 임용서류 제출 이후 징계의결 요구, 사망 등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관련자료 첨부, 당초 신청을 철회 후 변경 신청

※ 교장임용기간 조건표(62세 정년)

생년월일	임용기간
1942. 3. 1.~1942. 8. 31.	2004. 3. 1.~2004. 8. 31.
1942. 9. 1.~1943. 2. 28.	2004. 3. 1.~2005. 2. 28.
1943. 3. 1.~1943. 8. 31.	2004. 3. 1.~2005. 8. 31.
1943. 9. 1.~1944. 2. 29.	2004. 3. 1.~2006. 2. 28.
1944. 3. 1.~1944. 8. 31.	2004. 3. 1.~2006. 8. 31.
1944. 9. 1.~1945. 2. 28.	2004. 3. 1.~2007. 2. 28.
1945. 3. 1.~1945. 8. 31.	2004. 3. 1.~2007. 8. 31.
1945. 9. 1.~1946. 2. 28.	2004. 3. 1.~2008. 2. 29.
1946. 3. 1.~1946. 8. 31.	2004. 3. 1.~2008. 8. 31.

제 3 절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안(별첨서식 제4호) 작성요령

1. 순 번

- 임용권자 및 임용일자 순으로 작성
- 교장임용은 신규, 초빙, 중임, 전직, 초빙계약 순으로 작성하되 세부내용별 인사발령안 작성순서는 임용신청현황 서식 중 구분 난의 ↓방향의 예와 같은 순으로 작성
- 중임은 별도로 제출하지 말고 초빙 다음에 연결하여 작성

2.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병기하되, 한자는 ()안에 표기
-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성명과 일치
*인사기록카드의 기록이 호적등본과 다른 경우 증빙서류 첨부

3. 현 직

가. 직급 및 직위

- 현 직급 및 직위 표기
예) 교장,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 인근학교 교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본직 명 표기
예) ○○초등학교 교장이 ◇◇중학교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 ○○초등학교 교장

나. 부서

-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는 소재지를 반드시 표기
 - 특별시·광역시 소재 학교의 경우 특별시(또는 광역시)를 표기
 -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중학교
 - 도 소재 학교의 경우 시·군을 표기

- 천안시 ◇◇초등학교, 포천군 □□중학교
- 부서명 : 설치조례 또는 직제에 규정한 명칭 사용
예)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전라남도과학교육원 등
- ※ 시·도교육청은 ‘과’까지,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은 기관명만 표기하되,
소재지는 생략

4. 발령사항 (임용직급, 임기, 임용부서의 지정)

승진 · 중임 · 전직

가. 임용직급

- 【교장】 교장에 임함
-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관에 임함, 교육연구관에 임함

나. 교장의 임기(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47조)

- 교장의 임기는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 교장의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이 임기의 말일이 됨
-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이므로 임용기간 계산시 정년퇴직일이 임기 중일 때는 정년퇴직일까지를 임용기간으로 기재
- 교장은 임기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될 수 있음.
- 교장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된 경우 그 임기의 잔여기간은 자동적으로 소멸
- ※ 임기는 임용 직위 발령 사항 다음에 ()로 표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교육부예규 제272호)] 참조

다. 근무지 지정

【학교】

- 교육감(총장)이 교장의 근무지를 지정
 - ☞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음
 -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시·도교육청】

- 과장급 이상 보직 : ○○○○교육청 ○○국 ○○과장에 보함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 기관장 : ○○○장에 보함
- 지역교육청 국장 : ○○교육청 학무국장에 보함
- ※ 부서명은 설치조례 또는 직제에 규정한 명칭 사용

라. 발령예문

【교장】

- 신규
 - 초(중)등학교장에 임함
 -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 초빙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학교장에 임함
 -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 시·도 ○○학교 근무를 명함
 - ※ 초빙교장은 당해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를 초빙하는 것이므로 근무지를 임용권자가 지정
- 중임
 - 초(중)등학교장에 임함 (중임)
 - (임용기간 : 2004.3.1~2008.2.29)
 -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 초빙계약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04.3.1~2008.2.29)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장학관·교육연구관】

- 시·도교육청 : 과장급 이상의 직위
장학관에 임함
○○○○ 시(도) 교육청 ○○국 ○○과장에 보함.
장학관에 임함
○○○○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에 보함
-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장학관에 임함
○○○○시(도) ○○교육청 교육장에 보함
장학관에 임함
경기도 안양교육청 학무국장에 보함
교육연구관에 임함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에 보함

전 보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1999. 9. 30.)으로,

- 시·도교육청 국장 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의 전보는 교육부장관 발령
- 시·도교육청 과장인 장학관의 전보는 교육감 발령

【시·도 및 지역교육청】

- 직제상 직위가 있는 경우
○○국 ○○과장에 보함. ○○교육청 ○○국장에 보함
- 기타의 직위

○○국 ○○과 근무를 명함

【직속기관】

- 기관장 : ○○장에 보함
- ※ 겸임의 경우
 - 청 ○○국 ○○과장에 겸임함
 - 경기도 ○○초등학교 겸임근무를 명함
- ※ 추서의 경우 (임명장)
 - 교장에 추서함 (2004년 월 일자)
 - * 교장의 편직·해임·파면은 교육감·총장이 행함

의 원 면 직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 년 퇴 직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월 일자로 정년퇴직

명 예 퇴 직

- 교육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월 일자로 당연퇴직

특별승진(명예퇴직)

- 교육공무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교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교감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장 특별승진은 대통령 발령임.

징계의 경우 (인사발령통지서)

○ 파면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 해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에 처함

○ 정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정직에 처함

○ 감봉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감봉에 처함

○ 견책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 발령취소의 경우(인사발령통지서)

○○○로 인하여

○년 ○월 ○일자 ○○○○를 동일자로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1998. 5. 8.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참조

임기만료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

○○시(군) ○○중학교 교 장 ○ ○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에 임함

○○시(도) ○○교육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중임 제외자 또는 포기자의 처리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한 임기를 임용시 명시하였으므로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퇴직하며, 별도의 면직발령이 필요 없음

- 다만, 연금수급 등과 관련하여 사실확인 필요시 교육감이 임용기간 만료 대상자를 기관별로 일괄 확인 통보 가능

【예시】

수신 : ○○ 학교장(또는 ○○○교육청 교육장)

제목 : 교장 임용기간 만료자 통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2. 29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육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소속, 직급, 성명 등을 표시)

5. 임용일

- 정기인사 : 3. 1, 9. 1
- 정년퇴직, 명예퇴직(특별승진) : 학기의 말일
- 수시인사 (결원 보충 인사) : 임명장 교부(전수)일
 - ※ 각 시·도교육청은 문서처리 및 임명장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공문 발송 후 14일 이후로 지정하여야 하며, 임용일이 타 시·도교육청과 다른 경우,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과 협의 후 같은 날로 조정
- 임용일의 소급금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다음 경우를 제외)
 - 사망전일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하여 추서하는 경우
 - 기소일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직위해제 하는 경우
 -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하는 경우
 - 대법원 판결일 : 대법원 판결에 의한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되는 경우

6. 임용권자

- 대통령(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1항·제2항, 제29조의2)
 - 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 교장 특별승진(교감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

- 시·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인 장학관, 직속기관장인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하는 경우
 - ※ 정년퇴직과 당연퇴직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교육감·대학의 장 또는 교육부장관)가 통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 장학관(시·도교육청 국장·교육장)의 전보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소속 교육공무원 ⇔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전보
 - 교육인적자원부 직속학교 교장 ⇔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교장 전보
- 교육감
 - 교장의 전보
 - 시·도교육청 과장급 장학관의 전보
 - 교육연구관의 전보
 - 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임용
 - 원장·교감·원감·교사의 임용

제 4 절 제 출 서 류

1. 정기인사

가. 임용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 통	○교육공무원임용제청서(해당자 전원) 1부 ○교육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 1부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안(해당자 전원) 2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교장 증임·초빙·초빙계약) ○교육공무원임용제청신청서 검토안(총괄) (3. 1. 9 1자 정기인사시) 1부 ○교육공무원 임용제청 현황자료 1부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2조제2항 - 별지 제9호 서식(별첨서식1) - 별지 제8호 서식(별첨서식 2, 2-1) - 별첨서식 4 - 별첨서식 6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승 진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생략, 형광펜 표시) ○ 승진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1부	-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현직, 부서명, 성명(한자)을 공통 구비서류 내용과 확인후 형광펜으로 표시
증 임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전 직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해당자) 1부 ○ 전직동의서(교장의 교육전문직 전직에 한함) 1부 -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현직, 부서명, 성명(한자)을 공통 구비서류 내용과 확인 후 형광펜으로 표시	생략, 형광펜 표시 - 별첨서식 3
교 장 초 빙	<현직교장, 교육전문직에서 초빙시>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생략, 형광펜 표시) <현직교장 이외의 교원 초빙시> ○ 신규임용 제출서류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1의 소정서류 ○ 교장자격추천검정원서(신상명세서, 인사기록카드사본, 신원증명서 포함) - 교장자격추천검정 해당자 ○ 교장자격무시험검정원서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신원증명서 포함)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해당자	

※ 교장자격증 확인은 인사기록카드 확인으로 같음하고, 교육부에 사본 제출 생략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면 직	의원 면직	사직서(자필) 1부	
	직권 면직	○징계위원회 동의서·진단서·직권면직 사유설 명서 또는 직권면직 사유를 증빙할 서류 1부	
	당연 퇴직	○판결문 사본 1부	
	정년 퇴직	○호적초본 1부	- 호적초본에 등재된 성명(한자), 생년월일을 공통 구비서류 내용 과 확인 후 형광펜으로 표시
	명예 퇴직 (특별 승진)	○명예퇴직원 사본 1부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결정서 사본 1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특별승진자에 한함) ○교원자격증사본(특별승진자증 해당자) 1부 ○특별승진 대상자 심사결정서 1부	-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현직, 부서명, 성명(한자)을 공통 구비 서류내용과 확인 후 형광펜으로 표시
	사망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호적초본(제적)증 1부	
추서		○공적조사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소정서식

※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1의 “신규채용”의 소정서류 첨부

- 구비서류 중 사본은 인사담당장학관의 원본대조 확인필
- 의원면직자는 교육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 말미 비고란에 비위사실 관련 여부 기록
(별지 작성하지 말 것)
-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의 “발령사항”은 전술한 4항의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안을 참고하
여 작성하되, 동 조사서 말미 비고란에 담당 과장이 최종 확인 후 서명 날인

나. 임용추천 현황자료

- ① 임용추천현황 : 정기인사 대상자의 인사유형별 현황 작성

▣ 승진 등 (대통령 발령, 정기인사시만 작성)

○○교육청

구 분		3월 1일 또는 8월 1일자							임용권자별			
		승진	증임	초빙	초빙계약	전직	강임	전보	장관	대통령 임명장	발령 통지서	계
교 장	신 규											
	초 빙											
	증 임											
	초빙계약											
	소 계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장 특별승진												
합 계												

▣ 퇴직 등(정기인사시 통계만 제출)

○○교육청

직급별	초 등				중 등				합계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타	소계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타	소계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									
계									

② 결원 현황표

○○교육청

구분	정원 (A)	현원 (B)	결원 (C)	결 원 요 인							
				정년 퇴직	명예 퇴직	의원 면직	전직	학교신설등 정원증원	유보	기타	계(D)
교 장											
장학관											
교 육 연구관											
기 타											
계											

※ 위 현황표는 A - B = C = D의 관계가 성립하여야 함

③ 결원 보충 인사 현황표(전보를 제외하되, 초등·중등 구분 작성) ○○교육청

구 분	결원 (A)	결원 보충 인사						정기인사 (3.1, 9.1자 미보충(A-B))	특별 승진
		승진	초빙	전직	강임	기타	계(B)		
교 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계									

< 작성요령 >

- 결원 현황표의 “결원”과 결원 보충 인사 현황표의 결원은 같아야 함
- 정원은 정기인사 기준일(3.1자 및 9.1자) 현재 확정 배정된 정원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초·중등 구분은 교육청의 운영 정원에 따라 책정)
- 현원은 정원에서 결원요인별 인원수 계를 제외한 인원수임.
(정기인사시 교장→장학관 2명 전직시 “교장”란 현원에서 2명 減, 결원에서 2명 增의 요령으
로 현원, 결원 수를 정확히 산정)
- 임명장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승진, 전
직의 경우에만 해당(임용예정직위를 역임한 경우와 임명장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

④ 연령별 교장 임용 현황(임용일 기준)

○○교육청

구 분	초등					중등					합계
	신규	초빙	중임	초빙 계약	소계	신규	초빙	중임	초빙 계약	소계	
49세이하											
50~54세											
55~59세											
60~61세											
62세이상											
합 계											

⑤ 중임 교장 경력별·임기별 현황

구 분	계	평균 연령	평균 총 교육 경력	임 기 별				
				1년이내	1년~2년	2년~3년	3년~4년	계(A)
초등								
중등								
합 계								

⑥ 중임 제외자 현황

○○교육청

구 분	전체 교장 현원	중임 심사 대상	중임 추천	중임 제외자				계
				초빙 교장	전직	원로교사 임용	중임탈락 (당연퇴직)	
초등								
중등								
계								

※ 작성방법

- 중임 추천 : 실제 중임 발령된 인원
- 중임 제외자 : 아래의 경우와 같이 구분 작성
 - 초빙교장으로 임용
 -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 원로교사 임용
 - 당연퇴직

⑦ 초빙교장 임용 추천자 현황

○○교육청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교육 경력	최종 학력	주요 경력	임기만 료일	초빙 요건	학교경영 계획 요지

⑧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교장 전직 임용 현황

소속	직위	성명	총교육경력	교육전문직 경력	비고

다. 신설교 및 폐교, 분교장 개편현황

○ 신설학교현황

학교 급별	학교명	계획승인 년월일	학급수	위 치	개교 예정일	비고

- 3. 1. 이후 개교 예정 학교로서 이번 인사에 포함된 학교에 한하여 작성
- 신설학교가 규정된 공립학교설치조례 제출

○ 폐교 및 분교장 개편현황

구분	학교명	학교장 성명	위 치	폐교 또는 개편년월일	사유	비고

- 3.1 또는 9.1 폐교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로 이번 인사에 포함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구분 난은 폐교 또는 분교장 개편을 표기

라. 교장승진후보자명부 제출

- 작성시기 : 매년 1월말 현재로 작성(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3조)
- 제출시기 : 작성(조정)시기로부터 10일 이내
- ※ 소속기관별, 과목별 분리 작성하는 시·도는 기관별, 과목별 승진후보자명부 일체를 공문으로 별도 제출

2. 수시(결원보충) 인사

- 일반적인 수시(결원보충) 인사의 경우에는 '가'항의 "(1) 임용서류"만 제출
- 학교신설(개교)로 인한 수시인사의 경우에는 "(2) 임용제청 현황자료"와 "(3) 신설교 및 폐교·분교장 개편현황" 중 해당 자료를 추가 제출

제5절 행 정 사 항

1. 일반사항

- 모든 서식은 A4 용지로 사용
 -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은 71% 축소하여 A4용지에 양면복사
 - 기록이 명료하게 보이도록 유의 : 특히 기록 난 부족으로 덧붙인 부분
- 결원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임용해야 할 직위에 중복·누락 사례 방지
- 교장의 생년월일을 철저히 확인, 임용기간 만료일 계산에 착오 없도록 함(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 비고 난에 담당 과장이 최종 확인 후 서명 날인)
- 업무의 신속·정확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은 임용제청 신청서류와 함께 인사발령 시행문, 발령통지서(개인별)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토록 협조 요망

2. 인사발령 발표시기 조정

- 전보되는 교원이 주택 등 임지에서 거주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매년 3.1 및 9.1 정기인사는 가급적 앞당겨 발표하도록 업무 추진

3. 제출일정 등

가. 정기인사

- 정기인사는 발령일 전월 5일(2/5, 8/5)까지 제출
 - ※ 명예퇴직 특별승진은 전원 20일(1/20, 7/20)까지 제출

나. 수시(결원 보충) 인사

- 임명일은 임명장 교부(전수)일임을 감안, 인사서류 처리 및 임명장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14일 정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
 - 우편접수 및 발송(각각 4일), 결재기간(4일)
 - 임용장 필경 및 행정자치부 협의(2일)

다. 의원면직 신청서(사직서)의 처리

○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한 각종 비위사실 조사 철저

- 사직서의 의원면직사유를 건강악화(간염 등 병명), 채무정리, 해외이주, 사립학교 취업 등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가사사정”, “일신상의 사정”, “개인사정” 등과 같이 모호하게 작성하지 말도록 지도
- 의원면직 신청자의 현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비위 관련 여부 확인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비위 등(’98. 11. 13. 초·중등인사담당관계관 협의회 자료 1쪽 “비위관련 서약서에 포함할 내용” 참조)에 관련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 징구
- 의원면직 신청 후, 발령통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비위관련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직발령절차를 중지하고 해당자 징계절차 진행
- ※ 면직발령의 효과 : 해당 공무원이 면직발령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는 면직발령의 효력은 아직 생기지 않음

제6절 서식(별첨)

[임용제청 신청 관련]

- 가.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서 1부
- 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 조사서 1부
- 다. 교육공무원 전직임용동의서 1부
- 라. 인사발령안 1부 (디스켓과 출력물 1부 제출)
- 마. 3.1자 또는 9.1자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신청서 검토안(총괄)

<서식 1>

3.1 또는 9.1자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신청서 검토안(총괄)

(교육청 초·중등)

※ ☐ 해당있음 : ○
☐ 해당없음 : ×

■ 교장 임용

○ 교감 ⇒ 교장 (승진)

- 대부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하여 추천 () ※ 인원 명
- 명부순위 3배수 범위 내(1배수 범위 밖)에서 교장자격증 취득 순으로 추천 () ※ 인원 명
- 결원 중 일부는 조정 전 명부순위에 의거 추천하고, 잔여인원은 조정 후 명부순위에 의거 추천(계획) () ※ 조정 전 명부, 인원 명, ※ 조정 후 명부, 인원 명

○ 교장 증임

- 전체 교장 현원 ()명, 금회 증임심사대상자 ()명, 심사결과 증임 추천 ()명
 · 교육전문직에서 전직하여 교장 증임이 되는 경우도 포함
- 증임 제외자 ()명 : 초빙(), 전문직 전직(), 부적격제외자 ()명, 포기자 ()명

○ 교육전문직 ⇒ 교장

- 2년 이상 교육전문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 이상자 ()
- 교장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당해 교감과의 연령, 총 교육경력, 전문직 경력 등과 관련 형평성을 고려,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전직 임용 ()

※ · 장학관(교육연구관) ⇒ 교장 : ____명, ※장학사(교육연구사) ⇒ 교장 : ____명

· '91.3.8 교장 임기제 실시 후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된 자의 교장으로의 재 전직 임용 : ____명

○ 교장초빙임용 ()명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순위별 임용 추천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된 자 ()명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순위로 추천된 자 ()명
- ⇒ 2순위로 추천된 자를 임용 추천한 경우에는 개인별 사유서 첨부
- 현직교장에서 ()명, 교육전문직에서 ()명, 교감에서 ()명, 기타()명

○ 교장초빙계약 임용 ()명

■ 교육전문직(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 임용예정직위가 대통령 발령사항인 경우만 해당(교육공무원법 제29조 참조)

○ 교장(교감) ⇒ 장학관(교육연구관)

- 경력, 능력, 연령 등을 감안 전직 임용 () ※ 인원 _____명

■ 특이사항

○ 명부 순위 3배수 범위 이외자 또는 미등재자는 임용에서 제외()

- 재신청 또는 보류() ※ 인원 _____명

○ 대학 부속 초·중등 교장 ⇔ 시·도교육청 초·중등 교장 () ※인원 _____명

○ 대학 소속 교육전문직 ⇔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 ※인원 _____명

○ 기타 특이사항 :

[인사서류 제출 시행문 <서식 2>]

000시 · 도 교육청

수신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원정책과장)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추천)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추천)합니다.

- 덧붙임 1. 교육공무원임용제청(추천)서 1부,
2. 교육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 각 1부(총 부),
3.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안 1부,
4.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5.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신청서 검토안(총괄) 1부,
6. 교육공무원 임용제청 현황자료 1부, 끝.

000시 · 도 교육감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서식 3>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추천)서

① 순번	② 성 명	③ 제 청		④ 현 직	
		직위(급)	부서	직위(급)	부서
	【예시】				
1	홍○○ (洪○○)	교장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교감	서울○○ 초등학교
2	김△△ (金△△)	교장(중임)	”	교장	서울△△ 초등학교
3	정×× (鄭××)	교장(중임)	”	교장	구미시 ○○고등학교
4	허●● (許●●)	장학관 (교육장)	경상북도 ●● 교육청	교장	포항시 △△고등학교
5	이★★ (李★★)	장학관(원장)	○○○도 교원연수원	장학관(국장)	○○○○도 교육청 ○○국

※ A4 용지에 작성

<서식 4-1>

교육공무원 ☐임용 ☐제청 조사서 1.			
발령사항 ○○군·시 ○○초등학교 교감 홍길동 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 . . ~ . .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 대 통 령		별첨서류 1.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임용에 대한 조사서 ☐ 제청			
1. 성명 홍길동 (洪古童)	2. 생년월일 19 . . .	3. 연령 만00세	4. 성별 남 ☐ 여 ☐
5. 학력 : 졸업 6. 자격 : 교장			
법정자격증	소지자격증	법정자격경력	실지근무경력
		년	년
7.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위(이미 승진된 자는 순위에서 제외함, 중임, 초빙, 전직의 경우 작성 불요) 8. 정원 및 현원 (31자 또는 91자 정기인사 관련)			
정원	현원	결원	제청
명	명	명	명
9. 비 고 가. 경력 ① 총교육경력 : 년 월 ② 교장경력 : 년 월 ③ 교감경력 : 년 월 ④ 전문직경력 : 년 월 ⑤ 교사 등 기타 경력 : 년 월 위 확인함 나. 임명예정직위(해당란에 ○ 표) 200 년 월 일 ○역임여부 : (신규, 재임명) 교원인사과장 (인) ○교육전문직의 교원전직시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여부 : (2년미만, 2년이상)			

< 서식 4-2 >

교육공무원 ☐임용 ☐제청 조사서 2			
발령사항 ○○군·시 ○○초등학교 교장 홍길동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 ○○○○시(도)교육감		별첨서류 1.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임용 ☐ 제청 에 대한 조사서			
1. 성명 홍길동 (洪古童)	2. 생년월일 19	3. 연령 만00세	4. 성별 남 ☐ 여 ☐
5. 학력 : 졸업 6. 자격 :			
법정자격증	소지자격증	법정자격경력	실지근무경력
		년	년
7.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위 8. 정원 및 현원			
정원	현원	결원	제청
명	명	명	명
9. 비고 ①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지 않음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지 않음 ③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에 있지 않음 ④ 비위에 대한 연대 책임자가 아님 ⑤ 퇴직사유 : 의원면직 <건강, 채무 등 의원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위 확인함 200 년 월 일 교원인사과장 (인)	

<서식 5>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 동의서

교육부장관(또는 교육감) 귀하

본인은 200 년 월 일자로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될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임기 중 잔여기간이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교육인적 자원부예규 제272호) 제6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됨을 인지하고 전직 임용에 동의합니다.

200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6>

인 사 발령 안

순 번	성 명	현 직		발 령 사 항	발령 일자
		직 급	부 서		
1	○○○ (○○○)	교감	○○광역시 ○○초등학교	초등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4 3. 1.
2	○○○ (○○○)	장학사	○○○○교육청중 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과	중등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4 3. 1.
3	○○○ (○○○)	교 육 연구사	○○어린이회관	초(중)등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4 3. 1.
4	○○○ (○○○)	교장	○○광역시 ○○초등학교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장에 임함.(초빙)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학교 근무를 명함.	2004 3. 1.
5	○○○ (○○○)	교장	○○군 ○○고등학교	중등학교장에 임함.(중임)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4 3. 1.
6	○○○ (○○○)	교장	○○군 ○○여자고등 학교	중등학교장에 임함.(중임)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4 3. 1.
7	○○○ (○○○)	장학관 (교육장)	○○북도○○ 교육청	초(중)등학교장에 임함.(중임)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4 3. 1.
8	○○○ (○○○)	장학관	○○북도○○ 교육청	초(중)등학교장에 임함.(중임)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4 3. 1.
9	○○○ (○○○)	교장	○○시 ○○중학교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에 임함.(초빙)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학교 근무를 명함.	2004 3. 1.
10	○○○ (○○○)	장학관 (교육장)	○○북도○○ 교육청	초(중)등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4 3. 1.

순 번	성 명	현 직		발 령 사 항	발령 일자
		직 급	부 서		
11	○○○ (○○○)	장학관 (교육장)	○○북도○○ 교육청	초(중)등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4 3. 1.
			【이 하	빈 칸】	

※ 인사 프로그램으로 자동 작성

< 서식 7 >

발령 대 장

발령 일자	소속·직위	직 급	성 명	발령 사 항	발령 권자	발령 근거	기재 자 할인	확인 자 날인	비 고
	서울특별시 서울○○ 초등학교	교감	홍길동 (洪吉童)	초(중)등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04. 3. 1.~ 2008. 2. 29.) ○○○○시(도)교육감이 지정 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대통 령	(기재생략)			
			()						
			()						
			()						
			()						
			()						
			()						
			()						
			()						
			()						

※ 인사 프로그램으로 자동 작성

[승진·전직·전보 시행문<서식 8>]

교육인적자원부

수신자 000교육감(교원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부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시(군) ○○초등학교

교 감

○○○(○○○)

초등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시 ○○초등학교

교 장

○○○(○○○)

초등학교장에 임함 (중임).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4. 3. 1.

대 통 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원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대통령 발령통지서<서식 9>]

발령통지서

(직급) 교 장

(성명) ● ● ●

(발령사항)

초(중)등학교장에 임함. (중임)

(임용기간 : 2004. 3. 1. ~ 2008. 2. 29.)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4년 3월 1일

대통령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 알려드립니다.

2004년 2월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발령통지서<서식 10>]

임명장

(직급) ○ ○ ○ (성명) ○ ○ ○ (○ ○ ○)

(발령사항)

→ 발령사항은 균형 있게 서식의 중앙에 위치할 ←
수 있도록 작성 ←

2004년 3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 4 장

교육공무원 승진업무

제 1 절 교육공무원승진 평정
개관

제 2 절 교육경력 평정

제 3 절 근무성적 평정

제 4 절 연수성적 평정

제 5 절 가 산 점

제 6 절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

제 7 절 참고자료

제4장 교육공무원 승진업무

제 1 절 교육공무원승진 평정 개관

1.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규

- 교육공무원법(법률)
-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대통령령)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부령)
-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훈령)

2. 승진평정점의 구성(승진규정 제40조)

- 교(원)감 승진후보자 : 200점 만점(가산점은 별도)
 -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 가산점
- 교(원)장,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 188점 만점(가산점은 별도)
 -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 가산점

구 분		배점	내 용
1. 경력평정		90점	○ 경력평정기간 : 25년(총경력제)
2. 근무성적		80점	○ 평정자 및 확인자 - 교사 :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 교감 : 평정자(교장), 확인자(교육장/부교육감) ○ 2년간 근무성적 평정(최근1년 60%, 2년 이내 40%)
3. 연수성적	교육 성 적	27점 (15점)	○ 평정점 교(원)감⇒27점, 교(원)장 등 ⇒15점 - 자격연수 : 9점 - 직무연수 (당해 직위에서 10년 이내 이수한 60시간이상의연수) · 교(원)감승진대상자 : 18점(성적평정6점+이수실적12점) · 교(원)장, 장학관·연구관 승진대상자 : 6점(성적평정)

구 분		배점	내 용
3. 연수성적	연구실적	3점	○ 연구대회 입상실적 - 전국규모 1등급 : 1점 2등급 : 0.75점 3등급 : 0.5점 - 시·도규모 1등급 : 0.5점 2등급 : 0.375점 3등급 : 0.25점 ○ 학위취득 실적(최대 2점) - 박사 : 1~2점 - 석사 : 0.5~1점
4. 가산점		18.5	○ 가산점 종류(2002년도부터 시행) - 공통가산점 :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근무(1.25점), 연수이수학점(1점 이내) - 선택가산점 (총 15점 이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부여함) <예> 농어촌,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 - 한센병(나환자)자녀학교 근무경력 - 특수학교(학급)·통합학급 근무경력 - 시·도 연구시범학교 근무경력 - 보직교사 근무경력 - 장학사·연구사 근무경력 - 국가기술자격증소지 -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

제 2 절 교육경력 평정

1. 경력평정 방법

☐ 평정의 기초 :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 평정의 시기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 ⇒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

☐ 경력의 종류

○ 기본경력 : 평정시기로부터 20년(총경력제에 의한 평정임)

○ 초과경력 : 기본경력전 5년

- 총경력제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하는 것을 말함

□ 경력별 평정점

구 분	등 급	평정만점	1개월 평정점
기본경력(20년)	가 경력	84.00	0.3500
	나 경력	74.00	0.3083
	다 경력	64.00	0.2666
초과경력(5년)	가 경력	6.00	0.1000
	나 경력	5.00	0.0833
	다 경력	4.00	0.0666

*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

□ 경력의 기간 계산

- 경력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평정에서 제외
- 월수 단위로 계산,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미산입
- 평정대상 휴직
-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 10할 평정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질병 휴직기간
-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 상근이라 함은 1주당 10시간 이상 근무, 비상근은 9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
단, 2000.4.1.부터 근무하는 자는 1주당 상근 15시간 이상, 비상근은 6~14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 5할 평정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 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 ※ '94.9.21.이전에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되어 휴직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0할을 인정함

△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

-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된 징계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경우 포함)의 그 직위해직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함
-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함

□ **평정표** :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

□ **평정결과 보고** : 평정확인자는 10일 이내에 평정대상의 임용권자에게 보고

□ **평정결과의 공개** :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

□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승진규정 제9조관련 별표1)

평정대상자의 직 위	등 급	경 력 종 별
교 감	가경력	1.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나경력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 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평정대상자의 직 위	등 급	경 력 종 별
교 감	나경력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다경력	1.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를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교 사	가경력	1.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나경력	1.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장학사 · 교육 연구사	가경력	1.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2. 각급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나경력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4.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다경력	1.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를 제외한다) 및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5급 이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력(나경력 제2호를 제외한다) 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의 경력

2. 경력평정시 참고 사항

□ 전임강사나 기간제교원 등의 경력평정<교정 81801-1042('98.12.1.)>

○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전임강사나 기간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함

□ 교육공무원 임용전의 병역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제9조 관련)

-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같음
-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방위소집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86. 1. 1.이후에 방위소집 입영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함
 - '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자는 실역복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미필보충역은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다만,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
 - 의무, 전투경찰 대원 등으로 전환복무한 자는 병역법 제24·25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같음
 -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보충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교육경력의 범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내지 제9조)

△ 교육경력

- 각급 학교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교육행정경력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력평정(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참조)

사립학교 교원은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경력은 교육공무원누락경력처리지침과는 관계없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별표1에 의한 경력평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 단, 임용일자가 인사기록카드에 잘못 등재되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카드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드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제3항) ☞ 질의회신 사례 참조

□ 육아휴직 기간의 교육경력평정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승진경력으로 평정

- ※ 최초 1년 기간동안 육아휴직한 후 여교원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평정하지 않음

□ 기간제교사의 경력평정

- 교감평정의 경우 '다'경력, 교사의 경우 '나'경력, 장학사·교육연구사는 '다'경력 ※ 규정 제9조 관련 별표1
- 이전의 '임시교사' 경력 포함

□ 대학의 시간강사 및 조교 경력평정

- 대학교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만 평정하므로 시간강사 및 조교 경력은 평정에서 제외
-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대학조교의 경력은 '다'경력으로 평정
 - ※ 대학조교로 근무한 경력

-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조교의 경력
 - 조교자격기준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1998.12.19, 대통령령 제15942호) 제2조 관련 별표의 자격기준
 - * 자격기준 : 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
 - 임용권자 : 대학의 장(교육공무원법 제26조제1항)

□ 학력인정사회교육기관 근무의 경력평정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표1에 의하여 "등급별 경력종별" 비교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학교와 동등급학교 교원의 경력으로 평정함
 - ※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 제4호 및 제98조제1항제5호

□ 일반 경력

- 승진평정대상이 아님(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만이 대상)
- 여교원의 지원에 의한 군복무 경력은 병역법 제3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징집 또는 소집된 경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직업선택에 의한 경력으로서 평정대상이 아님

□ 소년원 교과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원의 경력인정범위

- ① 정규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② 교과교육소년원에서 ③ 보호소년을 직접 지도한 경력에 한해서만 인정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3호 참조)



질의 회신 사례

□ ROTC장교의 가산근무기간 평정

【질의】 ROTC장학생으로 군복무기간이 4년4개월인 경우 2년의 가산근무기간을 '가'경력으로 하여 임용전 군경력으로 평정할 수 있는지

【회신】 (교원12113-880, '01.11.29.)

교육공무원의 임용전 군경력은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한 기간만을 승진경력으로 산입함. ROTC 장교로 복무한 경력중 가산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기간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원에 따라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으로 임용되어 복무한 기간임. 그러므로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경력은 남녀 모두 교육공무원의 승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력평정방식에 따라서 ROTC 장교 복무경력 중 가산복무기간은 교육공무원의 승진경력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병역법제2조)

※ 경력평정의 기준 :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승진규정 제3조 참조)

□ 면직처분이 무효선고되었을 때 그 기간의 경력평정

【질의】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법원에서 무효선고되어 동 교원이 원상복직하는 경우 면직 무효선고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교직 61010-152, '94.2.14.)

면직처분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면직 후 임용되기까지의 기간을 교원으로 인정해야 함

□ 인사기록상 누락된 경력의 평정 여부

(기본원칙)

【질의】 사립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을 임명한 후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아 누락된 경력의 인정 여부

【회신】 (교직81807-1066, '93.10.26.)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 않은 경력은 평정대상이 될 수 없음. 기록된 경력이라 할지라도 승진규정 제9조 별표1에 규정된 경력에 한하여 평정

(사례1)

【질의】 사립학교 전임강사로 근무하고 관할 교육청에 임용보고가 되지 않은 사립학교 전임강사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신】 (교정07000-502, '99.5.20.)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하여 담당자와 상의바람

□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별강사로 근무한 경력

【질의】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 특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승진규정상 의 교육경력으로 평정 가능한가

【회신】 (교원07000-263, '99.11.9.)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소지한 자격증과 다른 급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며,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규정에 의해 강사 경력은 전임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아니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고등공민학교에 근무한 경력

【질의】 초등자격증 소지자가 발령대기중 ○○고등공민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승진규정상 의 교육경력으로 평정받을 수 있는 지

【회신】 (교원07000-418, '99.12.15.)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고등공민학교는 중등 교육과정이므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무자격 근무임. 따라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임시교원양성소 수료자의 무자격 경력에 대한 평정 여부

【질의】 자격증 미소지자가 중등강사로 근무하다가 임시교원양성소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동 강사경력에 대한 평정은?

【회신】 (교정01210-853, '95.11.13.)

임시교원양성소 수료 후 교원자격증 수여를 전제로 실시한 교원 선발전형에 합격한 자가 양성소 수료 이전에 전임강사나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나'경력으로 평정함

□ 실기교사 경력의 평정방법

【질의】 실기교사의 경력은 '가'경력에 포함되는가

【회신】 (교원07000-348, '99.11.30.)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실기교사는 교사이므로 실기교사의 경력은 '가'경력으로 평정해야 함

□ 임용결격 등 교사에 대한 평정

【질의】 임용결격 등 교사에 대한 사실상 근무기간의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인정 여부

【회신】 (교원07000-36, 2000.1.12.) 및 (교원86010-466, '99.12.28.)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결격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육경력평정 및 각종 연수, 가산점은 인정될 수 없음

□ 공군기술고등학교 근무경력

【질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군기술고등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교직810-89, 1980.3.21.)

일반학 교관의 경우 인정할 수 있음

(이유) 공군기술고등학교는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됐는바,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교육과정 중 일반학 과정은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반학 과정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은 교육공무원

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임용시 문교부 장관의 동의를 요건으로 했고 동학교 졸업자는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임

제 3 절 근무성적 평정

1. 근무성적 평정 규정

- 평정의 기준 :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근무수행태도
 -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매년 12. 31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양식 승진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평정의 시기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평정자 평가시 평가준거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
 -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 평정표 : 교감·장학사 및 연구사 (승진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교사 (승진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근무성적평정요소별 평정점의 조정 (제17조 관련)
 - 명부작성권자(교육감 등)는 필요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정요소별 평정점의 조정 대상 평정요소

교사근무성적평정요소(승진규정 별지 제4호서식) 중 “학습지도”(24점), “생활지도”(16점), “교육연구및담당업무”(16점)

- *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조정할 수 없음
- *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조정할 수 없음

【사유】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지역별 자율정보다는 전 교원을 동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격의 평정요소임

○ 조정점 : 4점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 조정

- * 평정 만점(80점)을 초과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됨

(예)	평정요소	평정점	평정점의 조정	사	유
	교육자로서의 품성	12	12		
	공직자로서의 자세	12	12		
	학습지도	24	20	교사의 생활지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평정점 조정	
	생활지도	16	20		
	교육연구및담당업무	16	16		
	계	80	80		

○ 유의 사항

- 근무성적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평정표대로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관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평정점을 조정하도록 함
- 평정점을 조정할 경우에는 시행 1년 이전에 평정점 조정내역과 사유를 피평정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 평정점의 분포비율

평 어	평정점	분포비율(%)	비 고
수	72점 이상	20	○ ‘양’의 비율은 ‘미’의 비율에 포함할 수 있음
우	64점 이상 72점 미만	40	
미	56점 이상 64점 미만	30	
양	56점 미만	10	

※ 단, ‘양’의 경우 6개월간 승급 제한(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1항3호)

※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

□ 평정자와 확인자 :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함

내역	상한점	합계
- 최근 1년 이내 : 60% (피평정자점수×60/100)	48	80
- 최근 1년 전 2년이내 : 40% (피평정자점수×40/100)	32	

※ 1. 평정점이 없는 연도는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평정함

2.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은 55점으로 평정함

□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 미근무시
 - ☞ 단, 1일이라도 근무시는 평정함
- 평정단위연도의 전 기간을 연수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
 - ☞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같음
- 2월 이상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 ☞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 반영하여 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
 - ☞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
- 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 ☞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 ☞ 다만, 강임된 교육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
- 교육공무원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
 - ☞ 그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

○ 전직된 경우

- ☞ 전직된 당해연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 평정의 채점 :

- 80점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

□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 설치 :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
○ 업무 : 확인자가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 평정시 심의

□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 설치 : 승진후보작명부작성 단위 기관별
○ 구성 : 5~7인(설치기관의 장이 지정)
○ 업무 :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조정

□ 평정결과 공개여부 : 비공개

□ 평정결과 활용 :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

□ 특별근무성적평정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수당 지급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근무평정시 참고사항

□ 남·녀 통합평정(제21조제2항 관련)

- 남·녀 통합 평정이 여교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하고,
○ 능력이 우수한 여교원이 상위의 평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평정으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며,
○ 평정자와 확인자는 남녀차별을 하는 평정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교육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1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에서 제외함. 즉, 휴직·직위해제된 자라 하더라도 당해 평정단위연도 중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해야 함
- 교육공무원이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1년)을 연수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같음하지만 당해 평정단위연도 중 1일이라도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해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의 경우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경력이 있는 교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되기 직전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당해 평정점으로 함

□ 복수교감의 평정

근무성적은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하되, 피평정자가 2인일 경우(복수교감 등) 분포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 중 1인에 대해 성실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 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관련공문】(교직01540-513, '87.9.5.)

학교장이 복수교감 중 1인은 성실도에 관계없이 항상 불리하게 평정하는 예가 있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평정하도록 할 것.

- (1) 근무성적 평정 대상자별로 전체의 합리적인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할 것
 학교경영 실적이나 상벌 사항을 평정기준에 반영할 것
 근무성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만으로 평정점의 변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경력, 연령, 연구 실적 등에 의한 객관적 근거에 의할 것
- (2) 피평정자가 2인일 경우 분포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성실도와 관계없이 「우」 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전직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20조 관련)

- 평정방법 : 전직된 당해연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을 당해 평정으로 함

(예) 초등학교 교사에서 중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자의 근무성적평정점

⇒ 전직 당해연도의 중등학교 근무성적(60%)+전직 전연도의 초등학교 근무성적(40%)

(예) 장학사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자의 전직 당해연도 근무성적평정점

⇒ 전직 당해연도의 교감 근무성적(60%)+전직 전연도의 장학사 근무성적(40%)

(예)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한 자의 전직 당해연도 근무성적 평정점

⇒ 전직 당해연도의 장학사 근무성적(60%)+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55점으로 함

*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은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만을 평정대상으로 함

(예) 교감에서 장학사로 전직한 자의 당해연도 근무성적 평정점

⇒ 전직 당해연도의 장학사 근무성적(60%)+전직 전연도의 교감 근무성적(40%)

□ 승진명부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경우의 평정방법

《 시행문 : 교원81801-425, 2003.07.19. 》

→ 이 평정방법의 시행일 이전에 이와 일치하지 않는 질의·회신은 효력이 없음

(1) 기본원칙

- 평정대상(승진규정 제40조 제2항)

- 명부작성기준일(12.31)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직위에서의 평정점

- 전직한 자의 평정 (승진규정 제20조 제7항)

- 전직된 당해연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평정으로 함

* 장학사, 연구사는 교감, 장학사 또는 연구사의 평정점을 대상으로 함

(2) 근무성적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의 평정점 산출

-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함(승진규정 제40조 제3항)

-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점은 55점으로 함(승진규정 제 40조제3항)

【예시1】 최근 1년전 2년 이내의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

<사례1> 교사⇒장학사로 전직한 경우

- 최근 1년전 2년 이내의 평정점(교사)..... 80점(장학사 근평 없음)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장학사) 70점

(평정방법)

- 최근 1년전 2년 이내의 평정점 : 교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은 장학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 평정대상이 아니므로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의 평정점 산출방식 적용

$$\Rightarrow (55\text{점}+70\text{점})\div 2\times 0.4=25\text{점}$$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

$$\Rightarrow 70\text{점}\times 0.6=42\text{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67점)

△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사례2> 연구사⇒연구관(근무성적없음)⇒교감으로 전직한 경우

- 연구사 근무성적 70점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연구관)..... 없음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교감)..... 80점

(평정방법)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 : 전직되기 전 연구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

$$\Rightarrow 70\text{점}\times 0.4=28\text{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

$$\Rightarrow 80\text{점}\times 0.6=48\text{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76점)

△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연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사례3> 사립학교 교장(교감)을 공립학교 교감으로 특채한 경우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사립 교감)··· 70점(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없음)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교감)····· 70점
(평정방법)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 :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의 평정점 산출방식 적용
⇒ $(55\text{점}+70\text{점})\div 2\times 0.4=25\text{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
⇒ $70\text{점}\times 0.6=42\text{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67점)

△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학교별로 근무성적 평정점, 평정방법, 평정요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성적을 공립학교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예시2】 최근 1년이내의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사례1> 교감⇒연구관⇒교감으로 전직한 경우**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교감)····· 80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연구관) ······없음
(평정방법)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
⇒ $80\text{점}\times 0.4=32\text{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 : 전직되기 전 교감직위에서의 근무성적
⇒ $80\text{점}\times 0.6=48\text{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80점)

<사례2> 교사⇒교감(휴직)⇒교감(복직)의 경우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교감)····· 80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교감 휴직)····· 없음
- (평정방법)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
⇒ $80\text{점} \times 0.4 = 32\text{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
⇒ $(80\text{점} + 0) \div 1 \times 0.6 = 48\text{점}$
 - 평정단위연도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평정점은 0점임
 - 평정단위연도후는 평정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점 산정시 '1'로 계산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80점)

<사례3> 장학사⇒교사(전직)의 경우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장학사)····· 70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교사)····· 80점
- (평정방법)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 : 전직이전 직위에서의 근무성적 적용
⇒ $70\text{점} \times 0.4 = 28\text{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
⇒ $80\text{점} \times 0.6 = 48\text{점}$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76점)

【예시3】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사례1> 교사⇒교감으로 승진한 경우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교사) 70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교사) 80점

(평정방법)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

⇒ $(55\text{점}+0\text{점})\div 2\times 0.4=11\text{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

⇒ $(55\text{점}+0\text{점})\div 1\times 0.6=33\text{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44점)

△ 교감 근무성적 평정시 교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이 아니므로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의 평정점 산출방식 적용

<사례2> 연구사⇒연구관⇒교감으로 전직한 경우

○ 연구관 승진 2년전(연구사) 70점

○ 연구관 승진 1년전(연구사) 80점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연구관) 없음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연구관) 없음

(평정방법)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

⇒ $70\text{점}\times 0.4=28\text{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

⇒ $80\text{점}\times 0.6=48\text{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76점)

△ 전직한 자의 전직된 당해연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평정으로 함

<사례3> 사립 교장(교감) ⇒ 교감으로 특채한 경우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사립교감)··· 승진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없음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사립교감)··· 승진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없음
(평정방법)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

$$\Rightarrow (55\text{점}+0\text{점})\div 2\times 0.4=11\text{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

$$\Rightarrow (55\text{점}+0\text{점})\div 1\times 0.6=33\text{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44점)



질의 회신 사례

□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

(사례 1)

【질의】 교감승진 1년 미만인 교감의 당해 직위 근무성적 일부가 없는 경우의 평정 방법

【회신】 (교원 07000-370, '99.12.6.)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 전의 평정점은 55점으로 함

(사례 2)

□ 평정단위에 관한 질의

【질의】 5~8명의 교사가 근무하는 단설 유치원의 경우 평정단위는?

【회신】 (교원 07000-91, 2000.1.26.)

승진규정 제18조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설 유치원의 경우라도 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역별 또는 학교별로 평정가능함

제 4 절 연수성적 평정

1. 연수성적 평정일반

- 평정의 구분 :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
- 평정시기 : 매년 12월 31일 기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시기

2. 교육성적 평정

- 평정방법 :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

【 직무연수성적 평정 】

- 평정대상 직무연수 ⇒ 당해 직위에서 10년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대상으로 함(180시간, 1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도 1회로 간주함)

“당해 직위” : 피평정자의 평정대상 직위로서 승진규정 별표1에 의해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를 말함

- * 교감을 평정하는 경우, 교감 직위에서의 연수실적만을 평정 대상으로 함
- *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육전문직에서의 연수실적도 평정대상이 됨
- * 장학사 · 교육연구사는 교감, 장학사 · 교육연구사에서의 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함
- * 교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사의 직위에서 이수한 교감의 직무연수실적 ⇒ 평정대상이 아님

계산 방식 :

【교장, 장학관 ·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자】

- 평정점 ⇒ 6점 만점(직무연수 1개를 평정)
- 평정방법 ⇒ $6점 \times \frac{\text{직무연수성적}}{\text{직무연수성적만점}}$

【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자】

- 평정점 ⇒ 18점 만점(직무연수 3개를 평정)

- 평정방법 ⇒ $6\text{점} \times \frac{\text{직무연수성적}}{\text{직무연수성적만점}} + 6\text{점} \times \text{직무연수횟수}(2\text{회에 한함})$

※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평정.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않음

※ 연수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

-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
-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
- 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

<예시>

* 교감의 직위에서 이수한 60시간 직무연수이수성적 90점

$$\Rightarrow 6\text{점} \times \frac{90}{100} = 5.4\text{점}$$

* K교사의 직무연수평정(평정일 : 2003.12.31)

- ☞ 이수실적 : 1993.7.30 60시간 직무연수이수(100점)
1995.7.30 60시간 직무연수이수(95점)
1998.7.30 120시간 직무연수이수(90점)
2001.7.30 60시간 직무연수이수(96점)

☞ 평정대상연수 : 교육성적평정 ('01년 이수성적)
이수실적평정 ('95, '98년 이수실적)

* '93년 이수성적은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성적이나 평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평정대상에서 제외됨

$$\text{☞ 평정점 계산 : } 6\text{점} \times \frac{96}{100} (\text{'01년 연수성적}) + 6\text{점} \times 2\text{회} (\text{'95, '98실적}) = 17.76\text{점}$$

☞ K교사의 직무연수평정점 ⇒ 17.76점

※ 참고사항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직무연수 교육성적은 모두 평정대상이 되나,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한 경우 교육성적평정 대상 직무연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도 있음(제32조제2항 단서규정 참조)

〈예시〉

- 전교원 ⇒ 연수이수학점제에 의해 가산점이 부여된 실적을 제외함
- 중등학교 교원 ⇒ 전공교과 관련 직무연수만을 교육성적평정대상으로 함
- 교육성적평정대상 연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직무연수성적을 대상으로 함

○ 필요시 동일과정에 대한 연수성적을 중복평정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음
(단, 2000년 이후부터)

<근거> 동일과정 연수를 반복이수하지 않도록 지명권 철저 이행
(2000년도 교원연수운영방향 3-나-(2)항)

【 자격연수성적 평정 】

□ 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

- 교장 승진후보자명부 : 교장자격연수성적
- 교감 승진후보자명부 : 교감자격연수성적
-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 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성적 중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 성적

□ 계산방식

- 자격연수성적평정점 = 9점 - (연수성적만점 - 연수성적) × 0.05

※ 교육성적이 각각 만점의 8할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함

□ 방통대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석사학위취득실적으로 1정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

성 적	평 정 점
A학점이상	만점의 90퍼센트
B학점이상	만점의 85퍼센트
D학점이상	만점의 80퍼센트

※ 참고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교육대학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실적으로 1급정교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외에는 학위취득실적을 자격연수성적으로 인정하여 평정할 수 없음
- 자격연수성적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 2 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

3. 연구실적 평정

- 평정방법 :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
- 평정점 : 3점(연구실적 3점 중 학위취득실적 평정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 】

- 평정대상 실적 : “당해 직위” 또는 “전직이전의 직위”에서의 연구대회 입상실적 (1년에 1회의 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
(예)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실적
장학사·교육연구사⇒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직위에서의 실적
초등교사에서 중등교사로 전직한 자⇒초등학교 재직시 입상실적도 포함

□ 평정대상 연구대회

- 전국규모의 연구대회 :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연구대회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전국규모의 연구대회] ('03.12.1현재)

- △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대한체육회)
- △ 전국교육자료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교육인적자원부)
- △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교육인적자원부)
- △ 전국과학전람회/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과학기술부,국립중앙과학관)
- △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특허청)
- △ 과학교육연구대회(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 △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한국농업교육협회)
- △ 교육방송연구대회(한국교육방송원)
- △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ICT활용교육연구대회(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종전 “전산개발경진대회”의 대회명칭 변경
- △ 특수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 전국열린교육연구발표대회(열린교육학회)
- △ 올해의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교육인적자원부)
- 시·도규모의 연구대회 : 시·도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 연구대회 입상 등급별 평정점

등 급	전국규모	시·도규모	
		‘97.7.9.이후	‘97.7.9.전
1등급	1.00점	0.5 점	0.5 점
2등급	0.75점	0.375점	0.250점
3등급	0.50점	0.25 점	0.125점

※ 공동작의 평정(‘97.7.9.이후 연구대회 입상실적)

- 2인 공동작인 경우 각각 그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
- 3인 공동작인 경우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
- 4인 이상 공동작인 경우 각각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

☞ ‘97. 7. 9. 전에 입상한 공동연구 : 입상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평정

※ '97.7.9.전에 입상한 실적은 종전 승진규정('96.2.22., 대통령령 제14920호)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

□ **입상등급이 없는 연구실적의 구분**(인사관리규정 제9조제3항)

- 최상위 입상자⇒1등급
- 차상위 입상자⇒2등급
- 기타 입상자 또는 입상 등급이 없거나 구분할 수 없을 때⇒3등급

※ **참고사항**

- '94. 9. 22. 이후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임용되어 그 경력이 있는 교감의 연구실적은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연구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입상한 실적에 한함

【 학위취득실적 평정 】

□ **평정대상 실적**

- “당해 직위” 또는 “전직이전의 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
(예)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실적
장학사·교육연구사⇒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직위에서의 실적
- 단, 자격연수대상자지명을 위한 순위명부 작성 시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한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음

□ **평정점** : 연구실적 총점 3점 중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박 사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위	2 점
	기타의 학위	1 점
석 사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위	1 점
	기타의 학위	0.5 점

-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 2개 이상을 모두 연구실적으로 평정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 명부작성권자가 정함

-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학위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한 경우를 의미함

※ 참고사항

- 학위취득은 당해 직위 또는 전직되기 이전의 직위에서의 실적을 인정하며 평정시기로부터 기간 제한 두지 않음
-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학위취득실적
 - * 연구실적은 당해 직위 또는 전직되기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것을 인정하므로 교원 임용전의 학위취득실적은 불인정
- 주간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실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는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은 소속 장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중 대학원을 수강하여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될 수 없음

 - *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방법(자료)

학교장의 허가(승인)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결재공문, 근무상황부 원본 또는 사본 등 주간대학원 과정 수강이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학위논문이 없는 학위취득실적의 평정

학위취득실적평정은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평정대상이 됨

 - * 석사학위중 전문학위는 학칙에 의해 학위논문제출을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음(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제1항 참조)



질의 회신 사례

□ 연수이수 및 자격취득 시기에 따른 연수성적 평정범위

- 자격연수 성적 평정 대상은 평정시점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연수 성적이며, 직무연수의 경우 평정대상은 평정시점 이전에 연수과정을 이수한 직무연수 성적임 (교원81801-106, 2000.1.29.)

□ 임용결격 등 교사가 취득한 연구실적

【질의】 임용결격 등 교사에 대한 사실상 근무기간 중에 이수하거나 취득한 연수 실적 및 가산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교원07000-36,2000.1.1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종연구실적 및 가산점은 인정될 수 없음

□ 1급정교사 자격취득후 취득한 학위취득 실적을 자격연수로 대체

(사례1)

【질의】 1급정교사 자격취득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 이수성적을 1급정교사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교정 07000-156,'99.2.19.) 참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의거 교(원)감과정연수 응시 대상자 순위 명부작성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로 정하고 있어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할 수 없음

(사례2)

【질의】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으로 1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시 성적을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지

【회신】 (교정07000-151,'99.2.19.)참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의거 교(원)감과정연수응시 대상자순위명부작성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로 정하고 있어 자격연수 성적으로 중복 또는 대체하여 평정할 수 없음

□ 10년 이내 연수의 기한

【질의】 '89.8.12~22에 이수한 직무연수 성적은 '99.12.31 평정시 평정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교정07000-506,'99.5.24.)

'89.8.12~22에 이수한 직무연수 성적은 '99.8.23자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2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1급정교사 자격을 석사학위로 취득한 후 교도(전문상담)교사자격연수를 받은 경우

【질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로 1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상담교사자격연수 성적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의 자격연수 성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연구실적으로 평정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교원07000-33,'99.9.7.)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연수성적 평정시 전문상담교사자격연수 성적을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받는다면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연구실적으로 평정받을 수 있음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성적 활용

- 【질의】 1. 전문상담교사(초등) 양성과정의 성적을 특수학교 교감자격연수대상자 명부 작성시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가능한가의 여부
2. 전문상담교사(특수) 양성과정의 성적을 초등학교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명부 작성시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가능한가의 여부

【회신】 (교원07000-211,2001.03.26.)

전문상담교사(초등) 양성과정의 성적은 초등학교 교감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대상자 명부 작성시에만 자격연수로 평정받을 수 있으며, 전문상담교사(특수) 양성과정의 성적은 특수학교 교감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대상자 명부작성시에만 평정받을 수 있음

- 【사유】 교감 연수대상자 명부의 작성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준하도록 규정(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5항)하고 있고 자격연수 평정대상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 성적을 평정대상으로(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2조제3항) 하고 있음

□ 부전공자격연수성적의 평정대상 가능성

- 【질의】 부전공자격연수성적을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작성시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가능한가의 여부

【회신】 (교원07000-542, 2003.09.23.)

교감자격연수대상자지명을 위한 순위명부 작성시 교육연수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은 1급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이며, 부전공자격연수성적은 평정대상이 아님

□ 학위과정 전문상담교사자격성과 특수교사자격성적(교원12100-528, 2003.9.9.)

- 【질의1】 초등1급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을 이수하고 전문상담교사(초등)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평정할 수 있음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명부는 자격별(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교감 등)로 작성하여야 하고, 교감 연수대상자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준(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5항)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명부작성 시 자격연수 성적평정은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 또는 '전문상담교사(초등)자격연수 성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불문하고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성적은 평정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질의2】 초등1급정교사의 경우 특수대학원을 통한 특수교사자격취득성적을 초등학교교감자격연수대상자지명을 위한 명부작성시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할 수 없음

(이유)

전문상담교사자격을 포함한 교원의 자격을 학교급별, 자격종별, 표시과목별로 세분화하여 규정(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한 것은 각 자격별로 일정기간의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고유한 전문영역이 중시되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초등1급정교사자격연수과정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 관련 규정상 별개인 특수대학원을 졸업하여 취득한 '특수교사' 자격 취득성적을 초등1급정교사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하여 평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석사학위에 대한 연구실적 평정

- 현직교원이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간 대학원을 수강한 후 취득한 학위나, 유학휴직(출국) 이외의 방법으로 국외 대학(원) 수강 후 취득한 학위 등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함
-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는 출국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육부 등록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상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관련법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함 (교정 81801-427, '99.5.6.)

(사례1)

【질의】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주간에 수업을 하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동 학위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동건과 관련하여 현직교원이 수학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학원까지의 거리는?

【회신】 (교직01101-788, '87.12.22.)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수강하여 취득한 학위논문은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없다고 보며, 수학가능한 대학원까지의 거리는 평정권자가 판단할 일로 사료됨

(사례2)

【질의】 주간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인정 요구 및 인정방법

【회신】 (교원81801-152,2000.1.10.)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실적으로 평정하기는 무리가 따름. 주간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람

(사례3)

□ 주간대학원 학위실적 평정

【질의】 교육공무원의 주간대학원 학위 취득실적의 평정을 위한 정당한 복무관리 입증과 연구실적평정

【회신】 (교원07000-60, 2002.1.23.)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정당한 복무관리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구비하여야 평정받을 수 있음.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임시교사의 복무관리도 정규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민원인이 답임을 하지 않았거나 학교장의 승인으로 수학했다는 정황 등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는 없음. 주간대학원의 학위취득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방법이 필요함

□ 논문없는 학위취득실적 평정

【질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있는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1점의 연구실적평정대상이 되는 바, ○○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에 의거 논문을 쓰지 않고 논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하여 취득한 석사학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교원85010-667, 2001.08.3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 규정에 의거 학위취득실적평정은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법령과 대학원 학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위는 평정대상이 됨

□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의 평정

【질의】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평정가능한가

【회신】 (교정81800-46, '98.1.21.)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 2개 이상의 석사학위 모두 학위취득실적평정의 대상이 됨

□ 연구대회 입상실적 인정시기

【질의】 연구계획 수립·연구연도와 입상 연도가 다를 경우나 연구연도와 수상연도가 다를 경우 평정기준은?

【회신】 (교정 81801-1042, '98.12.2.)

입상(수상)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함

□ 초등교사와 병설 유치원교사 겸임시 취득한 연구실적

【질의】 초등교사로 재직하면서 병설 유치원 교사를 겸임한 경우, 동 겸임기간 중 유치원 교육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실적을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연구실적으로 평정가능한가

【회신】 (교정07000-53, '96.1.26.)

승진규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인 바 동 연구실적은 유치원 겸임교사로서 취득한 것이긴 하나 본직은 초등학교 교사이므로 평정대상이 된다고 봄

□ 유치원교사에서 초등교사로 전직한 교원의 연구실적

【질의】 초등교사에서 유치원 교사로 전직한 다음 다시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교사가, 유치원교사로 재직하던 중('82.6월~'89.8월) 취득한 연구실적을 초등교사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교원81800-218, '99.10.29.)

승진규정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전직하기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입상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함. 그러므로 전직되기 이전의 직위인 유치원 교사시에 취득한 연구대회 입상실적을 승진규정 제35조의 적용을 받아 연구실적으로 평정받을 수 있음

□ 교사 임용 전 학위취득 실적 평정

【질의】 교사로 임용 전 취득한 석·박사 학위는 연구실적으로 평정가능한가

【회신】 (교정07000-353, '99.4.14.)

승진규정 제36조 규정에 의해 당해 직위나 전직된 경우 직전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고 있으므로 임용 전 학위취득은 평정대상이 안됨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고 있는 경우

【질의】 현직교사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연구실적 평정방법은?

【회신】 (교원07000-210, '99.7.23.)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 규정에 의해 교원이 당해직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하나만 평정되고, 석사학위가 2개인 경우 2개 모두 인정됨

□ 교원노조주최 연구대회 관련

【질의】 교원노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의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교원81801-302, 2002.05.08.)

교원노조 주최 연구대회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연구대회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규모연구대회 개최기관을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이라고 규정한 것은 연구

대회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만이 시·도규모연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며, 교원노동조합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수의 또는 다수의 교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원들의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임

□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연구실적 인정 관련

【질의】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상한 경우, 이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제3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부칙 제2조(교육부훈령 제484호, '91.9.20. 개정)에 의거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교정07000-266, '95.3.3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연구대회의 범위에 '91.9.20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한 대한민국미술전람회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 규정의 개정으로 동 전람회가 교육부장관 인정 연구대회범위에서 제외되는 한편, 동 개정규정 부칙 제2조에 이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의한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는 당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하였으나 '86년부터는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바, 주최기관이 변경되었기는 하였으나 동 전람회의 성격 등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91.9.20 이전에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상한 실적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7조제3항 제2호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부칙 제2조(교육부훈령 제484호, '91.9.20.개정)에 의거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으로 인정, 연구실적 평정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과학전람회 지도교사 연구실적 인정

【회신】 (교정12100-699, '96.8.19.)

'96년부터 전국과학전람회에 입상한 학생작에 대하여 이를 지도한 교사에 대한 연구실적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를 승인 하였으므로 1996년 전국과학전람회 지도교원부터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됨

□ '86.4.26.전의 교과서 집필 실적의 연구실적인정

【질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86.4.26.)이 있기 전의 교과서(1종도서) 집필 실적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정할 경우 몇 등급으로 인정할 것인가?

【회신】 (교원07000-313, 1999.11.20.)

교육공무원승진규정('86.4.26. 대통령령 제11891호) 시행 전 교과용 도서집필 실적은 당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27조 제 3항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 10조 제 1항 제 2호에 의거하여 전국규모 3등급의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있음

□ 동반휴직기간 중 학위취득실적

【질의】 교원이 동반휴직 기간 중에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사기록변경 신청 및 연구실적으로 평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교원07000-739, '02.12.3.)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동반휴직기간동안 학위취득을 했다면, 동반휴직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적법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변경(추가)등재 신청이 가능함. 아울러 적법한 학위취득실적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됨

□ 2개 석사학위취득실적 평정시 인정범위(교원B1B01-17, 2003.01.09.)

【질의1】

연수성적평정에서 학위취득실적평정점은 최고 2점까지 평정하는 바, 중등교사가 A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B대학교 교

육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때, 2개의 학위가 모두 동일 전공인 ○○교육(학위논문 제목은 다름)을 전공한 경우 2개 모두가 평정 대상이 되는지

【답변】

동일한 전공의 석사학위는 평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이유)

학위취득실적 평정 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 위 중 하나를 평정(승진규정 제36조) 하도록 규정한 것은 박사학위는 석사학위를 전제로 한 학위취득실적이므로 중복평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직무연수 지명시 동일연수의 중복을 지양(교원연수운영 방향, '02.2.)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위취득실적은 논문실적 평정이 아니라 학위과정을 통해 교직 직무능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적 평정 제도이므로 동일한 전공으로 취득한 2개의 석사학위취득실적은 그 중 1개의 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2, 3】

중등교사가 2001.8.22. A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2.2.22. B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대학원 수강 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 2개의 학위실적이 각각 평정대상이 되는지, 또한 수강 기간 중복을 인정한다면 얼마까지 중복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대학원 학위과정이 중복된 학위취득실적은 경력의 중복기간이므로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평정하여야 함

(이유)

학위과정이 중복된 학위취득실적 인정과 교원의 승진평정은 별론의 사항이므로, 동 실적에 대한 평정은 승진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어야 함. 따라서 학위취득실적 평정도 1년에 1회의 입상실적만을 평정하는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방식(승진규정 제37조제2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취득 실적은 경력으로 간주되는 실적이므로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그 경력을 인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 참조)하여야 하기 때문임. 또한, 전

공분야의 연구에 충실한 참여와 탐색이 필요한 학위과정의 중복 수강은 교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상충될 우려가 있음

제 5 절 가 산 점

1. 가산점 평정

- ☐ 평정대상 가산점 : 당해 직위에서의 가산점 평정대상 실적 또는 경력
- ☐ 평정시기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
- ☐ 평정경력기간 계산 : 월수를 단위로 계산(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버림)
- ☐ 전직한 자의 가산점 : 전직이전의 직위 중의 실적 또는 경력 모두 인정
 - *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사유에 한함
 - * 교육전문직원 :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함

【 공통가산점 】 ⇒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적용

☐ 공통가산점 평정항목

평 정 항 목	평 정 점		비 고
	월평정점	상한점	
교육부장관지정 연구학교 (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	0.021점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경력	0.021점	1.25점	
직무연수 실적	학점당 0.01점	1년 0.08점, 총1점 이내	명부작성권자가 연도별 상한점 및 총상한점을 정 할 수 있음

※ 직무연수이수실적에 대한 가산점 평정

- 평정대상 연수 : 직무연수(인사기록카드에 직무연수실적으로 등재된 학점)
 - * 학위취득실적,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 실적 학점은 평정대상이 아님
- 평정상한점 : 시·도별 연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상한점(0.08점 이내) 및 총상한점(1점 이내)을 정함
 - * 1학점은 15시간연수임
- 평정점 부여시기 : '98년 이후 이수한 직무연수학점은 가산점을 정하여 반드시 부여하되, '97년까지의 이수학점에 대한 평정점 부여는 시·도별 연수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선택가산점 】

- ☐ 평정항목 : 시·도별로 평정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함
- *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예> 수업활동우수교사, 생활지도우수교사 등

선택가산점 평정 항목

평 정 항 목	평 정 점		비 고
	월평정점	상한점	
1급정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자율	자율	
장학사·연구사 근무경력	자율	자율	
도서·벽지근무경력	자율	자율	
한센병환자자녀학교, 학급담당경력	자율	자율	
읍·면·동지역의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자율	자율	
특수학교·특수학급·통합교육학급 근무경력	자율	자율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포함) 근무경력	월0.01점 이내	자율	
국가기술자격증, 해기사면허증 소지자	자율	자율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	자율	자율	

□ **평정점** : 평정항목별 평정점의 총합계가 15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목별 평정점을 자율적으로 정함

□ **규정공개** :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평정항목 및 점수기준을 평정기간 시작 전에 정하여 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함(제42조 제4항)

□ **가산점의 중복 평정 금지**

1. 연구학교 근무경력 중복
2. 보직교사 근무경력과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담당 경력 중복
3. 보직교사 근무경력과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 중복
4.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근무경력과 도서벽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중복
5. 도서벽지 학교 근무경력과 한센병환자자녀학교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 중복
6. 도서벽지 학교 근무경력과 특수학교 근무경력, 특수학급 또는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 직접 담당한 경력 중복
7. 한센병환자자녀학교 근무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 담당 경력과 특수학급 또는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 중복
8. 농어촌학교 근무경력과 도서벽지 학교 근무경력 중복
9. 농어촌학교 근무경력과 한센병환자자녀학교 근무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자녀 학급 담당 경력 중복
10. 농어촌학교 근무경력과 특수학교 근무경력, 특수학급 또는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 직접 담당 경력 중복
11.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의 중복

※ **중복평정 금지** :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중복평정금지규정의 종전과의 차이**

-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의 가산점 부여 및 보직교사경력과의 중복평정 금지 조항 신설됨
- 특수학급 직접 담당 경력과 보직교사 근무경력 중복평정 금지 조항 삭제됨
-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의 중복 평정 금지 조항 신설됨

□ 가산점 평정의 경과조치

- '97.12.31.까지의 실적 및 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
 - '97.12.31.까지 취득한 가산점은 이전 승진규정(대통령령 제14920호, '96.2.22.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함 (승진규정 부칙 제5조)
 -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을 평정함
 - ※ 동등급 직위 :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 교원의 경우 근무교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시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직위
- '98.1.1.이후의 실적 및 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
 - '98년이후 취득한 가산점 평정은 개정규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명부 작성권자가 정한 평정항목 및 평정점에 따라 평정함 (평정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참고사항

□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 : 가산점 평정 대상이 될 수 있음

【참조】 교원07000-439('99.12.20.), 교원07000-107(2000.1.29.)

□ 사립학교 근무 경력자의 가산점 평정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을 평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립과 사립의 근무경력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근무경력자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당해교원의 사립학교 근무중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함

※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 구분

- '67.4.12.~'85.12.31.까지는 지역단위로 구분(사립학교 평정의 근거가 됨)
- '86.1.1.부터는 기관단위로 구분(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85.12.31.)

□ 시·도간 전출입자의 가산점

- 시·도간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명부작성권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피평정자가 소속한 기관의 가산점 규정을 적용함(제41조제4항 참조)



질의 회신 사례

□ 파견교사의 연구학교 근무경력

【질의】 국립사대 부속중학교에 파견근무한 교사의 ‘파견기간 중의 교육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회신】 (교원07000-362, '99.12.4.)

파견요건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파견근무이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1항규정에 의거한 직무수행과정이었다면 가산점 평정 가능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교원에 대한 가산점 평정

【질의】 기사 자격증 및 기능사 자격증 소지 초등교원의 가산점 평정

【회신】 (교원07000-154, '99.10.14.)

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제1장제2호 규정에 의해 소속장관이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가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은 담당과목에 관련된 자격증에 한하여 실과담당 교원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전직시점에 따른 가산점 인정

【질의】 중등교사가 초등학교 근무기간 중('66.3.1.~'73.8.31.)에 취득한 도서·벽지 가산점의 평정 여부

【회신】 (교원07000-171, '99.7.15.)

자격을 달리하는 학교급에서 취득한 가산점은 종전규정에서는 평정되지 않았으며 '97.7.9.개정 승진규정의 부칙 제5조 “'97.12.31.까지 취득한 가산점은 종전의 제34조 규정에 의해 평정한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98.1.1부터 취득한 가산점은 학교급 구분없이 평정되나 위 경우는 종전 규정에서 명시된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이 아니므로 평정대상이 되지 않음

□ 농어촌 근무 가산점 평정대상은?

(사례1)

【질의】 '96.3.1.~'97.12.31. 동안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농어촌 지역에 남편을 제외한 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산점 평정 여부

【회신】 (교원07000-108,2000.1.29.)

당시 교육공무원승진규정('96.2.22.) 제34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점 해당 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을 평정받을 수 있음

(사례2)

【질의】 '95년 ○○초등학교 근무지와 교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일치한 경우 농어촌 가산점 부여 요청

【회신】 (교정 07000-32,'99.1.13.)

'94.9.22.개정 승진규정 제34조제1항제10호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교원"의 규정에 의해 귀하의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이 곤란함

□ 농어촌지역학교 근무중 교육원에 파견한 경우 가산점 평정 가능 여부

【질의】 농어촌지역학교 근무중에 교육원에 파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근무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교정07000-382,'99.4.21.) 및 (교정07000-812,'95.10.25.)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해 농어촌지역 근무가산점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명부작성권자가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파견기간 중 근무지가 농어촌지역학교가 아닌 교육원이라면 농어촌지역근무 가산점을 평정받을 수 없음

□ 농어촌 가산점 적용 지역 범위

【질의】 농어촌 소재 학교 근무 가산점 부여대상 교원의 주민등록 지역의 범위를

읍·면 지역으로 하는지 아니면 군지역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교정07000-870, '95.11.21.)

가산점 부여 대상 교원의 주민등록지역의 범위는 학교가 소재해 있는 읍·면 지역이어야 함

□ 임용결격 등 교사가 취득한 가산점

【질의】 임용결격 등 교사에 대한 사실상 근무기간 중에 이수하거나 취득한 연수 실적 및 가산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교원07000-36, 2000.1.1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종연구실적 및 가산점은 인정될 수 없음

□ 직무대리 교사의 주임(보직)교사 가산점

【질의】 1. 1987년 5월 8일 이후부터 일반사회 1급정교사 자격으로 국민윤리 직무(대리)를 수행한 경우 주임경력으로 인정되는가?

2. 일반사회 1급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민윤리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고 근무중 국민윤리 주임교사로 재 발령을 받아야 주임경력으로 인정되는가?

3. 위 경우 주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신】 (교정07000-161, 1999.2.20.)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86년) 제34조제1항제6호는 “1급정교사가 주임교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임교사 직무대리 경력은 주임교사 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2. 주임교사임용규정('86년) 제5조제1항은 “고등학교 근무할 주임교사의 임명은 교육감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이 주임교사로 발령된 경우 주임교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주임교사 임용장(발령통지서)등을 근거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등재 신청을 하여 등재되는 등의 절차를 밟아 주임교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급식학교 교원 가산점 평정기간

【질의】 급식학교 교원 가산점 평정기간

【회신】 (교원07000-31,2001.01.10.)

교육부장관 지정 시범급식학교 근무경력이 인사기록카드 또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79.1.1.~'82.3.19.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구·시범학교 가산점을 평정할 수 있음.

가. 학교급식규칙(문교부령 제432호, '78.11.23.) 제2호 및 급식 1056-81('78.12.29.)에 의거하여 시범급식학교가 지정·운영되었고, 문교예규 제4호('79.5.11.)에 의한 해당 교원의 가산점은 교직 200-1('79.12.31.)에 의거하여 '79.1.1. 이후부터 평정하도록 하였음

나. 학교급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767호, '82.3.20.) 제9조에 따라 시범급식 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서 체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78년 시범급식 학교 지정 당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는 한, 동 가산점 평정대상 기간은 '82.3.19.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 참고: 체육부장관지정의 학교급식 시범(연구)학교는 '96.4.26.(승진규정 개정) 이후만 인정

□ 도서·벽지근무 경력 가산점의 차등 부여 관련

【질의】 ○○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에 의하여 도서·벽지 가산점을 '97년 3월 1일 이전 5점(기본가산점 2점, 부가가산점 3점), '97.3.1부터 12월 31일까지 4점 (기본가산점 2점, 부가가산점 2점), '98.1.1부터 기본가산점 2점으로 차등 부여한 것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2001.7.7. 대통령령 제17292호)에 따라 적법한 가산점 부여인지 여부

【회신】 (교원12115-178,2002.3.07.)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교원인사관리규정은 임용권자가 해당 직위의 전문성 및 업무효율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임용권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든 교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조직 내부관리지침임. 가산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특수업무, 특수기능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부여하는 인사관리 기제에 불과하므로 승진규정에서 도서벽지가산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평등원칙이나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아님.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가산점인 도서·벽지 가산점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이 지역여건, 교육환경의 변화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시기별로 차등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의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참고사항 : 헌법소원 사례

헌법재판소 1990.9.3. 90헌마13전원재판부

【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교육위원회의 인사관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청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인사관리원칙은 중등학교 교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일반적·추상적형태로 제정한 조직 내부의 사무지침에 불과하므로,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교원의 기본권이나 법적 이익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

□ 국가공인 민간자격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관련

【회신】 (교원81801-937,2001.12.14.)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가 교육력 제고와 관련된 실적이나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4항제9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것임. 따라서 동조항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적정성 여부는 교원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활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부작성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승진규정 제41조제4항제9호에 의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동조항제8호

에 의한 가산점 평정대상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복 소지자의 가산점 중복 평정문제는 동조 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중복 평정금지규정을 마련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임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 착안사항

자격기본법 제27조제1항에서 민간자격은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 공인받은 민간자격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등의 공인사항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되, 가산점 부여시에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가산점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평정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교분실 도서·벽지 가산점 인정

【질의1】 무교도서분실 임시강사 경력자의 도서·벽지 근무가산점 인정 여부

【회신】 귀 교육청에서 운영한 무교도서분실은 학교 또는 분교장의 설치가 어려운 낙도지역의 의무교육진흥을 위해 설치한 교육시설이므로, 지리적으로 동일구역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수요자의 편의(통학상, 보건적 또는 특수교육의 목적 등)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의 장을 따로 설치한 분교장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무교도서분실 근무교원은 분교장 교원과 마찬가지로 본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근무장소만 별도로 지정된 자이므로 해당 교원의 소속 학교가 도서·벽지지역가산점평정대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2】 무교도서분실에 대한 도서·벽지 급지 인정 등급

【회신】 (교원12113-712,2001.09.25.)

무교도서분실 근무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소속학교 또는 분교장의 도서벽지 등급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함

□ 교육부지정연구기관 공동연구원의 가산점 부여 가능성

【질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지정 연구기관 ○○시교육청의 연구수행 공동연구원

인 학교교사 6명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지정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공통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교원07000-798,2001.10.26.)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함)에서 연구학교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으로서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종사한 교원에게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인정될 여지가 없음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교원의 가산점

【질의】 종전 승진규정('01.7.7. 대통령령 제17292호) 제41조 제4항의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이 타 시·도에서 교원이 전입한 시기('97.12.31. 이전과 후)에 따라 가산점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이유와 '97.12.31. 이전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승진규정(1997.7.9. 대통령령 제15424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해야 하는 바, 이 규정을 '98.1.1. 이후에 타 시·도에서 전입한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교원07000-553,2003.10.5.)

'97.12.31.이전과 '98.1.1.이후 전입한 교원간에 가산점 인정여부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교원의 전입 시기가 아닌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기간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97.12.31.이전 도서·벽지근무 경력에 대하여 적용된 종전 승진규정(1996.2.22. 대통령령 제14920호)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명부작성권자를 달리하여 전보된 교원에 대한 가산점 인정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경우, 전보된 교원의 도서·벽지 근무경력도 가산점 평정대상이 됩니다. 한편, '01.7.7.자로 개정된 승진규정(대통령령 제17292호)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교육청이 각각 정한 가산점 부여 규정은 '98년 이후에 전입한 교원의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하여도 적용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는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시 종전 승진규정(대통령령 제14920호) 제34조와 함께 '01.7.7.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17292호)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가산점부여규정의 적용을 받습니

다. '98.1.1. 이후의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은 교육감이 지역실정, 교육여건, 가산점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교원의 의견과 교육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한 가산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새로운 가산점 평정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얻으려는 정책목표와 공익적 조직관리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시도에서 전입한 교원에 대한 교육감 부가가산점 부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 타 연구학교와 통합학교, 기간제교사의 가산점(교원B1105-35, 2003..01.13.)

【질의1.2】 통합형 고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연구학교 운영시 전문교과(조리, 미용, 피부관리,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교원 수급상 연구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과목을 설치하고 순회교사로 운영할 경우, 순회교사도 연구학교 유공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일반학교에 적을 두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순회교사가 연구영역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주2회 8시간이상 지도하였을 경우 해당 순회교사를 연구학교 유공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순회교사는 연구학교 가산점의 평정대상이 될 수 없음

(이유)

가산점은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의 연구결과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당해 학교 및 관련교원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순회교사는 원활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2, 3개 학교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자료조사, 적용 등의 업무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 연구학교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해 연구학교 교원 중 가산점 부여 대상자 제외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순회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질의3】 초·중 통합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할 때 학교급이 다른(초↔중)교원이 연구학교 운영에 기여한 공을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유공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연구학교 유공자로서 인정될 경우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됨

(이유)

통합학교는 2개의 학교가 아니라, 1개의 학교로 간주되므로 통합학교교원의 경우 연구학교 가산점 인정권자(학교장 및 심사위원회 등)가 유공교원으로 인정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질의4】 교원수급상 기간제 교사를 학교장이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기간제 교사에게 연구학교 가산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기간제 교사도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유)

기간제 교사도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연구학교에서 전임으로 직접 근무했고 연구학교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한 교사로 인정된다면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됨

제 6 절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

1. 승진임용 근거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5조

-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
- 특별승진임용 : 제15조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 승진후보자명부작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참조

- 특별승진임용

2. 승진후보자명부작성

☐ 명부의 작성

-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자격별,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해야 함
(예시) 초등학교 교장, 중등학교 교장, 특수학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 승진임용의 원칙

-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승진임용함
 -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 직위별로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므로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통합하여 명부를 작성할 수 없음

□ 평정점

-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188점(가산점 별도)
 -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연구실적 3점+교육성적평정점 15점)
 - * 종전의 직무연수성적평정점 18점이 6점으로 조정되어 평정총점이 축소됨
-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200점(가산점 별도)
 -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연구실적 3점+교육성적평정점 27점)

□ 평정요소 : 경력평정 + 근무성적평정 + 연수성적평정 + 가산점

□ 작성시기 : 매월 1월 31일

□ 명부조정 : 조정사유발생으로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 조정 가능

-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 (승진규정 제44조)
 -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 있어 그 때부터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승진규정 제20조 제2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

정한 때

- 승진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을 때
- 승진규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당한 자가 있는 때

□ 동점자의 순위결정 : 근무성적 우수자, 현직위 장기근무자,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장기근무자의 순

3. 임용방법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

4. 승진후보자명부의 분할 작성(제42조제2항 관련)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의 소속 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를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교원수급상 불가피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명부를 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분할 작성하도록 하여, 민원발생 등 인사관리상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5. 승진임용의 제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8조)

□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음

-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제한기간을 기산함



질의 회신 사례

【질의】 명부작성권자의 필요에 의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연수성적 평정과 가산점 평정을 2가지 모두 평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구)사이버소리함 답변)

승진후보자명부조정을 위해서는 승진규정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연수성적과 가산점의 2가지를 모두 평정해야 함

【질의】 명부조정시 연수성적 평정(또는 가산점 평정)과 관련한 사항 모두를 평정(즉,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모두)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별적(교육성적 중에서도 자격연수성적만 선별)으로 필요한 사항만 할 수 있는지?

【회신】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누어 평정하여 합산하는 것이므로 명부조정을 위한 평정이라고 하여 자격연수 또는 연구실적을 선별적으로 평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성적 및 연구실적을 모두 평정해야 함

□ 복수자격증 소지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

- 【질의】 1. 복수자격증 소지자가 복수전공 교과를 모두 지도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감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어느 교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복수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문직 시험 응시자의 과목이 반드시 발령 교과에 국한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교원07000-351, 1999.12.3.)

1.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복수자격증소지자의 적용교과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4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관간의 교감자격취득기회의 균형유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교육감이 정할 수 있으므로 명부작성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2. 복수자격증소지자의 교육전문직 임용시 과목 적용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 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을 위한 전형기준·전형방법 및 전형절차는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용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 교육전문직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질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인사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동 승진후보자 명부를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한 지의 여부

【회신】 (법무 810-48, '78.3.4.)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이유】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기 위한 것이며 그 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 재교육평정, 근무성적 기타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고,
2. 동법 제11조(현행 제14조)의 규정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 명부는 직위별 또는 그 자격별로 작성하여 비치토록 되어 있으며,
3. 교육연구사와 장학사는 담당직무의 성질이 상이하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표가 다를 뿐 아니라,
4. 교육연구관의 바로 하위직은 교육연구사 밖에 없으며, 교육연구사가 되려면 “전직”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는 별도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

□ 3배수 우선임용 규정의 적정성 여부

【질의】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6조의 「교육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인사관리 기준에 「교감·교장의 승진임용은 당해 연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

위에 의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① 정년퇴임일까지 만 1년 남은 자 ②자격증 취득일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신】 (교원12110-723,2000.07.10.)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임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이유】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승진 후보자 명부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명부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을 것임

□ 교감자격소지자의 집단행위와 승진임용포기 관련

【질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교육공무원들이 교감자격증을 반납한 행위를 이유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6조(승진)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임용하되,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포기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포기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교원81700-666,2001.9.1.)

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복무와 교원의 승진임용은 별론의 사항임

나. 따라서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규정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6조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포기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감자격증 반납을 승진임용 포기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다. 다만, 교감자격증 반납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3배수 범위내 선취득자 우선 임용관련

【질의】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자격증 선취득자를 우선 임용하여도 인사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지 여부

【회신】 (교원07000-816,2001.11.1.)

귀직이 질의한 교육공무원법 제14조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6조 규정은 법령해석상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에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우리 부에서 해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법령해석질의요령, 교육부예규 제254호 3.참조) 다만, 임용권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승진임용을 위해 선취득자를 우선 임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인사규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만, 이 경우 교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교직사회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교원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임용결격교사의 교감자격증 유효성과 승진임용 관련

【질의】 1. 임용결격교사의 사실상 근무기간 중 취득한 교감자격증 유효 여부
2. 교감자격증 유효시 승진임용 가능 여부

【회신】 (교원12110-949,2000.9.26.)

임용결격 교사가 기취득한 교감자격증 유효 여부와 교원의 승진평정시 사실상 근무기간의 교육경력·각종연수실적·가산점 등의 인정문제는 별론으로 해야 할 사항이므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취지를 비추어 볼 때 동자격증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교감자격증은 유효하므로 해당 교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할 수 있으며 등재 후 승진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 국가유공자의 승진임용 관련

【질의】 국가유공자인 교육공무원 승진임용시 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임용 적용가능성 여부

【회신】 (교원12110-144,2002.02.2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를 위한 우선채용의 직종은 기능직(동법 시행령 제47조 참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시 '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별지 제1호 서식]

경력평정표 (제13조 제1항 관련)						
1. 평정 대상자						
○ 소속 :		○ 직위 :		○ 성명 :		②
2. 경 력 평 정						
경 력 별	근 무 처 및 직 명		재직기간	재직 월수	월경 평점	평정 점합
기 본 경 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소 계					
초 과 경 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소 계					
합 계						
3. 평정자·확인자 성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②
평정자						
확인자						

[별지 제2호 서식]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제16조 관련)					
1. 평가지침 근무실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허위 또는 과장이 있을 경우 평가자료로 삼지 않는다.					
2. 평가기간 :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 평가자(본인) 인적사항 ○소속 : ○직위 : ○성명 :					
4. 담당업무 :					
5. 자기실적 평가 (※ 평가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 담당 업무 추진 목표(학년초 또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업무 목표) ○ 담당 업무 추진실적(학년초 또는 연초 목표한 내용과 대비하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씀) ○ 창의적 업무개선 사항					
	목표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자 기	창 의 성	연구, 지도 등에서 창의적인 업무수행 정도	만족	보통	미흡
평 가	적 시 성	담당업무를 기한내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정도	만족	보통	미흡
	노 력 도	담당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 공헌도	만족	보통	미흡
2003년 12월 일 작성자(본인)성명 서명(인)					

[별지 제3호 서식]

() 근무성적평정표 (제17조 관련)												
① 평정기간		② 평정분포 비율					③ 조정자		④ 확인자		⑤ 평정자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수(72점이상)20% *미(56점이상)30% *우(64점이상)40% *양(56점미만)10%					직위 성명 ②		직위 성명 ②		직위 성명 ②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점		자질및태도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⑪ 평정점	⑫ 환산점	⑬ 총 점	⑭ 조 정 점	⑮ 순 위	
		⑥ 교육 자 료 의 품 성	⑦ 공 직 자 료 의 자 세	⑧ 교 육 자 료 의 연 구	⑨ 교 육 자 료 의 관 리	⑩ 행 정 · 사 무 관 리						
평정대상자 소 속	성명	평정자 확인자	12	12	24	16	16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 평정사항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교감	자질 및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12점)	학교의 관리·경영에 있어서 교직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가
			다른 의견 입장 습관에 대한 이해나 포용성이 있는가
			교육자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공직자로서의 자세(12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
			교육계획의 개선에 힘쓰며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
			공무수행시 공사의 구분은 적정한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24점)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적절한가
			교육활동의 교육적 배려가 적절한가
			교사의 자질·능력·경험에 따라 교무분장을 하고 지원하는가
			교원 연구·연수활동의 추진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가
		교원지원 (16점)	직원에 대한 지도력이 있으며 교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힘쓰고 있는가
			교육활동의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직원의 복무·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교원의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행정·사무관 리(16점)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적절한가
			교내의 제규정을 적절히 적용하며 잘 정비하는가
			교육시설·설비를 교육활동에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학교안전관리와 보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 정 내 용
장 학 사 · 교 육 연 구 사	자질 및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12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포용성이 있는가
			장학·연구활동에 있어서 교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공직자로서의 자세(12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
			교육행정(연구) 업무의 기획에 창의성이 있는가
			공무수행시 공사의 구분은 적정한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24점)	교육정책의 추진 및 교육활동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가
			장학(연구)업무를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가
			교육현장에 필요한 장학(연구)활동을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가
			장학(연구)활동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적정한가
		교원지원(16점)	교원의 장학(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공정한가
			교육현장에 대한 장학(연구)활동의 자세가 바람직한가
			장학(연구)활동의 결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개선하는가
		행정·사무관 리(16점)	제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히 적용하는가
			적극적이고 봉사적인 공무수행을 하는가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한가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가

[별지 제4호 서식]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제17조 관련)												
① 평정 기간		② 평정분포 비율					③ 조 정 자		④ 확 인 자		⑤ 평 정 자	
2003. 1. 1.부터 2003.12.31.까지		*수(72점이상)20% *미(56점이상)30% *우(64점이상)40% *양(56점미만)10%					직 위 성명 ㉠		직 위 성명 ㉠		직 위 성명 ㉠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 점		자질및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⑪ 평정점	⑫ 환산점	⑬ 총 점	⑭ 조 정 점	⑮ 순 위	
		⑥ 교육 자로 서의 품성	⑦ 공직 자로 서의 자세	⑧ 학습 지도	⑨ 생활 지도	⑩ 교육 연구 및 업무 태도						
평정대상자 소 속 성명	평정자 확인자	12	12	24	16	16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 평정사항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 정 내 용
교사	자질 및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12점)	교원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교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가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공직자로서의 자세(12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
			교직원간에 협조적이며 학생에 대해 포용력이 있는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학습지도 (24점)	수업연구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가
			수업방법의 개선 노력과 학습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평가계획이 적절하고, 평가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생활지도 (16점)	학생의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학교행사 및 교내외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가
			학생의 심리, 고민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히 지도하는가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건강·안전지도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하는가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16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임무수행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별지 제5호서식]

연수성적평정표(제31조제2항관련)									
1. 평정대상자 ○소속 : ○직위 : ○성명 : ②									
2. 교육성적 평정									
교육구분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성적	평 정 점				
자격연수									
직무연수									
”									
”									
계									
3.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대회주관기관	대 회 명	입상일자	전국규모			시·도규모			평정점 합 계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계									
4. 학위취득실적평정									
석·박사구분	직무관련구분	학위명	학위수여기관			학위취득일자		평정점	
석 사	직무관련								
	기 타								
박 사	직무관련								
	기 타								
5. 연수성적 평정점									
6. 평정자·확인자 성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②				
평 정 자									
확 인 자									

가산점 평정표(제41조제5항관련)

○직위 : ○성명 : ①
 관승진 후보 ☐ 교장자격연수대상 ☐ 교감자격연수대상 ☐ 기타 교감 ☐ 관승진 후보

구분	근무기관	근무기간	평정대상기간	평정월수	월평정점	평정점 합 계
합 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①

제7절

참 고 자 료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 1996.2.22 대통령령 제14920호]

(※이 규정은 업무참고를 위한 과거 규정이며

현행 규정은 부록395쪽을 참고해야 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연수·재교육·기타 훈련의 성적과 연구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2·12·30>

제2조 (적용대상) 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6·4·26, 1990·2·14>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 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②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1986·4·26>

제2장 경력평정

제3조 (평정의 기준)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

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평정의 기초)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회 확인 할 수 있다.

제5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6·4·26, 1991·2·1>

제6조 (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년 12월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때부터 2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개정 1972·12·30, 1974·5·9, 1975·8·20, 1994·9·22>

제7조 (경력종류)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누고, 기본경력은 이를 제1기와 제2기로 나눈다. [전문개정 1973·8·8]

제8조 (경력평정기간) ①기본경력평정기간은 평정시기로부터 최근 20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하되, 최근 10년간을 제1기로, 제1기전 10년간을 제2기로 한다.<개정 1979·2·7, 1990·2·14>

②초과경력평정기간은 기본경력 전 10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간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평정기간 직전의 경력기간에서 당해 휴직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당해 평정기간에 산입하여 평정기간을 산정한다.<신설 1994·9·22> [전문개정 1973·8·8]

제9조 (평정대상, 경력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에 따라 이를 별표 1과 같이 갑경

력·을경력·병경력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1973·8·8]

제10조 (경력별 평정점) ①기본경력의 기별 및 등급별 평정점과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②경력평정점의 계산에 있어서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세째자리까지 계산한다.<신설 1986·4·26> [전문개정 1973·8·8]

제11조 (경력의 기간계산) 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중에 휴식·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휴직 또는 직위 해제의 기간은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의 기간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 비상근으로 근무한 휴직기간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 재직하였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개정 1990·2·14, 1992·2·17, 1994·9·22>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중 상근으로 근무한 휴직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②경력평정에 있어서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기간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으로 계산한다.<신설 1994·9·22>

제12조 삭제<1973·8·8>

제13조 삭제<1986·4·26>

제14조 (평정의 채점)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개정 1973·8·8>

제15조 (평정표) ①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73·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6·4·26>

제16조 (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가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 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장의 관할하에 있는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감과 교사의 경력평정표는 당해 시·군의 교육장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4·5·9, 1986·4·26, 1992·2·17, 1996·2·22>

제17조 (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1986·4·26>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8조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6·4·26, 1990·2·14>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제19조 (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는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교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6·4·26]

제20조 (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1991·2·1>

제21조 (평정의 시기)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12월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72·12·30, 1975·8·20>

제22조 (평정의 예외) ①교육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2·14, 1994·9·22>

②교육공무원이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같음한다. <개정 1990·2·14, 1994·9·22>

③교육공무원이 2월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0·2·14>

④교육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

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 이내에 정기평정 실시일이 도래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 하여야 한다.<개정 1990·2·14>

⑤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교육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2·14>

⑥교육공무원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2·14>

⑦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6·4·26]

제23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①근무성적은 평정 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제4호의 비율 또는 나머지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개정 1990·2·14>

1. 수(72점이상) 20퍼센트
2. 우(64점이상 72점미만) 40퍼센트
3. 미(56점이상 64점미만) 30퍼센트
4. 양(56점미만) 1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남녀별로 확인자는 소속평정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평정대상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4·26]

제24조 (평점의 채점) ①근무성적의 평정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

여 산출한다.

②확인자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0·2·14]

제24조의2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①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간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사와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 및 교사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2·2·17, 1996·2·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전문개정 1990·2·14]

제24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교육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0·2·14> 1. 평정대상 교육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8·20]

제25조 (평정결과의 보고) 제16조의 규정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근무성적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등 인사관리
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4·26]

제26조의3 (특별근무성적평정) ①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
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2·7]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제27조 (평정의 구분과 대상) ①연수성적의 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
로 나눈다.

②교육성적평정은 다음 각호의 연수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되, 10년 이내에 받은
일반 연수나 자격연수중 성적이 우수한 것 하나만을 평정의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이하 “교육전문직경력
”이라 한다)이 있는 교감의 일반연수는 교감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받은 것만을
평정의 대상으로 한다.<개정 1986·4·26, 1991·2·1, 1994·9·22>

1.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갑경력(교원의 경우에는 근무교와 교원의 자
격제도에 있어서 동등시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의 경력을 말한다)으로 평정되
는 직위(이하 “동등급직위”라 한다)에서 받은 60시간이상의 일반연수
2.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직위(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사의 직위
를 포함한다)에서 받은 자격연수(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경우의
그 졸업성적 또는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그 성적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가 2이상인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당해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③연구실적평정은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직위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교육 전문직경력이 있는 교감의 연구
실적은 교감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연구실적만을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은 교육에 관한 연구실적에 한한다.<개정 1986·4·26, 1990·2·14, 1991·2·1, 1992·2·17, 1994·9·22>

1. 국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청이 주최한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기타의 공공기관·공공단체가 개최하는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3. 박사 또는 석사의 학위를 취득한 연구논문 (보조논문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28조 (평정자와 확인자) ①연수성적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개정 1986·4·26>

②평정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정대상자의 교육성적을 당해 연수기관의 장에게 조회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86·4·26>

제29조 (평정의 시기)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년 12월말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시기에 이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1986·4·26]

제30조 (평정점) ①교육성적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9·22> 교육성적평정점 = $27 \times \text{교육성적} / \text{교육성적의 만점}$

②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③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1. 최상위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 차상위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 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④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 수료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표에 의하여 평정한다.<개정 1991·2·1>

졸업 또는 수료성적	평정점
에이학점이상	만점의 90퍼센트
비학점	만점의 85퍼센트
시학점이하	만점의 80퍼센트

⑤연구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은 1년에 1편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논문과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으로 평정된 연구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0·2·14>

구 분	평 정 점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한 연구실적	대회규모 입상등급	전국규모	특별시·광역시·도 규모
	1등급	1점	0.5점
	2등급	0.75점	0.25점
	3등급	0.5점	0.125점
제2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위논문	박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논문 2점 기타의 학위 논문 1점	
	석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논문 1점 기타의 학위 논문 0.5점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회규모와 입상등급의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⑦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6·4·26]

제31조 (평정결과의 보고) 제16조의 규정은 연수성적 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평정결과의 공개) 제17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결과의 공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제33조 (명부의 작성) ①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9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며, 그 명부의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개정 1972·12·30, 1973·8·8, 1986·4·26, 199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2조제2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본다.<신설 1986·4·26, 1990·2·14, 1994·9·22>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은 55점으로 한다.<신설 1986·4·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신설 1986·4·26>

제34조 (가산점)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평정하여 제33조에 규정된 각 평정점의 합산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이 경우 동등

급직위중 교육전문직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 취득후의 사유에 한한다.<개정 1981·8·12, 1986·4·26, 1990·2·14, 1991·2·1, 1992·2·17, 1993·3·6, 1994·9·22>

1. 삭제<1992·2·17>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2점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가산점 부가기준을 정하여 다시 4점이하의 가산점을 그 평정한 가산점에 부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산점을 받은 당해 승진후보자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그 부가가산점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전보된 지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 부가가산점 인정기준에 의한다.

가. 가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42점

나. 나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34점

다. 다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25점

라. 라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17점

3. 학생 전체가 나환자 자녀인 학교(분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과 나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을,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105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학교 또는 실험학교의 교원으로 학교지정의 목적달성에 직접 이바지하였다고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자의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교육감이 지정한 학교근무자는 0.010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1급정교사가 주임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또는 기술계의 자격증(담당과목에 관련되는 자격증에 한한다)을 가진 실과담당교원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수를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자격증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그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가. 기술사·기사1급·기사2급·기능장 또는 기능사1급의 자격증을 가진 자 0.75점

나. 기능사2급의 자격증을 가진 자 0.5점

10. 읍 또는 면 지역의 농어촌중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원으로서 당해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15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2.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점을 받은 당해 승진후보자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그 가산점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전보된 지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 가산점 인정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평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중의 평정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하여야 한다.<신설 1986·4·26, 1994·9·22>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나환자자녀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나환자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나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 근무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 근무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나환자자녀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나환자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과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6.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범학교, 실험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7.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8.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과 동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 ③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2·17>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의 평정은 매년 12월말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이를 실시한다.<신설 1986·4·26>
- ⑤가산점 평점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9·2·7]

제35조 (명부의 작성권자) ①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74·5·9, 1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86·4·26, 1991·2·1>

제36조 (명부의 작성시기)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월말 현재로 작성한다.<개정 1972·12·30, 1973·8·8, 1975·8·20>

제37조 (명부의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74·5·9, 1975·8·20, 1986·4·26>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을 때,
2. 제6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거나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을 때,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
5. 삭제<1992·2·17>

제38조 (동점자의 순위결정) ①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1986·4·26>

제39조 (명부의 제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그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86·4·26> [전문개정 1973·8·8]

제40조 (명부에서의 삭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되거나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승진후보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4·26]

제41조 (명부순위의 공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0·2·14]

부칙 <제4393호,1969.12.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삭제<1975·12·31>

부칙 <제6449호,1972.12.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72년도에 한하여는 제6조·제2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의 시기를 1972년12월말로 한다.

부칙 <제6799호,1973.8.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최초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1973년 6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1973년 7월 말일에 작성한다.
- ③(연구학교 등 근무경력의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의 평정은 1973년 1월 1일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행한다.

부칙 <제7143호,1974.5.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점수의 가산은 1974년 7월 1일 이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1974년 6월 30일이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741호,1975.8.20>

-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 6월말 기준으로 평정된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 및 연수성적평정과 1975년7월말 현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934호,1975.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이 영 공포후 최초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기로부터 시행한다.

②(성적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연수로서 그 성적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연수에 대한 제30조제1항의 연수성적 평정에 있어서는 그 성적을 만점의 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8403호,1976.12.31>

이 영은 197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7호,1979.2.7>

이 영은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6호,1981.8.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 이후의 경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1891호,1986.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일로부터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 까지의 사이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고자 할 때의 각종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7년 1월말 및 1988년 1월말에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있어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정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987년 1월말에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있어서의 근무성적평정점:1986년도 12월말의 근무성적평정점 $\times 100/100$
2. 1988년 1월말에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있어서의 근무성적평정점:1986년도

12월말의 근무성적평정점 $\times 40/100 + 1987$ 년도 12월말의 근무성적평정점 $\times 60/100$

제4조 (도서·벽지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평정에 있어서 다음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종전의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학교의 근무경력은 동표의 오른쪽란에 규정된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종전의 지역 구분	개정된 지역 구분
갑지중 문교부장관이 지정하였던 도서·벽지	가 지역
갑 지	나 지역
을 지	다 지역
병 지	라 지역

제5조 (연구실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 대상이 되던 연구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연구실적을 평정하되, 그 평정점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929호,1990.2.1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③(승진후보자명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의 사이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고자 할 때의 각종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0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30조제4항·제6항,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148>생략

부칙(체육청소년부직제) <제13284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 <제13591호,199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제10호, 동조 제2항제7호 및 제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의 사이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고자 할 때의 각종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본문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70>생략

부칙 <제14384호,1994.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 까지의 사이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고자 할 때의 각종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국제기구등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기간을 산정한다.

제4조 (교육전문직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전문직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성적을 평정하고 가산점을 평정·가산한다.

제5조 (특수학급담당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가산하여 평정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까지 이 영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907호,199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16>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단서 및 제24조의2제2항 단서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17>내지 <32>생략

2. 시·도교육청 평정항목별 가산점현황

□ 공통가산점

【직무연수 이수실적】

교육청	평정점	상한점
서울교육청	학점당0.01점('98.3.1이후실적)	1년 0.04점, 총1점
부산교육청	학점당 0.01점(전체실적)	1년 0.08점, 총1점
대구교육청	학점당 0.01점('98.1이후실적)	1년 0.04점, 총1점
인천교육청	학점당 0.01점('98.1이후실적)	1년 0.04점, 총0.5점
광주교육청	학점당 0.01점('98.1이후실적)	1년 0.04점, 총0.2점
대전교육청	학점당0.01점('98.1이후 실적)	1년 0.04점, 총0.5점
울산교육청	학점당 0.01점('98이후 실적)	1년 0.04점, 총0.5점
경기교육청	학점당 0.01점(전체실적)	1년 0.08점, 총0.5점
강원교육청	학점당0.01점('98.3.1이후실적)	1년 0.04점, 총1점
충북교육청	학점당0.01점(당해직위전기간)	1년 0.04점, 총1점
충남교육청	학점당0.01점('98.1이후 실적)	1년 0.04점, 총1점
전북교육청	학점당0.01점('98.1이후 실적)	1년 0.04점, 총0.5점
전남교육청	학점당0.01점('98.1이후 실적)	1년 0.04점, 총0.4점
경북교육청	학점당 0.01점	1년 0.04점 총0.5점
경남교육청	학점당 0.01점	1년 0.04점, 총0.5점
제주교육청	학점당 0.01점('98이후 실적)	1년 0.08점, 총1점

□ 선택가산점

【1급 정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교육청	평정점	상한점
16개 시·도교육청	월 0.021점	1.75점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

교육청	평정점	상한점
16개 시·도교육청	월 0.021점	1.25점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교육청	평정점	상한점
서울·제주교육청	미부여	미부여
부산교육청	월 0.015점	1.5점
대구·강원·충북· 경북·전북교육청	월 0.015점	2.5점
인천교육청	월 0.015점	1.00점
광주교육청	월 0.010점	1.25점
대전교육청	월 0.01점	0.36점
울산교육청	월 0.015점	1.26점
경기교육청	월 0.015점 월 0.010점	초등 2점 중등 1.5점
충남교육청	월 0.015점	2.0점
전남교육청	월 0.015점	1.25점
경남교육청	월 0.0105점	1.25점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

교육청	평정점	상한점
서울교육청	미부여	미부여
부산교육청	월0.042(가),월0.034(나) 월0.030(다),월0.022점(라)	2.00점
대구교육청	월0.042(가),월0.034(나) 월0.025(다),0.017점(라)	2.00점
인천교육청	기본점 부가점 계 A 0.019 (0.037): 0.056 B 0.018 (0.028): 0.046 C 0.017 (0.019): 0.036 D 0.016 (0.010): 0.026 E 0.015 (0) : 0.015	2.00점
광주교육청	월0.042(가),월0.034(나) 월0.025(다),0.017점(라)	2.00점
대전교육청	상 동	2.00점
울산교육청	상 동	2.00점
경기교육청	- 월평정점 가지역-0.042점(0.084) 나지역-0.034점(0.068) 다지역-0.025점(0.05) 라지역-0.017점(0.034)	초 등 3점 중 등 2점
강원교육청	월0.084(가),월0.068(나) 월0.050(다),월0.034점(라)	4.00점
충북교육청	월0.06(가)~0.03점(라)	3.0점
충남교육청	월0.125(가),월0.096(나) 월0.067(다),월0.038점(라)	3.0점
전북교육청	월0.042(가),월0.034(나) 월0.025(다),0.020점(라)	3.0점
전남교육청	월0.154점(가),월0.118(나) 월0.081(다),월0.055(라)	6.0점
경북교육청	월0.056(가),월0.048(나) 월0.030(다),0.025점(라)	4.0점
경남교육청	월0.042(가),월0.034(나) 월0.025(다),0.017점(라)	2.0점
제주교육청	월 0.050~ 0.025점	3.0점

【한센병환자 자녀학교 근무경력 및 학급담당경력】

교육청	평정점	상한점
서울교육청	미부여	미부여
부산교육청	월 0.021점	1.25점
대구교육청	월 0.015점	1.00점
인천교육청	월 0.021점	1.25점
광주교육청	월 0.021점	1.25점
대전교육청	월 0.021점	1.25점
울산교육청	월 0.021점	1.25점
경기교육청	월 0.021점	1.25점
강원교육청	월 0.021점	1.25점
충북교육청	월 0.021점	1.25점
충남교육청	월 0.021점	1.25점
전북교육청	월 0.021점	1.25점
전남교육청	월 0.021점	1.25점
경북교육청	월 0.021점	1.25점
경남교육청	월 0.021점	1.25점
제주교육청	월 0.021점	1.25점

【특수학교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당 경력】

교육청	월평정점	상한점
서울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통합교육학급은 미부여	1.25점
부산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0.0053(통합교육초등학급)	1.25점
대구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1.25점
인천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0.0053(통합)	1.25점
광주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1.25점
대전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1.25점 (초 등 '97까지) 0.625(초 등 '98이후)
울산교육청	0.0210(학교), 0.0105(학급), 0.0053(통합교육초등학급)	1.25점
경기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0.005(초등통합)	1.25점
강원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1.25점
충북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1.25점
충남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0.005(통합교육수행협력교사*)	1.25점
전북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1.25점
전남교육청	0.021점(학교), 0.0105점(학급) 0.005(초 등, 통합교육학급)	1.25점
경북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0.0053(초 등, 통합교육학급)	1.25점
경남교육청	0.021(학교), 0.0105(학급)	1.25점
제주교육청	0.021(학교), 0.0105(특수학급) 0.0105(통합교육학급)	1.25점

【교육감지정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포함) 근무경력】

교육청	평정점	상한점
서울 교육청	월0.01점	1.25점
부산 교육청	월0.01점	1.25점
대구 교육청	월0.01점	1.25점
인천 교육청	월0.01점	1.25점
광주 교육청	월0.01점	1.25점
대전 교육청	월0.01점	1.25점
울산 교육청	월0.01점	1.25점
경기 교육청	월0.01점 교육장(0.005)	1.25점
강원 교육청	월0.01점	1.25점
충북 교육청	월0.01점	1.25점
충남 교육청	도지정 월0.01점 군지정 월0.005점	1.25점
전북 교육청	월0.01점	1.00점
전남 교육청	교육감지정 월0.01점 교육장지정 월0.005점	1.25점
경북 교육청	월0.01점	1.25점
경남 교육청	월0.01점	1.25점
제주 교육청	월0.01점	1.25점

【국가기술자격증·해기사면허증·정보화관련 자격 소지】

교육청	평정점	상한점
서울교육청	실업계과목:0.75(1급),0.5(2급), 0.3(3급)	0.75점
	정보화: 0.5(1급), 0.4(2급), 0.3(3급)	0.5점
부산교육청	0.75(1급), 0.5(2~3급)	0.75점
대구교육청	0.75(1급), 0.5(2급), 0.25(3급)	0.75점
인천교육청	0.75(A등급) 0.5(B등급)	0.75점
광주교육청	0.75(1급), 0.5(2,3급) 정보소양인증제⇒ 0.5(1급), 0.25(2급)	0.75점
대전교육청	0.75(1급), 0.5(2,3급)	0.75점
울산교육청	0.75(1급), 0.5(2급,3급)	0.75점
경기교육청	0.75(1급), 0.5(2,3급)	0.75점
강원교육청	0.75(1급), 0.5(2,3급)	0.75점
충북교육청	0.75(1급), 0.625(2급), 0.5점(3급)	0.75점
충남교육청	0.75(1급), 0.5(2,3급)	0.75점
전북교육청	0.75(1급), 0.5(2,3급)	0.75점
전남교육청	0.75(1급), 0.5(2,3급))	0.75점
경북교육청	0.75(1급), 0.5(2,3급) 정보활용능력인증0.25	0.75점
경남교육청	0.75(1급), 0.5(2,3급), 0.25(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	0.75점
제주교육청	0.75(1급), 0.5(2급), 0.375(3급)	0.75점

【명부작성권자가 인정 하는 경력 및 실적】

교육청	평정점		상한점
서울교육청	○귀국학생특별학급담당 월0.0105		1.25
부산교육청	○발명공작교실전담교사 월0.0105점 ○교재생물연구중심학교 주무교사 1명 월0.0105점 ○파견교사 월0.021점	교당	1.25점
대구교육청	○교육감지정 교육특구지역학교 근무경력 월0.005점		1.25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근무(발명교실)경력월0.021점	파견	0.75점
인천교육청	○특수지역 월0.02점(A지역) 월0.01점(B지역)		1.00점
광주교육청	○초등인사특구근무 월0.003		1.25
	○전국소년체육대회지도1년1회0.25		1.25
대전교육청	○초등수업연구대회: 0.1(1등급), 0.075(2등급), 0.05(3등급)		0.5점
	○ 교육실습지도 교원 월0.01점		추후결정
울산교육청	○파견교원 근무경력 월0.021점		1.25점
	○순회교사 근무경력 0.01점		1.00점
경기교육청	○초등수업실기대회 우수표창교사 연1회 0.12		(1.00)
	○공단지역학교근무경력 근무1년 0.12		(초등200) (중등150)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지도1년 0.10		1.00
	○ 중등	담임교사경력 0.01	1.5
		순회교사,파견교사 및 겸임교사, 공동실습소 운영교사경력0.01	1.5
		대안학교 근무경력0.015	0.9
		국제올림픽아드지도교사 연1회 0.25	0.50
강원교육청	○벽지학교 장기근속	월0.015	각(0.5) 1점
	○연구학교(군지정)	월0.005	
	○교과지도 겸임	월0.0075	

교육청	평정점			상한점
충북교육청	○ 교육청(직속) 파견(겸임) 근무경력		월0.021	1.00
	○ 지역교육청 학교과학관 발명공작실 전담 근무경력 *실업고 공동실습소 전 담교사 근무경력		월0.021	1.00
	○ 교과서·인정도서집필실적(연1총)		연0.2	0.6
	○ 교원정보활용기능장(교육감 인정)		0.125	0.125
충남교육청	○ 학력증진· 생활지도 유공		0.01	1.25
	○ 종합정보관리시스템관리		0.01	0.50
	○ TOEIC 900이상:0.75 850점 이상0.50 750점 이상:0.25			0.75
전북교육청	TEPS TOEIC TOFEL 능력(초등교원)	TEPS TOEIC TOEFL	800이상 875이상 600이상	0.250
		TEPS TOEIC TOEFL	677이상 815이상 580이상	0.200
		TEPS TOEIC TOEFL	600이상 700이상 540이상	0.150
전남교육청	○ 수업 장학요원 연0.125			0.25점
	○ 특별연구교사 연0.125			
	○ 중등 겸임(순회)교사 연0.125			
	○ 정보활용인증서 취득자 0.25			
	○ 영어 TOEIC 600점이상이거나 TOFEL 250점(구 TOFEL 500점), TEPS 500점 이상 합격자 : 0.25점			
경북교육청	○ 장학사·연구사경력		0.021	0.6점
	○ 도·교육부 지정연구주무자(대용부설초등제외)		월0.005	
	○ 발명공작실담당자			
	○ 고등학교근무자		0.017	
경남교육청	○ 교육기관파견 근무경력 월0.0105점			0.25점
제주교육청	○ 초·중등겸임교사경력		월0.010점	1.25점
	○ 영재학급 담당 교사 경력		월0.010점	
	○ 교육감이 지정한 장학자료(교과용도서포함) 개발 유공교원		1년1자료 0.120점	
	○ 교육실습 대용학교와 협력학교의 교감, 교육실습 주무 보직교사, 교육실습지도교사 경력('03.3. 1이후)		월 0.010	

제 5 장

초빙교원 업무

제 1 절 초빙교장제

제 2 절 초빙교사제

제 3 절 행정사항

제5장 초빙교원 업무

1. 목 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로 초빙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초빙교원 인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3. 적용범위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로 초빙되는 국·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에게 적용함

4. 시행일

2003년 3월 1일 이후에 초빙되는 교장 및 교사부터 적용함

제 1 절

초빙교장제

1. 실시 대상학교

가. 재직 중인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퇴임으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

이 필요한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 나. 시·도교육감은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실정, 교육여건,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이내에서 초빙교장 실시 학교를 자율적으로 지정
단, 국립학교의 경우는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상학교를 지정

*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1항)

2. 초빙교장 임용대상자

-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별표1에 의한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지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지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3. 초빙교장의 임기

- 가. 초빙교장의 당해학교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초빙교원 임용권자(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대학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초빙교장 임용일로부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을 임기로 함
나. 초빙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현행 교장 1차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다. 교장으로 근무중인 자가 초빙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초빙교장 임용 이전의 교장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됨
라. 초빙 교장은 초빙임기 중 전보할 수 없음

4. 초빙교장의 임기 중 면직

가. 초빙교장의 임기 중 면직 요청

- (1)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 면직”을 요청할 수 있음
- (2) 초빙교원 임용권자는 초빙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소명절차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 면직”을 요청할 수 있음
- (3) 초빙교원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 초빙교장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 면직”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4) 초빙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교운영위원회에 “초빙교장면직심의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초빙교장 면직”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초빙교장 면직요청 절차

초빙교장 면직 심의(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 초빙교장 면직 요청(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 ⇒ 초빙교장 면직제청(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초빙교장 면직 발령(대통령)

- ☞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초빙교장 면직요청”을 받은 초빙교원임용권자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인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초빙교장 면직요청”을 하여야 함

5. 초빙교장 지원자 제출서류

가. 인사기록카드 사본

나. 학교경영계획서(또는 학교경영에 대한 소견)

다. 초빙조건에 관련된 자료 및 증빙서류

라. 기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6. 초빙교장 임용 절차

초빙교장 실시 요청(학교) ⇒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 교장초빙 공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 초빙교장 희망자 접수(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상자 심의 ⇒ 초빙교장 임용대상자 2배수 추천(학교) ⇒ 단수 임용추천(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 초빙교장 임용(대통령)

- 가. 초빙교장제를 실시하고자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 요청
- 나. 초빙교원 임용권자는 학교여건,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초빙교장학교 지정
- 다. 초빙교원 임용권자는 교장 초빙목적, 초빙기간, 제출서류 등을 정하여 초빙교장대상학교 전체를 최소한 15일 이상 일괄적으로 공고(재공고기간은 초빙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함)하되 시·도의 교장 정기인사 이전에 임용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함
- 라. 초빙교장 희망자는 해당학교에 개별적으로 「초빙교장 임용신청서」를 제출하되, 접수결과 신청자가 2인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단, 2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는 경우 교장 초빙제 실시학교 지정 취소, 단, 교장 초빙을 위한 1·2차 공고 결과, 신청자가 1인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제 절차를 거친 후 단수 임용추천 가능
- 마. 초빙교장 희망자는 2개교 이상에 「초빙교장 임용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음
- 바.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 교장 대상자를 심사할 때,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품행, 지도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초빙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 초빙교장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서 순위를 명기하여 복수로 하여야 함(1·2차 공고 결과, 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단수 추천)
- 아. 초빙교장 대상자 임용추천 양식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지제9호 서식에 준함, <붙임>의 양식 참고
- 자. 초빙임용 대상자가 교장자격기준에는 해당하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인 경우, 임용 전에 교원자격검정령 관련규정에 의한 교장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 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

차. 초빙대상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 교류 임용되어야 할 자인 경우에 국립학교의 장과 시·도교육감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임용

7. 임기 만료된 초빙교장의 인사

가. 초빙기간 만료(초빙기간 만료 전에 면직한 경우 포함)된 자는 초빙교장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 다만, 교장중임을 마치고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초빙기간이 만료(초빙기간 만료전에 면직한 경우 포함)된 자는 교장으로 복귀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음

(예시) 교장(1차) ⇒ 초빙교장 ⇒ 교장 중임

장학관 ⇒ 초빙교장 ⇒ 장학관

교장(1차) ⇒ 교장(중임) ⇒ 초빙교장 ⇒ 원로교사(본인 희망)

교장(1차) ⇒ 장학관 ⇒ 초빙교장 ⇒ 교장 중임

교감 ⇒ 초빙교장 ⇒ 교감

교감 ⇒ 초빙교장 ⇒ 교육전문직

나. 교장으로 초빙된 자의 당해학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 가능

제 2 절 초빙교사제

1. 실시 대상학교

가.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 당해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사 초빙임용 실시

나. 초빙교장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역실태,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지정 후 실시

2. 초빙교사의 비율

- 가.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 당해 학교의 요청에 따라 교사 배정정원의 20%이내에서 초빙교원 임용권자가 결정
- 나. 교육감 지정 학교 : 당해 학교의 요청에 따라 배정정원의 10%이내에서 초빙교원 임용권자가 결정

3.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

- 가. 당해 지역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현직 정규 교사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초빙 대상에서 제외)
- 나. 당해 지역의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정규 교사
 - ※ 교사초빙을 위한 구체적인 초빙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4. 초빙교사 임용 절차

초빙교사제 실시 요청(학교장) ⇒ 초빙교사제 실시학교 지정(임용권자) ⇒ 교사 초빙 공고(임용권자) ⇒ 초빙교사희망자 접수(학교) ⇒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

*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는 별도의 요청 절차가 없어도 초빙교사제 실시학교로 인정함

초빙교사 임용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1절 교장초빙제의 “6. 초빙임용 절차”를 준용하여 임용권자가 정함

5. 초빙교사의 인사

- 가. 초빙교사의 당해학교 근무기간은 시·도 자체의 교사 정기전보기간에 준하여 임용권자가 정함
- 나.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 가능함. 단, 당해 학교 재초빙은 1차에 한함

- 다.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빙교사를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 불가. 다만, 임용권자는 초빙교사가 교육상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보할 수 있음
- 라. 초빙교사는 초빙기간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초빙교사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당해 학교장에게 전보 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권자에게 전보 신청을 하여야 함
- 마. 초빙교사로 근무한 자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음

6. 초빙교사 응모자 제출서류

- 가. 인사기록카드 사본
- 나. 초빙요구조건에 관련된 자료 및 증빙서류
- 다. 기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 3 절 행 정 사 항

1. 시·도교육감은 교장·교사초빙제 실시 학교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편중되어 지역간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
2. 초빙교원 임용권자는 교장·교사초빙제 실시 학교에 대한 장학협의 등을 활성화하여 초빙교원제 실시 취지 구현
3. 시·도교육감은 교장·교사초빙제 실시학교에 대해 초빙교원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초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대책을 강구하되, 가급적이면 교장·교사초빙을 위한 공고 시 동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 “초빙교원제 활성화 노력”을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 지속적으로 반영 예정
4.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는 “학교운영상황보고서”를 연1회씩 학교운영위원회와 초빙

교원 임용권자에게 보고

5. 교장·교사초빙제의 시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초빙교원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
6. 종전의 지침·질의회신·해석 중 이 지침과 상치될 경우 이 지침을 따름

<붙임>

초빙교장(교사) 대상자 임용추천 양식(예시)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200 . . .

수 신

발 신

관인

참 조

제 목 초빙교장(교사) 임용 추천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추천합니다.

순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초빙근무지		현근무지	
			학교명	직위(급)	학교명	직위(급)

비 고

제 6 장

휴직과 복직

제 1 절 휴직제도의 개요

제 2 절 휴직업무처리 일반사항

제 3 절 휴직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제 6 장 휴직과 복직

제 1 절 휴직제도의 개요

1. 목 적

-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2.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 직권휴직 】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3월 이내)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의무복무기간)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 청원휴직 】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고용기간)
- 자녀(휴직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내, 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 가능)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3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3. 휴직의 효력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 → 지체없이 복직 조치
-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직신고 → 당연 복직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

- 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일정금액 지급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봉급의 7할 지급)
 -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봉급의 8할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보수 전액 지급)
 -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 휴직 (봉급의 5할 지급 가능)

4. 휴직 절차

【 직권휴직 】

① 휴직사유 발생 → ②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 → ③ 휴직발령(임용권자)

【 청원휴직 】

① 휴직사유 발생(휴직사유, 관련서류 등 제출) → ②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 → ③ 휴직발령(임용권자)

5. 휴직제도 연혁

- '49. 8 : 질병휴직제도 도입(국가공무원법 제정 법률제44호)
- '53. 4 : 교육공무원법 제정(기존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준용)
- '63. 12 : 군복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 수행휴직 추가

- '65. 10 : 해외유학 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 '77. 12 : 재외국민교육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 '81. 11 : 임신·출산휴직, 국내연수휴직 추가
- '94. 12 : 육아휴직, 간병휴직 추가
- '96. 8 : 1년 이상의 해외연수 휴직, 국내연수 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추가
- '00. 1 : 교원노동조합 전임 근무자 휴직 추가

제2절 휴직업무처리 일반사항

1. 큰 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 (사유,기간 등)
- 국가공무원법 제43조 (결원보충)
-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봉급 및 수당지급)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경력기간계산 등)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 (노조전임자의 지위)

2. 휴직사유 및 기간

가. 직권 휴직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종 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요 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요양을 할 때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소집된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 간	1년 이내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재 직 경 력 인 정	· 경력평정 : 미산입(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 승급제한(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 경력평정 : 산입 · 승급인정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 경력평정 : 산입 · 승급인정	· 경력평정 : 산입 · 승급인정
결 원 보 충	결원보충 불가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봉 급	· 봉급 7할지급(결핵은 8할) ·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 당	· 공통수당:보수와 같은 물 지급 · 기타수당:휴직사유별 차등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 타	· 의사진단서 첨부				

나. 청원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종 류	유 학 휴 직	고 용 휴 직	육 아 휴 직	연 수 휴 직	간 병 휴 직	등 반 휴 직
근 거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요 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된 때
기 간	3년 이내 (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고용기간	1년 이내 (여교원의 경우 2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3년 이내	1년 이내 (재직기간중 총 3년)	3년 이내 (3년 연장가능)
재 직 경 력 인 정	· 경력평정: 5할 산입 · 승급인정	· 경력평정: 산입 · 승급인정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는 각 5할 산입)	· 경력평정: 최초 1년범위내 10 할 산입 · 승급제한	· 경력평정: 5할 산입 · 승급제한	· 경력평정: 제외 · 승급제한	· 경력평정: 제외 · 승급제한
결 원 보 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봉 급	봉급5할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 당	· 공통수당: 5할지급 · 기타수당: 미지급	지급안함	월30만원지급 (1년이내)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 타			출산휴가 별도 신청 가능			

* 육아휴직에서 쌍생아의 경우, 1세 미만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 이내 휴직 가능 (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 가능)

3. 휴직의 효력 및 복직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효 력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면직처분도 가능 (이 경우,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 할 수 있음)
 - 유학휴직, 고용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 재확정 후, 면직절차를 밟아 호봉승급에 다름이 없도록 함

나. 복 직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제3항)

-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조치
-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 *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다.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절차

- 발령기준일
 - 복직원(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발령조치 (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 휴직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발령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음
 -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

- 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호)

4. 결원보충 (국가공무원법 제43조)

가. 의 의

-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 기관별 정원관리원칙(조직관계법령상)의 예외 인정

나. 인정 구분

-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해외유학, 연구·교육기관 연수, 육아, 간병, 교원노조전임자 휴직 등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 일로부터 결원보충 인정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 별도의 결원보충 승인은 필요 없음

다. 별도정원의 소멸

- 휴직자의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 이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 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 이 별도정원은 당해 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소멸됨

5. 휴직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해외유학 휴직, 고용휴직, 국내연수 휴직, 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 신청을 하도록 함
 - * 예) 유학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배우자 동반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휴직에 대하여는 복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명령(유학휴직에 대하여)과 휴직명령(동반휴직에 대하여)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음
-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1조)
-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인하여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
 - ※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개정 ('96. 8. 14 개정내용)
 - 개정전 : 2년 이상 휴직한 여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연수를 받아야 한다.

- 개정 후 :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6. 직위해제 등과의 구별

가. 직위해제와의 구별

- 휴직과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서로 같으나,
 - 휴직은 부여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이 보장되는 점에 비하여,
 - 직위해제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직(직위)을 강제로 해제시키는 제재적 의미를 가지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 직위해제의 사유로는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이며, 직위해제의 기간은 승급소요 최저년수, 경력평정기간 및 공무원 연가기간 계산에서 제외됨
- 그리고, 경력평정,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휴직은 그 종류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다르나, 직위해제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을 이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월이 경과된 후에는 5할을 지급함.
- 휴직은 본인의 청원 또는 직권에 의하여 발생되고, 휴직사유가 소멸 또는,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이 이루어지는 반면, 직위해제는 강제로 이루어져 복직되지 않으면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속함

나. 정직과의 구별

- 휴직과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무복귀를 전제로 미리 기간(정직의 경우는 1-3월)을 정하여 실시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나,
 - 휴직은 본인의 청원이나 공무상 의무이행을 위해 직권적(직권적이라도 객관적 사실로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 정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징계에 해당하는 임용권자의 직권처분 행위임.

- 그리고, 경력평정, 보수지급에 있어 휴직이 그 종류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르나, 정직은 보수의 ⅔를 감하여 지급함.

다. 직권면직과의 구별

- 휴직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복직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데 반하여, 면직은 원에 의하든 직권에 의하든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임
-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그의 교원신분을 박탈하여 교직으로부터 제거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상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는 다음과 같음
 -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③ 직위해제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④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在營中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 ⑤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⑥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중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3절 휴직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1. 질병휴직

가. 근 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 휴직사유

-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신체·정신상의 장애의 범위 :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는 모두 해당됨
 - 공무상 질병휴직, 일반 질병휴직 구분 : 공무원 연금법 참조

라.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 휴직기간 : 1년 이내
-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의 연장이 가능함.
 - 휴직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함
 -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

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75조)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총무처 인가 12107-45, 1996. 1. 25)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총무처 인제 200-1489, 1972. 8. 5)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 휴직사유 입증서류
 - 의사의 진단서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 ※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질병휴직 기간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사.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 일반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미사용연가범위내) → 일반휴직(1년)
 - 공무상질병휴직
 -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미사용연가범위내) → 공무상질병휴직(1년)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지침” <별첨1> 참조

아.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항 제1호)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질병인 경우는 포함,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 결원보충 :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불가

○ 보 수(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 봉 급

- 일반질병 : 봉급액의 7할 지급
- 결핵성질환 : 봉급액의 8할 지급
- 공무상질병 : 봉급액 전액 지급

- 수 당(공무원수당규정)

* 일반질병 휴직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times$ 6분의1 지급
- 정근수당 : 휴직1월에 대하여 '수당액 $\times$ 6분의1' 감액 지급

(정근수당가산금은 수당액의 3할을 감액하여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 $\times$ 0.3' 감액 지급
-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단,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 '수당액 $\times$ 0.3'감액 지급)은 지급하지 아니함

* 결핵성질환 휴직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times$ 6분의 1 지급
- 정근수당 : 휴직1월에 대하여 '수당액 $\times$ 6분의1' 감액 지급

(정근수당가산금은 수당액의 2할을 감액하여 지급)

-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단,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 '수당액 $\times$ 0.2' 감액 지급)은 지급하지 아니함

* 공무상질병 휴직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 전액 지급

2. 병역휴직

가. 큰 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나. 휴직사유

- 휴직사유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남자 교육공무원
-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의 의미(병역법 제2조)
 - 징집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소집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의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 현역장교, 하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 이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병역의무의 종류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지원입대 하거나 사병으로 근무 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복무하더라도 병역법상 의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휴직사유에 포함됨,
 -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그 초과근무기간이 병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기간의 범위 내라면 정당한 입대휴직이며, 복직처리도 가능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 복무기간이라 함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30조와 군인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말함

- *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재학시 군인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軍獎學生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장교 또는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무복무기간(단기 복무장교인 경우 3년)에 軍獎學金을 지급받고 학업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의무복무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으로 봄

○ 휴직발령기준일 및 입영준비기간의 처리

- 군입대를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영일자로 휴직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완함
- 입영준비기간의 처리 : 연가 사용 (공무원휴가업무처리 요령)

○ 휴직의 횟수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 처리되어 복직을 한 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을 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함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등을 명시
 - 직권휴직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님
- 휴직사유 입증서류
 - 병역법 제6조에 의한 병역부과통지서(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님)
 - 먼저 휴직처분을 하고 사후에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 받아 첨부하여도 됨

바. 복직절차

- 귀향 처리된 자의 처리
 - 병역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 처리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총무처 인제 203-1752)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在營中 軍務를 이탈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7호)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
-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지급안함.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고 2년미만 근무한 자는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
 -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

3. 생사불명

가. 근 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나. 휴직사유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생사 또는 소재 불명의 의미 :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여부와 소재가 모두 불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한 쪽만 알 수 없어도 휴직처리 하여야 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3월이내
- 휴직발령기준일 :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한 날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휴직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함
- 휴직사유 입증서류
 - 당해 교육공무원이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명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처리 후 3월이내에 본인이 복귀신고를 할 경우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 결원보충 : 결원보충 불가
- 보 수
 -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 지급
 -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

아. 국가공무원법의 직장이탈금지 조항과의 관계

-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은 대부분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불법단체에 의한 납치 또는 공무원 본인 스스로 잠적하는 등 내·외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됨
 -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의 원인이 외부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가 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4. 법정 의무수행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나. 휴직사유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기타 법률의 의미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동안 직무를 이탈하게 될 경우
 -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법률상의 의무수행으로 보아 그 임기 중에는 휴직처분을 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2항)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의무복무기간 또는 임기
- 휴직발령기준일
 - 법률상의 의무수행 : 병역휴직과 동일
 -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 임기 개시일
- 휴직의 횟수
 - 법률상의 의무수행 : 병역의무와 동일
 -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 : 제한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법률상의 의무수행 : 병역의무와 동일
 -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 : 당선통지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병역휴직과 동일
 - 수당 : 병역휴직과 동일

5. 유학휴직

가. 근 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나. 휴직사유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유학 또는 연구·연수의 범위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 (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

- * 국비유학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임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 연수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포함한다)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 (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의 의미

-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 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 * 예) 교사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1997.1.1~1998.12.31(2년간)까지 휴직을 하였으나, 등 기간중 논문이 완성되지 않아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최초휴직의 잔여기간 1년 + 연장가능기간 3년)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연장이 가능함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 연장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고, 유학기간의 1/2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임

○ 기타 유의사항

-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없이 B대학으로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 취득을 하는 등의 행위는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함.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
 -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50%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3호)
-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공무원보수규정)

- 봉 급 : 50%지급

- 수 당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times 1/6$ 지급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은 '수당액 $\times 0.5'$ 감액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은 '수당액 $\times 0.5'$ 감액 지급
-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단,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times 0.5'$ 감액 지급)은 지급하지 아니함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지침
(총무처예규 제309호, 97. 1. 6)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훈련 중에 있거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2호 (해외유학)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국외훈련이수 공무원이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1년 미만의 기간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음. 다만,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6. 고용휴직

가. 근 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나. 휴직사유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휴직의 범위

- 국제기구의 범위 :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써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말함
- 외국기관의 범위 :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안됨. 외국의 정부기관이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있는 연구소·공기업 등도 해당됨
- 재외국민교육기관의 범위 :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학교·학원·교육원·강습소·토요학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함

※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원으로 참여할 경우, 고용휴직 사유에 포함 (교원 12110-477, '02.7.29)

- * 고용의 의미 : 당해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 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고용기간

○ 휴직의 신청

- 법정휴직기간인 고용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의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

* 재외 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휴직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한국국제협력단(해외봉사단)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의함

○ 임용권자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허가 및 경력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

※ 휴직·복직 시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휴직시) : 주당 수업담당 예정시수 및 보수지급예정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복직시) :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가능한 월별로 작성)
- 보수지급 증거자료(복직시)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등
- 교원수업시수 배당표 등(복직시)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당 수업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 기타 : 기타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임용권자가 정하여 청구할 수 있음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해고 등)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퇴직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기간 만료 전에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을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보수지급 자료 등)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복직을 명할 수 있음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100%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 100% 산입(비상근인 경우 50%산입,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3호)
 - 상근근무 : 주당수업시수 15시간 이상
 - 비상근근무 : 주당수업시수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
 - 기 타 : 주당수업시수 5시간 이하는 휴직사유 불인정
-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 하도록 함)
-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하도록 함
- ※ 불입 :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제도 운영개선 방안('99.3.9) 참조
-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 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 지급
 - 수 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 지급

7. 육아휴직

가. 큰 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나. 휴직사유

- 자녀 (휴직신청 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단, 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의 자녀에 한한다)
-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 휴직 신청 당시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의미
 - 휴직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1세 미만이면 되며,
 - 휴직기간을 휴직가능한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때는 1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휴직연장이 가능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1년 이내 (단, 여교원의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 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 (예, 6월 또는 1년 6월)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1년의 범위내에서는 출산 전 임신사유로 휴직을 하고 복직 한 후 출산 시 출산휴가를 받고 다시 양육사유로 인한 휴직 가능
 - 다만,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내라 하더라도 1년

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유학휴직과 동일)하고, 복직 후 재휴직은 불가능하며 총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만 가능

- * 출산 후 1년 이내에서 출산휴직을 한 경우에도 방학기간 동안 복직을 하고 남은 기간동안 다시 재휴직하는 사례 방지

○ 휴직의 횟수

- 자녀 출산 등 휴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횟수에 관계없이 휴직이 가능함 (단,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함)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출산휴가와와의 관계

- 여자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의 출산휴가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직기간내의

육아휴직 가능

아.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산입(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산입(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3의3)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지급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수당 :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수당 월 30만원 지급

※ 육아휴직 관련법령 개정내용 (교육공무원법 개정, '00.1.28)

1. 개정내용

- 제44조 제1항 개정
 - 종전 :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 본인이 원할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부칙
 - 다만, 제44조제1항의 규정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44조 제4항 신설
 -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는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 제45조제1항제6호 개정
 - 종전 :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 개정 :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개정내용 적용

- 임용권자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하는 기간
 - 최초로 신청한 1년 이내의 기간(신청기간은 본인 결정)

- 육아휴직 기간 중 근속기간에 삽입되는 기간
 -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1년이 도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휴직기간
- 여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
 - 최초 1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최초에 1년 미만의 기간을 휴직하였다면 최초의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함(유학휴직 적용과 동일)
- 호봉 및 경력평정 적용 범위
 - 육아휴직 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은 교육공무원법 개정(2000. 1. 28)전의 임신·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호봉을 재확정하여 반영
 -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휴직제도가 시행전('81년 이전)에 임신·출산과 관련되어 질병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해당되지 않음

교육부 복지 81800-327(2000. 4. 27)

교육공무원의 임신·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산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1. 관련 법령 및 업무처리 지침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항은 “휴직기간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함이 없이 직접 규정한 내용이므로 공무원보수 규정의 개정없이도 최초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10할 산입함

※ ‘휴직기간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이라 함은 최초 휴직한 초일로부터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1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휴직 기간을 말함

- 교육공무원법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 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 관련 규정 중 제44조제1항의 「육아휴직을 본인이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휴직허가 의무규정만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다른 육아휴직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00.1.28)부터 시행하도록 함.

- 육아휴직 기간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토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항 후단의 개정 조항(2000.1.28)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의하여 호봉재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2000년 1월 28일이전에 임신·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을 했던 교육공무원도 호봉을 재확정하여 휴직기간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함.

2. 호봉재확정 시기

- 2000. 2. 1자로 호봉을 재확정하여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함
- ※ 관련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

8. 국내연수휴직

가. 근 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휴직의 범위 :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학위취득 등)할 경우를 말하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학술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말함
-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시 휴직가능
-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교육부 교정 07000-735 '97. 11. 18)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
 -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가능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조기학위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또는 연수 수료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출하여야 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50%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 (단, 상위자격의 학위취득을 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호봉을 재확정 함)

○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 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 지급
- 수 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

※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지정은,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 제3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 (03.120)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지정
(교육부훈령 제599호, 2000. 2. 14)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제외한다.

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다. 한국과학기술원

라. 기타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 ‘라’ 항에 해당되는 기관

-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재)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재) 부산발전연구원

* 국립학교

9. 간병휴직

가. 근 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나. 휴직사유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남·여교육공무원
 -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간호대상자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초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이혼한 교육공무원에게 간호대상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3년 이내)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 휴직기간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간병휴직을 하여야 함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초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의료법 제18조에 의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사유와 간병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만1세 미만이어야 함

아.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
 -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 지급
 -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

10. 동반휴직

가. 근 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나. 휴직사유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휴직 인정의 범위
 -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파견, 연수), 사립학교 교원,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상사의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으로 해외근무를 하게 된 때 또는 연수 및 학위취득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 휴직기간 : 3년 이내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정 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가능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등
- 해외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 등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다른 휴직사유와의 관계

- 배우자 동반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과 해외기관 임시고용의 사유도 포함

아.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
 -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 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 지급
 - 수 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

11. 노조전임자휴직

가. 근 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나. 휴직사유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휴직 인정의 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를 받은 교육공무원
 - * 전임자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전임기간
- 휴직의 신청
 - 휴직신청서를 제출 받아 전임자 허가 및 휴직처리가 병행하여 처리토록 함(휴직신청서를 전임자허가신청서로 봄)
- 휴직의 횟수,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 전임자 허가조건, 허가기간, 등은 감안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은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음

바. 복직절차

-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불가
- 휴직기간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허가가 있는 경우에 휴직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 됨. 이 경우 복직 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100%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 100% 산입(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3의2)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 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 지급
 - 수 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

위에 예시한 “휴직업무 처리요령”은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으로, 교육감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운영함

<별첨 1>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 지침

(총무처 인가 12107-351, 1996. 6. 11)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병가는 연60일 범위안에서, 공무상 병가는 연18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승인 결정시까지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병가 60일과 개인의 법정연가를 사용하고도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일반질병 휴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질병휴직기간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왕에 적법하게 처리한 휴직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함(총무처 인가 200-697, 1983. 3. 8)으로써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지연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1996. 6. 11이후) 질병휴직기간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공무상 요양승인이 공상병가 180일, 일반병가 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 허가일수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상병가·일반병가 및 법정연가가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함)하도록 하여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통보함
- * 종전의 “질병휴직에 있는 자에 대한 병가처리 여부에 대한 회신”(총무처 인가 200-697, 1983. 3. 8) 내용은 폐지함

《 예 시 》

- 공무원이 근무중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병가(60일), 미사용연가(13일)를 모두 사용한 후 휴직기간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기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 일반병가	: 1996. 3. 29 ~ 5. 27(60일)
— 미사용연가	: 1996. 5. 28 ~ 6. 12(13일) *일요일(2일)
— 휴 직	: 1996. 6. 13 ~ 현재
— 공무상 요양승인일	: 1996. 7. 14

- 1996. 6. 11이후부터는 질병휴직기간중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기 경과한 휴직기간을 공무상 병가기간으로 대체하되 공무상 요양승인이 공무상 병가(180일), 일반병가(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일수(최고 23일)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상병가·일반병가 및 법정연가를 합산한 날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가 가능함

- 즉, 위의 사례의 경우 당초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1996. 12. 19까지는 공무상병가기간으로 대체하고 그 이후에도 질병이 완쾌되지 아니한 경우에 질병휴직으로 처리하여야 함

<별첨 2> 교정 16330-241('99.3.11)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제도 운영 개선 방안

1. 고용휴직 제도 현황

가. 개요

- 휴직의 요건 :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 등에 임시로 고용된 때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휴직기간 : 고용기간

<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5호 >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용어의 설명

- 국제기구 :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써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말함
- 외국기관 :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는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않음(총무처 인가 200-4682, 1983.12.23)
- 재외국민교육기관 :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학교·학원·교육원·강습소·토요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함(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
- 고용 : 당해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김종양외1인, 註解 國家公務員法) 따라서 임금을 받지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님 →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나. 고용휴직제도 운영의 실제

○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①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②출입국확인서
③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타 임용권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휴직기간의 재직 경력 인정 등

- 경력인정 : 휴직기간의 100% 인정(단, 비상근일 경우는 50% 인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호)
- 호봉승급 : 휴직기간의 100% 인정(단, 비상근일 경우 50% 인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3호)

※ 상근 및 비상근의 구별(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

- 상 근 :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비상근 : 주당 9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

- 보수 및 수당 : 휴직기간 중 보수 및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2. 운영상의 문제점

○ 고용휴직 허가 절차가 형식적

- 휴직신청자가 제출하는 고용계약서는 주재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지만
확인 절차가 형식적임 → 영사의 확인은 단순히 영사관을 경유하였다는 의미
밖에 없음
- 따라서 고용기관의 장과 휴직신청자가 짜고 고용계약서를 조작하여도 임용권
자가 고용계약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 함

○ 고용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실제 근무조건과는 다른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고용휴직 처리

- 휴직신청시 제출한 고용계약서에 정하여진 주당 근무시간 및 급여 등의 근무 조건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 계약서에는 주당 수업시간과 보수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을 뿐 봉급명목으로 받지 않음
 - 교통비 명목으로 받는 금전은 보수로 볼 수 없음(감사원의 지적)
- 경력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 복직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호봉재확정 및 경력산입)에 대하여 고용기관의 장이 실제 근무한 내용과는 다르게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하고
 - 임용권자도 교원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경력 및 호봉 재확정 등에서 부당하게 경력을 인정받는 사례 발생

※ 감사원의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 사례

'98. 8. 17~10. 2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외교통상부분부 및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상당수의 교사들이 실제 고용내용과는 다른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휴직처리 하였고
- 복직시에도 실제 수업시간 및 보수 등 고용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력 및 호봉을 인정받은 사실이 지적되었음

3. 개선방안

가. 개선의 필요성

-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고용계약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 하거나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는 등 고용(재외국민교육기관)휴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

- 휴·복직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대하여 교육기관 주재국에 파견된 교육관 등으로 하여금 동 내용을 확인받아 제출토록 하는 등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필요

나. 개선내용

1) 휴직의 요건 및 경력인정의 요건 강화

- 휴직 요건의 강화
 -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미만일 경우 휴직사유로 보지 아니함
 -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휴직사유로 보지 아니함
- 경력 및 호봉승급기간 산입 요건의 강화
 - 상 근 : 고용기간의 100%에 해당하는 경력 및 호봉승급 기간 인정
 - 비상근 : 고용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경력 및 호봉승급 기간 인정
 - 상근 및 비상근의 요건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안)
상 근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	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비상근	주당 9시간 이하 근무	주당 수업시수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
		※주당 5시간 이하는 휴직사유로 인정안함

※ 주당 수업시수 설정 근거

-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수업시수가 15시간이므로 동 평균수업시수 이상을 담당하여야만 상근으로 인정토록 함.
- 최소한 1일 1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휴직사유로 인정하도록 함.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단, 주당 5시간 이하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 하도록 함

○ 보수(호봉 재확정)관련 사항

- 고용기관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는 것은 보수로 보지 아니함
- 따라서 당초의 고용계약과는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호봉승급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 이 경우도 무 보수가 6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하여 복직조치하도록 함

2) 제출서류의 확인 절차 철저 이행

- 휴직신청 및 복직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재외주재 교육관 및 교육원장(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 이하에서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도록 함
- 임용권자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허가 및 경력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

< 휴직 또는 복직시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고용계약서(휴직시) : 주당 수업담당 예정시수 및 보수지급예정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복직시) :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가능한 월별로 작성)
- 보수지급 증거자료(복직시)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등
-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복직시)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당 수업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 기타 : 기타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임용권자가 정하여 징국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 각급 기관(학교)의 교육공무원 임용권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되어 휴직하고자 하는 교원에게는 동 지침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함

- 동 지침을 휴직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거나, 휴직자가 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예) 주당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인 상태로 6월 이상 경과할 시 “휴직사유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복직하여야 하며,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직권연직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등 개정된 사항을 주지시키고 증거서류(각서, 확인서 등의 형태)를 남겨 놓아, 추후 민원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 복직시 제출 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람

- 동 지침의 적용시기

- 휴직신청자

- '99. 4. 1 이후 휴직신청자부터 적용하되
- '99. 3. 31 이전에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고,
- '99. 4. 1 이후에 발급받는 서류에 대해서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휴직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람.

- 복직(신청)자

- 경력인정 및 호봉승급 요건(상근/비상근)의 개정 내용은 2000. 4. 1일부터 적용하되, 복직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절차(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는 '99. 4. 1부터 적용함

※ 복직하는자의 경력 및 호봉승급 기간의 산정은 2000. 3. 31이전의 재외국민교육기관 고용 경력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근/비상근의 구분에 따르고, 2000. 4. 1이후의 재외국민교육기관 고용 경력에 대하여는 개정된 상

근/비상근의 구분에 따름.

· 따라서, 2000. 4. 1 이후에 주당 5시간이하로 근무 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무할 경우 그 기간이 6월이상 경과하면 휴직소멸사유에 해당되어 복직조치 하여야 함

· 각급 기관(학교)의 교육공무원 임용권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되어 휴직 중인 교원에게 동 내용을 알려 복직시 제출 서류 준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2000. 4. 1부터 변경되는 사항(휴직요건의 강화, 경력산정 및 호봉승급요건의 강화)을 미리 알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기타 이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급 기관(학교)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람

○ 참고사항

－ 개정된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재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되어 휴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 중 일부는 2000. 4. 1이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 이들 교원 중 동반휴직사유에 해당되어 동반휴직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 고용휴직의 목적과 동반휴직의 휴직조치를 동일자로 처리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편의를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제출서류도 우편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여 주는 등 동 지침의 시행으로 교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별첨 3>



질의 회신 내용

1. 복직후 동일질병이 재발한 경우의 인사처리

(총무처 인기 12107-45, 1996. 1. 25)

◆ 질 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완치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이 재발되어 다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의 범위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무원이 질병으로 휴직하다가 휴직기간(1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동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다만,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나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질병휴직기간에 대한 질의

(총무처 인제 200-1304, 1972. 7. 8)

◆ 질 의

- 총무처 예규 제9호('64. 4. 13) 인사발령예문 16호에 의하면 휴직기간을 명시함이 없이 발령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휴직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휴직발령하였을 경우 휴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의 휴직원에 기재된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볼 것인지?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규정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는 휴직원에 기재된 기간에 구애없이 재휴직 또는 휴직기간 연장조치없이도 계속 휴직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한지?
- 만일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 기재된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본다면 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 또는 휴직기간 연장허가를 득하지 않고 계속 결근할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 회 신

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본인이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권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바, 휴직발령시 그 기간은 명시되지 아니하므로 휴직기간은 장기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양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상태는 그대로 계속되는 것임

3. 지원입대자의 복직에 관한 인사처리

(총무처 인가 200-1344, 1982. 12. 4)

- 공무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휴직사유로서 만기제대후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처리하여야 함
-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지원에 의하여 단기하사관으로 복무하였을 경우에도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복직처리가 가능함
- 단기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여 제대한 경우에도 그 초과근무기간이 병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의 범위내라면 복직처리가 가능함

4. 군복무 휴직을 위한 발령기준일과 귀향 처리된 자의 처리

(총무처 인가 203-1752, 1971. 7. 9)

- 휴직발령기준일 : 군입대를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영일자로 휴직발령을 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입영준비기간의 처리 : 입영준비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 귀향처리된 자의 처리 : 병역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 처리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5. 군복무 휴직 후 복직원 미제출자의 처리

(총무처 인제 200-1142, 1971. 4. 25)

◆ 질 의

- 군복무를 위한 휴직자가 휴직사유가 소멸(제대)된지 수개월 후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인사처리 방법은?

◆ 회 신

- 제대사실 확인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방부 또는 당해 공무원의 관할 병적지의 병무청에 제대사실 여부를 확인함
- 복직발령조치 : 제대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발령하여 이를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불응자에 대한 조치 : 복직발령 통지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이 타당함

6. 군입대 휴직 중 장기복무 지원자의 처리

(총무처 인기 200-1344, 1978. 7. 10)

◆ 질 의

- 입대휴직중인 자가 군복무중 장기 군복무를 지원하였을 경우의 공무원 신분처리는?

◆ 회 신

- 군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장기 군복무를 지원하였을 때에는 면직 조치하여야 함

7. 장교입대자의 인사처리

◆ 질 의

- 공무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경우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장교로의 지원입대는 직업군인으로 간주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공무원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장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4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조치함

8. 군복무중 사고자(탈영 등)의 복직여부

(사행인 212, '63. 11. 27)

- 군복무중 사고로 복무를 중단하였다가 그 후 자수하여 잔여복무기간을 필한 경우에는 복무가 중단되어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휴직처분의 효력이 상실됨
→ 복직불가

9. 공무원이 3사관학교에 입교한 경우의 인사처리

(총무처 인기 12107-224, 1993. 5. 20)

◆ 질 의

- 군입대 휴직에 의해 사병으로 복무중 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임관한 경우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된 경우로 보아 휴직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보유하되 잠정적으로 직무수행의무를 해제하여 주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의 경우에 있어서도 병역복무방법 중 최단기간내에 의무를 필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인사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병역의무이행의 여러방법중에서 본인의사에 의해 3사관학교에 입교한 경우에는 수업연한 및 복무기간이 사병 등의 복무기간보다 훨씬 길어 효율적인 정부인력 운영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대휴직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는 동 규정에서 정한 휴직으로 인정할 수 없음

10. 외국기관 임시고용으로 인한 휴직

(총무처 인가 200-4682, '83. 12. 23)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중 “외국기관”의 범주에는 외국의 정부기관, 공공단체는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함

11. 무단결근자의 휴직사유 해당여부

(총무처 인가 12107-587, 1996. 9. 23)

◆ 질 의

-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처리 방안

◆ 회 신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직권휴직사유로 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12. 해외유학 휴직자의 휴직기간 재연장 및 타사유에 의한 재휴직 여부 (총무처 인가 01101-371, 1992. 7. 2)

◆ 질 의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휴직기간을 연장받은 자가 학위를 취득코자 다시 2차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지 여부?
- 현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또 다시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72조제5호에 의해 해외유학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 휴직기간을 2년 연장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해외유학 휴직은 타휴직과 달리 휴직기간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2년한)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총무처 교훈 01146-322, 1990. 7. 14)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함. 따라서,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후 다시 국제기

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휴직을 제한함이 타당할 것임

13. 해외유학 휴직자의 휴직기간 연장범위

(총무처 인가 12107-121, 1996. 2. 7)

◆ 질 의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제7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1년간 해외유학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동 휴직기간 만료후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 만료후 추가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 회 신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바, 이에 따라 동법 제72조제5호에서는 동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견 질의사안에 대하여 보면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동법 제72조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상 휴직기간 연장한도인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2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또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음. 참고로 휴직연장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라면 전체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14. 해외유학 휴직 가능여부 질의

(총무처 인가 12107-308, 1996. 5. 18)

◆ 질 의

-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처분해야 하는지 또는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 회 신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휴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물론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 임용권자는 당해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휴직자의 복직후 당해 업무수행 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15. 청원 휴직사유로 휴직중인 자에게 다른 요건의 휴직사유로 변경 가능 여부

(총무처 인가 12107-430, 1993. 9. 18)

◆ 질 의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동 고용휴직을 동조동항제2호에 의한 해외유학 휴직으로 변경가능한지?

◆ 회 신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국제기구·외국기관에 임시고용)의 사유로 현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휴직사유를 동조동항제2호(해외유학)의 사유로

변경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없이 휴직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임용상의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는 것이 되어 인사발령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휴직자 복귀시의 인사 처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직절차를 거친 후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는 있으나(복직된 날에 동일자로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휴직중인 자를 휴직사유만 변경하여 휴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16. 육아휴직 중 휴직기간이 남아있어도 복직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교육부 교정07000-785, 1997. 12. 9)

◆ 질 의

- 육아휴직 중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복직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지체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아울러, 복직신청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 휴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증거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하여야 함

17. 휴직자의 결원보충 방법

(교육부 교정01210-777, 1997. 12. 5)

◆ 질 의

- 1년이상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과원교사로 대체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질의와 같은 방법으로 과원교사를 배치하여 과원이 해소된 후에 발생하는 결원교사에 대해서는 신규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의해 6월이상 휴직하거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1년이상 장기특별연수를 위한 파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직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과원교사가 있을 때는 과원교사가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과원교사를 임용(과원교사를 별도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정원에 해당하는 수 만큼의 과원교사가 없어지는 것임)할 수 있으며
- 상기와 같이 조치하여 과원교사가 모두 해소된 후,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교사를 임용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음

18. 질병휴직의 연장가능 여부

(교육부 교정01210-774, 1997. 12. 5)

◆ 질 의

-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동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1년간 연장하고자 할 때, 그 가능여부와 절차는?

◆ 회 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병휴직의 경우 법정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는 없음

19. 휴직가능사유 여부

(교육부 교정 07000-735, 1997. 11. 18)

◆ 질 의

○ 연구소나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로 휴직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바, 연구소나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동법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 여교원의 산휴 및 휴직에 관한 질의

(교육부 교정 07000-708, 1997. 10. 31)

◆ 질 의

○ 여교원이 임신으로 8개월간을 휴직코자 할 때 6월은 휴직으로 처리하고 2월은 산휴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와 그 처리방법은?

◆ 회 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와 동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3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휴직기간이 8개월 필요하다면 6개월간 휴직을 한 다음 출산일을 전후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휴가는 휴가를 한 다음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휴직은 휴직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됨

21. 휴직사유가 중복될 때 적용해야 할 사유

(교육부 교정81801-638, 1997. 9. 25)

◆ 질 의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에 의한 휴직(배우자가 국외근무 또는 국외에서의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과 동법동조제6호에 의한 휴직(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사유가 중복될 때 어느 휴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휴직은 본인의 휴직신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당해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동 사안은 휴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해당 호의 휴직 사유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22. 국내연수 휴직의 경우 봉급지급 여부

(교육부 교정07000-364, 1997. 5. 23)

◆ 질 의

- 국내연수 휴직인 경우의 봉급지급 여부 및 그 적용범위는?

◆ 회 신

- '96. 8. 14 개정된 교육공무원 휴직관련 주요내용은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이 신설되었으며, 국내연수를 위한 휴직자의 봉급지급과 관련하여 신설 또는 변경된 사항은 없음. 즉 국내 대학교에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봉급이 지급되지 않음
- 다만, 해외유학으로 휴직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23.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가능 여부?

(교육부 교정 07000-202, 1997. 3. 7)

◆ 질 의

○ 해외 어학연수를 1년이상 갈 경우 휴직이 가능한지?

◆ 회 신

○ 외국에서 1년이상 연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신청이 가능함. 다만, 휴직제도 운영은 시·도교육감이 교원수급, 예산사정 등 각급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함

24. 교육공무원법의 휴직에 관한 조항 해석

(교육부 교정 81801-752, 1996. 11. 12)

◆ 질 의

○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에 의한 사유로 보아 휴직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에 의한 연수의 범위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하고, 연수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휴직의 허가여부는 교원의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임

25. 해외유학 휴직에 관한 질의

(교육부 총무 200-10220, 1978. 2. 14)

◆ 질 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유학으로 3년간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자가 수개월간 근무한 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휴직 발령할 수 있는지?

◆ 회 신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복직 후 동일한 사유로 재차 휴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인의 연수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차 휴직발령할 수 있다고 봄(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참조)

26. 입대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사의 신분처리절차에 관한 질의

(문기책 810, 1971. 12)

◆ 질 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3호(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처리된 교원이 병역복무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장기간(1년, 2년) 행방불명되어 복직되지 아니한 경우 신분처리 여하?

◆ 회 신

-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복직한 자이나(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3항 :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할 때 당연 복직 됨) 동법 제47조제1항제4호(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휴직을 명하고,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동법 제46조제1항제5호(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므로 직권면직하여야 함

27.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에 관한 질의

(교육부 교직 200-113, 1982. 3. 12)

◆ 질 의

- 교육공무원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9회 아시아 경기대회에 대비한 선수강화훈련에 참가하고자 할 때, 동 훈련참가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규정에 의한 휴직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신

- 현직교사로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선수강화훈련 참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사유가 될 수 없음
- 다만, 교육공무원이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선수강화훈련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8. 신체검사불합격으로 귀향한 휴직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질의

(총무처사행인 212, 1963. 7. 5)

◆ 질 의

- 교육공무원이 징집영장을 받음으로써 입대를 위한 휴직 발령을 받고 입소하였으나 훈련소에서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귀향조치되어 해당 시·도에 복직원을 제출하였더니 해당 시·도에서는 입대를 위하여 휴직발령을 받은 자는 군복무를 필하여야만 복직될 수 있다는 견해인 바,
- 위와 같은 경우 영장발부와 동시에 휴직조치함이 정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신체검사 후 귀향조치되는 자의 신분처리 여부?

◆ 회 신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자가 신체검사 불합격이나 징집면제 조치를 받고 되돌아 왔을 경우에 이는 휴직사유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을 하여야 함

29. 지원입대자의 인사처리에 관한 질의

(총무처사행인 212, 1963. 9. 10)

◆ 질 의

- 공무원이 복무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원입대하는 경우에 휴직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공무원이 복무 중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지원입대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미리 이행하기 위하여 장교나 직업군인이 아닌 사병으로 지원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처리하고 퇴영과 동시에 복직할 수 있음

30. 입대자의 인사처리에 관한 질의

(총무처 인가 01101-4401, 1985. 12. 24)

◆ 질 의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을 명받고 신체질환으로 입영한 날 귀향조치되어 약4개월 자가치료 후 재입영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을 경우 귀향조치시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인사처리는?

◆ 회 신

- 공무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인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영부대의 장은 신체등위·치유기간 등을 정하여 귀향조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병역복무를위하여 휴직한 자가 귀향조치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원의 제출 등 직무복귀를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권면직할 수도 있겠으나 다만, 병역법상의 귀향조치는 재입영이나 입영을 위한 대기기간이라 할 수 있고, 본건의 경우 그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므로 본인의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 한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31. 휴직 중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리

(총무처 인가 125-2717, 1981. 6. 25)

◆ 질 의

- 공무수행 중 사고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상휴직 중인 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의 인사처리는?

◆ 회 신

- 휴직 중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상태에서 기소일자로 직위해제하여야 함

32. 징계처분기간 중 휴직한 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 등의 계산

(총무처 인가 200-759, 1979. 4. 18)

◆ 질 의

- ‘75. 7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된 후 군에 입대하였다가 복직하였을 경우
- 승진임용제한 기산일은?
- 경력평정시 제외되는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 회 신

- 징계처분은 휴직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것이 아니며
- 또한, 병역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복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규정 등을 감안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 계산 및 경력평정시 제외되는 기간은 원처분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

33. 휴직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가능 여부

(총무처 인가 12107-92, 1993. 3. 16)

◆ 질 의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직권면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경력직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평생토록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직권면직이란 제도를 두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발생 배경이나 정황 등에 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징계위원회의 의견(제5호의 경우에는 동의)을 들어서 임용권자는 면직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어떤 기관에서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감소 등에 의해 폐직·과원이 되었을 경우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근속연수·연령·건강 등을 종합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되면 휴직사유가 만료되어 복직되기 전이라도 직권면직처분이 가능함

34. 징계(견책)처분자 및 휴직자의 명예퇴직 여부

(총무처 인가 01254-1294, 1985. 4. 19)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직원을 제출한 자가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예퇴직을 할 수 있음(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불가능)
- 휴직중에 있는 자도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음

35. 현역에 임명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처리

(총무처 인제 203-2991, 1971. 12. 3)

- 군입대 휴직자에 대한 입대휴직전의 비위사실로서도 공무원의 신분이 계속되므로 징계의결 및 처분이 가능함
- 입대휴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양정이 감봉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봉처분(행정처분)을 하되 휴직기간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보수감액조치(징수행위)는 복직한 후로부터 지급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봉하여야 할 것임

36.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자의 복귀 및 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시(당해 직급의 결원이 없는 경우 최초 결원발생시까지 인정)
-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특별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2월 이내의 준비기간
- 직제의 신설·개폐에 따른 2월이내의 준비기간

37. 휴직중인 자의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인사처리

(총무처 인가 12107-273, 1993. 6. 19)

◆ 질 의

- 휴직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가능 여부에 대하여?
- 휴직중인 자가 형사사건으로 제소되어 직위해제처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중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인사조치 문제에 대하여?

◆ 회 신

- 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부여된 직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부여된 직위를 강제해제시켜 보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바, 휴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는 직위해제처분이 가능하나 제2호의 사유로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그 이유는 제2호의 사유에 의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하고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되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면직시키는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데 휴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임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신고를 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 소멸에 따라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휴직에 따른 임용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휴직과 직위해제처분은 각각 다른 법령규정의 사유에 의해 행하는 별개의 임용행위로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직위해제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며,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상태와는 상관없이 동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자를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

38. 휴직의 사유 및 외국유학의 범위

(교육부 교정07000-27, 1998. 1. 25)

◆ 질 의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의해 휴직을 허락받아 **Edinburgh** 대학에서 영어 교수 학습법에 관한 이론과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마치고

diploma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가. 위의 사항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명시되어 있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국유학의 범위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학위취득, 연구, 연수 등이 포함되는 지 여부?

◆ 회 신

가.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휴직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휴직신청자가 휴직을 신청할 당시의 사유에 따라 정하여질 사항이라고 봄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의 범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휴직사유가 포함된다고 할 것임

39. 국내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휴직 가능 여부

(교육부 교정07000- , 1998. 3.)

◆ 질 의

○ 교육공무원법에 국내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휴직규정이 있는지 여부?

◆ 회 신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에서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원을 포함(청원휴

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 교육부훈령 제477호)하므로, 국내의 대학원 진학은 동법에서 정하는휴직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

나. 다만, 청원휴직에 대한 휴직의 허가 여부는 임용권자가 관내의 교원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40. 휴직기간의 경력인정

(교육부 교정07000-519, 1998. 5. 30)

◆ 질 의

가. 사립학교 교원이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내 대학원 연수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나. 대학원의 학업(학위취득)도 “연수”라 칭하는지 여부?

◆ 회 신

가.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의한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휴직기간을 재직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 또한,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8호는 “교육공무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훈령 제477호 “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에서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을 말하며,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을 위한 학업수행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수”로 볼 수 있음

41. 장교로 입대하는 자의 휴직가능 여부

(교육부 교정 07000-683, 1998. 8. 4)

◆ 질 의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병역복무기간 동안 임용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軍) 장학금 혜택을 받고 졸업후 5년(장학금혜택을 2년간 받은 경우) ~ 7년(장학금혜택을 4년간 받은 경우)간 장교로 복무하는 자도 임용유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3월 1일에 임용된 후 4~5월에 장교입대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가.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경우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병역법 제2조에서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및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복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수행하여야 할 “의무복무기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나. 그리고, 병역법 제4조는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군인사법 제62조에 의거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7조제3항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중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그 수습 또는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 바,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3년에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 이 사안의 경우 임용유예기간 또는 휴직기간은 5년(2년간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7년(4년간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으로 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이 경우는 단기복무장교에 적용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장기복무장교를 지원하였을 경우는 임용유예 또는 휴직사유가 안되며 면직처리하여야 함.

42. 질병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중 다시 질병휴직할 수 있는지?

(교육부 교정 07000-884, 1998. 10. 10)

◆ 질 의

1년간의 질병휴직을 하고 병이 호전되어 복직 후 1년이 지난 후에 병이 악화되어 다시 병 휴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가. 교육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1년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발령할 수 있다고 사료됨

나. 다만,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새로운 휴직의 만료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상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3.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자의 질병치료 등의 휴가 처리?

(교육부 교정 07000-904, 1998. 10. 16)

◆ 질 의

교육공무원이 재태국 한국인학교와 2년간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96. 9. 1 ~ '98. 8. 31까지 휴직을 허가 받아 근무하던 중 자녀의 간병과 본인의 병치료를 위해 고용된 학교장으로부터 각각 3개월('97. 2. 17~5. 16)과 5개월('97. 5. 17 ~ 10. 24)의 무급휴가를 얻어 국내에 체류하면서 원소속학교(학교장)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가. 이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되는지의 여부?

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소멸일자를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 지?

다. 고용된 교육공무원은 주재국 현지 휴가 규정과 국내 교원 휴가 규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적법한지?

◆ 회 신

가. 휴가는 피고용자의 질병치료, 사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무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이는 유효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을 허가 받은 자가 당해학교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휴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것이고 고용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나. 또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자는 당해 고용관계가 유효한 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주가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바,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하여는 별개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4. 동반휴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이 외국의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교육부 교정 07000-9, 1999. 1. 7)

◆ 질 의

- 가.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업체에 해외취업을 하는 경우도 휴직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배우자가 해외취업을 하여 교원이 그 사유로 휴직하고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의 여부?

◆ 회 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는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외국근무”란 외국에 설립된 국내기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체에 해외취업을 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그 배우자인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에는 해당된다고 사료됨. 다만, 휴직의 허가여부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관내 교원의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휴직을 허가하고 있음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1)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재입국하여 2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때에는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며,
- (2)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자국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고
- (3)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에서 해외이주(영주권)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45. 종교(포교) 목적의 해외근무도 동반휴직 사유가 되는지?

(교육부 교정 07000-11, 1999. 1. 7)

◆ 질 의

종교(포교) 목적의 해외근무, 해외 개인사업 목적의 해외근무의 경우도 동반휴직의 요건이 되는 지 여부?

◆ 회 신

가. 교육공무원 휴직업무 처리요령에 기재된 “동반휴직 인정 범위”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된 때”의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기타 다른 사유도 있을 수 있음.

나. 아울러 동반휴직은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을 감안할 때 종교(포교)목적의 해외근무, 해외에서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한 해외근무 등의 경우도 동반휴직의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6. 질병 휴직 후 정상적인 근무 중 새로운 질병휴직 가능 여부?

(교육부 교정 07000-11, 1999. 1. 7)

◆ 질 의

가. 1997. 12. 1 복직('97. 5. 16~'97. 11. 30까지 휴직)한 교사가 1998. 8. 6 발병하여 질병휴가를 얻기까지 정상적인 상태로 학급담임을 맡아 왔다면 1998. 10. 13일부터의 휴직은 새로운 휴직으로 간주하여 1년의 기간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일질병으로 간주하여 병휴직 기간을 통산 1년 이내로 하였을 경우 1999. 2. 27일 이전에 복직신청을 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근무상태가 가능하다면 복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교사가 복직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근무를 하던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새로운 휴직사유의 발생으로 보아 1년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나.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임용권자가 본인이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바, 본인이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그 진단서에 의해 복직 후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복직시킬 수 있음. 따라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고 사료됨.

47. 단기복무장교로 입대시 병역휴직 가능 기간은?

(교육부 교원12000-411, 2000. 4. 6)

◆ 질 의

- 가. 대학재학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수령하고 단기복무장교로 임관하는 현직교사가 단기복무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에 장학금을 수령하여 학업을 이수한 기간(3년)을 가산하여 의무복무기간으로 보아 병역휴직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장교 임관전 교육훈련기간(3개월)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여부?
- 다. 이 경우 복직시 휴직기간을 법정휴직기간으로 보아 경력 및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병역의 종류에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제7조제3항에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기간을 가산하여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학금을 수령하여 학업을 이수한 기간(3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병역휴직이 가능함.
- 나. 병역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때에는 현역병 선발통지서를 …… 송달하여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현역병선발통지서를 송달 받은 자는 입영하여야 하므로 교육훈련기간(3개월)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휴직이 가능함.
- 다. 그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 및 호봉승급기간 포함 여부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제1호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별첨 4>

교육공무원의 휴직에 관련된 법조문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② ~ ④ 생략

⑤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⑥ ~ ⑧ 생략

⑨이 법에서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⑩ 생략

제12조(특별채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 5 생략

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한 때

2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

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생 략

④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5조(휴직기간 등) ①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③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부칙(2000.1.28 법률 제62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 2 생략

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

② ~ ④ 생략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교장의 임용

2. (삭제)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

7. 교육감 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삭 제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2 ~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 2 생 략
- ② ~ ④ 생 략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①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자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 2 (삭 제)
- 3 생략
-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5 ~ 6 생략
-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8 생략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71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 제)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삭 제)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제72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3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확정)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확정한다.

1. ~ 3 생 략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확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확정한다.

③ 생 략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4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 5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 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생 략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 2 생 략
3.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 3의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 3의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 4 ~ 6 생 략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제20조(보수지급일) ① ~ ②생 략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 지급) ①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및 군인사법 제40조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 감액) ①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도중에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그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 미만인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날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

$$\diamond \text{ 기말수당액} = \text{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 \times \frac{1}{4}$$

④ ~ ⑤ 생 략

제7조(정근수당) ① ~ ② 생 략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징계처분에 의하여 강등된 군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직위해제 처분,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중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8조(장기근속수당) ① 생 략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생 략**제9조(모범공무원수당) ① 생 략**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2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① ~ ⑥ 생 략

⑦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 ~ ⑨ 생 략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 ③ 생 략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재외근무지학교 취학자녀에 대한 재외공무원의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수업료 납부후에 행한다)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생 략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별표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 ~ ④ 생 략

⑤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별표11 제1호 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11 제2

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사목(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자목[교직수당(가산금지급대상자중 2)내지 5)에 해당하는 자의 가산금을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한다.

⑥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구 분	정직기간중	감봉기간중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⅔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교원연수에 관한규정>

제3조(연수대상) ① ~ ⑤ 생 략

⑥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대상자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복무의무)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자(특별연수중에 복귀한 자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월 이상인 자를 포

함한다)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국내에서 일과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을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경력평정의 기간계산) 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 한한다)·제2호·4호 및 제6호(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다만, 동조동항제5호·제6호(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생 략

② 생 략

제20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교육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 ① 생 략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

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연수,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 대학원(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내의 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국외의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 자격취득 또는 연구실적이 있을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8조(인사발령통지서 등) ①교육공무원을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재확정, 승급, 전출, 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 해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1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징계,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면직·강임 또는 휴직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0조(인사보고) 교육공무원이 전보, 승급,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 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보고서(별지 제26-2호서식)에 의하여 발령일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 ④ 생략

⑤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됨으로 인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부 칙(‘91. 1. 14 법률 제4334호)

③(재직기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23조제5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발령된 날부터 1월이내에 귀국하는 때에는 그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5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등을 위한 여비)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 7 장

복무 · 상훈 · 징계

제 1 절 교육공무원의 복무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제 2 절 상훈업무

제 3 절 징계

제 7 장 복무 · 상훈 · 징계

제 1 절 교육공무원의 복무

1. 복무의 성격

교육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이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과됨.

교원은 교육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이 요구되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비롯하여 신분상 및 직무상 여러 의무를 지는 바, 이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우리나라는 윤리적 성격에 바탕을 둠.

교원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교육을 담당·수행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흠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취지에 입각하여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 또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국공법 제1조, 제55조) 여기에 교원인 공무원 복무의 기본 원칙이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2.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6855호, 2003. 2. 4.)
-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6932호, 2003. 7. 25.)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7582호, '02. 4. 18.)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6호, '99. 12. 21.)
-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600호, '96. 12. 31.)
-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행정자치부 예규 제126호, 2003. 12. 9.)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원12140-405, 2003. 7. 8.)
- 사립학교법 제55조
 - 사립학교 교원도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3. 교직원의 임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관련)

- 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 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않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4.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가. 직무상 의무

(1)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친절 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직무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 의무

-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6) 품위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신분상 의무

(1) 직장이탈 금지

-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치운동의 금지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3) 집단행위의 금지

-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 영리업무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되는 것
3. 그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함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등을 행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의 부당 영향, 국가 이익 침해, 정부의 불명예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함

○ 영리업무의 한계

-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음
- 영리업무의 한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특성이 다양하므로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영향, 영리행위의 지속성, 영리추구의 정도 등 관련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감독권자가 판단해야 함

- 영리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교원은 영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임용권자(복무감독권자)와 사전에 상의가 필요함
- 영리업무 예시
 - 학원강의, 사기업 경영 및 운영참여
 -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거나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 등
- 교사의 인터넷교육 및 방송 참여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와 콘텐츠의 제공(예:EBS), 일시적인 강의 참여 등은 사안에 따라서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금지
 - 공무원과 교원(사립포함)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면 처벌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련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전문개정 2002.3.30 법률 제6688호 행정자치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로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

2) 겸직허가

- 교원이 어떤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가공무원법제64조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위임된 허가권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겸직을 할 수 있음
- 사전겸직허가의 취지
 - 교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사전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교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
- 겸직허가 대상인 직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다른 직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이외의 사적인 업무(사무)로서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
 - 예를 들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사, 아파트 동대표, 장학재단이사 등을 들 수 있으나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함
- 겸직허가 절차
 - 겸직허가서, 발급대장 등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임용권자(교육감 등 허가권자)가 절차를 정하여 처리함
 - 겸직허가신청서에는 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겸직 사유·겸직직위·겸직기간·겸직 근무시간·겸직근무 요령·겸직시 받는 보수·직무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장의 겸직요청서 또는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것임
- 겸직허가 사례
 - 오마이뉴스사와 기자(객원기자 포함)로서의 신분관계를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기자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재건축주택조합장은 주택(건설촉진)법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사전에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함

- 교원이 신문,잡지 등에 투고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비영리활동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저술활동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정도의 성격을 띤 임의단체(동창회·친목회)의 경우에는 허가 불필요



질의 회신 사례

【질의】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출판함에 있어 공무원 자신이 편집대표를 맡아 자기의 소속·직책·성명을 기재함과 동시에 판권에 실인을 찍어 판매할 수 있는지?

【회신】 (교육부법무811-113, '82.6.10.)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직무상의 능력을 저해하고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를 종사할 수 없도록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 하여도 그 행위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출판·판매까지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력저해 등의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사실 여부 및 영리업무의 한계저촉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교장이 부하직원에게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교원07000-562, 2003.10.08.)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교장은 복무지도감독권자로서 복무지도권한과 감독관계에 기초하여 징계의결요구대상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불성실한 근무자세 등에 대하여 근무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주의·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문서나 구두로 할 수 있음

5. 교원 복무 규정 해설

가. 교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

-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근무규칙에 따름

나.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시간외 근무 관련

【질의】 출·퇴근 시간이 학교장의 지시로 예를 들어 출근은 07:40, 퇴근은 오후 18:00일 경우 학교장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근거는?

【회신】 (단위학교별 탄력적근무시간제 시행전) 교원의 근무시간은 09:00~17:00까지이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원에게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정규근무시간 시작전인 9:00이전이라 하더라도 수업시작전 교재준비, 교무회의, 근무시간전 등교한 학생의 생활지도, 기타 교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원은 이에 따라야 함

【시행문】 복지81810-275(1999.12.6.)

다. 출장

(1) 출장의 개념

- ‘출장’이라 함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출장명령권자인 소속기관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관련여부와 학교운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령함

(2) 출장명령의 요건

-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관련성, 출장내용, 출장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임
- 출장 명령의 자세한 사항은 복무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관련법령 및 교육청이나 학교의 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3) 출장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 학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교원(이하 “출장교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됨
- 출장 교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 출장교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음

(4) 질의응답 사례 : 기관을 대표한 경조사 참석시 출장가능여부?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와 여비지급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여 출장 조치해야 함. 이것은 소속직원의 사기진작과 그에 따른 교육력의 증진 효과 차원임

라. 교원의 근무시간

□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교원12410-52, '02.1.21.)

- (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는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2002년 3월 1학기부터 시행
- (2) 적용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
- (3) 제도의 취지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자율연수 기회를 확대하며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등을 활성화함

(4) 내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종전근무시간(09:00 -17:00)을 유지할 수도 있음
 - * 종전 교원의 근무시간은 1985.2.6.(문교부 교행 01136-104-F)일자로 업무특성상 09:00-17:00(동절기, 하절기 공통)로 시행했었음
-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함
 - * 예를 들어 특정 학년별·교과별 교사집단이 단위학교근무시간과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없음

마. 휴업과 복무

(1) 휴업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2) “휴업”의 효력

- 휴업은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

(3) 휴업 실시 절차

- 관할청의 휴업 명령
 -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음
 -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함
- 학교장의 휴업 결정
 -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이때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함
 - 학교의 장이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실시함. 이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

(4) 교원의 복무

-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 관공서의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이 정하는 바에 의함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일부학교의 이른바 효도휴가일, 가정학습체험일 등을 휴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
- 복무지도감독권자는 휴업일의 복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함

(5) “휴교” 처분 (초·중등교육법 제64조)

○ 휴교명령 : 관할청

○ 사 유 :

- 학교의 장이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효 력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됨

○ 교원의 복무

- 휴교명령권자는 휴교 명령의 목적 달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참조

□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행사 참석자의 복무처리

【질의】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한 행사(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상호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노조측 비전임 조합원의 복무처리 방법

가. 공가처리 가능한가?

나. 출장처리 가능한가?

【회신】 가. 공가처리 관련

교원노조활동과 관련한 교원의 공가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

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라고 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4.휴가종류별실시방법 다.공가)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간담회 등의 행사는 교섭관련 협의로 볼 수 없어 공가처리 대상이 아님

나. 출장처리 관련

공무원의 출장은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처리여부는 출장 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시행문】 교원81811-369(2001.05.15.)

바. 교원의 대학원 수강

(1) 초·중등 교원의 주간대학원 학위과정 수강

- 교원이 주간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때, 야간제·계절제 대학원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같이 “출장(연수)”의 방법으로 허용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원의 주간대학원수강을 금지한 바 있음. 이는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자 취한 조치로써 청원휴직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권장한 것이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대학원수학까지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음
-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대학원 수학이 가능함
- 시행문 : 교원16330-538(2001.07.20.)

※ 참고

- 허가라 함은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되, 소속 기관장(학교장)에게 판단과 결정의 재량권이 있는 처분임
-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수학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됨”(복무12140-79, '97.3.7.)

(2) 교원의 야간제·계절제 대학원 수강

-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근무시간내에 수업이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수 있음.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처리하면 됨
- 시행문 : 교정07000-666(‘98.7.28.)
 - 야간제대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수강이나 주간대학원의 수업시간대에 운영되는 등 복무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주간대학원의 복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파견교사의 계절제 대학원 수강
 - 방학이 없는 교육행정(연구)기관에 파견 근무중인 교사가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하는 경우는 주간대학원과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함
- ※ 대학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관련(교원07000-426,1999.12.16.)

교원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본인의 희망에 의한 대학원을 수강하는 것은 특정한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보기 어렵고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연수이므로 근무상황부에 출장(연수)로 기재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규정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할 수 없음

사. 교원의 겸임

(1) 겸임의 의의

- 겸임은 법령에 의하여 다른 공직을 겸하는 것을 말함

예) 순회교사, 인근대학교 출강(이 경우에도 사적인 출강은 겸직허가 대상임)
- 허가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2 (겸임)의 요건에 맞는지 판단해야 함
- 겸임허가 신청교원에 대하여 수업 등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권자(임용권자)가 사전허가를 해야 할 것임

(2) 겸임 절차

- 복무관리: ‘출장(연수)’로 처리할 수 있음.
- 겸임허가서, 발급대장 등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임용권자(교육감 등 허가

권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함

- 참고로 겸임허가신청서에는 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겸임사유·겸임직위·겸임기간·겸임 근무시간·겸임근무 요령·겸임시 받는 보수·직무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겸임기관장의 겸임요청서 또는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것임

(3) 겸임근무와 복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의2)

-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 현직교원은 과외교습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다만, 현직교원이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다음과 같은 과외교습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현직 교원에게 허용되는 과외교습행위

- 공익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는 허용하고 있음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처벌조항(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이외에서의 연수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기관”의 정의에 대한 질의

- 【질의】 1.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중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계는?
2. 동 규정에 의하여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연수를 소속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공무 출장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여부
3. 교육공무원이 방학기간중(1개학기 2개월이내) 자비부담으로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이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연수”로 보아 전기간 이를 승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무02143-318, '91.11.16.)

1.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하므로(교육공무원법 제38조), 그 연구와 수양은 적절한 때와 곳이라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이루어질 것임.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할 수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을 이탈하게 되는 연수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이 경우에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임. 따라서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연수로 승인할 것인지 여부는 소속기관의 장(학교의 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수계획, 수업에의 지장여부, 직책수행에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봄
2. 소속기관의 장(학교의 장)이 소속교원에게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연수를 승인한다 하더라도 공무출장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수의 목적과 내용은 물론 연수의 시간과 장소 기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봄
3. 교육공무원이 방학기간 중 자비부담으로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할 때, 학교의 장은 연수계획 직책수행상의 지장이나 필요성 등 구체

적 사안에 따라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로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아 연수를 승인한 경우에도 공무출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외국여행을 수반하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와 방학 중 연수 관련(교원07000-433, 2003. 7. 24.)

【질의1】 : 연가·연수원 양식

연수원 양식은 별도의 법정양식이 없으므로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단위에서 개발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연가는 원칙적으로 근무상황부로 관리(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하여야 함. 방학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수원에 연가상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연가상황은 근무상황부에도 기록하여야 함

【질의2】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장소이외에서의 연수의 범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이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찬, 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따라서 근무장소이외에서의 연수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수계획의 적정성, 직무수행지장여부, 직무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승인하는 사항임. 이 경우 승인권자는 연수의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지도 및 확인이 가능함

【질의3】 : 방학중 교원의 복무

방학은 학교의 휴업일로서 학생에 대한 학교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은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판례의 입장도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대판 1987. 12. 8. 87누657,658).」 고 밝히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1. 근 거

-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대통령령 제17582호, '02. 4. 18.)
- 나.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00호, '96. 12. 31.)
- 다. 공무원휴가업무예규 (행정자치부예규 제126호, '03. 12. 9.)
 - 휴가제도의 운영
 - 교원의 휴가실시에 관한 특례
 -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휴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공무외의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 고등학교이하 국·공립 각급 학교 교원

3. 휴가제도의 운영

- 가. 휴가의 실시원칙
 - (1)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 (2)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와 특별휴가중 장기재직 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1) 교원의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 근무상황부는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비치하고 개인별로 관리함
- (2) 교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출근한 때에는 지참으로, 출근하지 않는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 ※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 (3)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다. 휴가일수의 계산

-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2)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특별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함
 - 반일연가는 13: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함

- 교원의 토요일 연가는 반일연가로 처리함. 다만, 연가이외의 병가·공가·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함
-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출산휴가 등)는 휴가기간 중의 모든 토요일은 휴가 1일로 처리함
- (3) 퇴직 후 당해연도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퇴직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 (4)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라.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 (1) 휴가중에는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2)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3)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가) 연가사유를 고의적으로 병가처리
 - (나) 연가사실 미기록
 - (다) 지참·조퇴·외출의 묵인
 - (라)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사례 등
- (4) 지참·조퇴·외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가) '지참' 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 (나) '조퇴' 라 함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함
 - (다)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학교 외부로 나간 후 퇴근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함
- (5)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전보·파견·전직·전출되는 경우 과거 1년간의 휴가기록을 포함한 복무관리상황을 신임학교 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연가일수

(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6년 이상	23일

(나)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1) 개인용무를 위한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으로 연가1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가가산
- 2)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의 누계가 8시간 미만으로 병가1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가가산

※ 근무상황부 연가가산 기재 예시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제		
	부터	까지	일수 시간					
연가 가산			2일	가산 사유 기재				

(다)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라) 연가가산은 연도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 (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함

(나)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가 실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함

(3) 연가계획 및 실시

(가)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연가일수가 10일 이상(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하여 경로 효친 사상을 고양하도록 함

1)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는 특정일에 실시가능

2) 자녀가 교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본인생일 당일 연가 허가 조치

(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봄

- 반일연가는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 반일연가로 기재

(4) 연가일수의 공제

(가)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함. 이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함

$$\bigcirc \text{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당해년도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연가일수}$$

(다)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따라서,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 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되며 반일연가 1회의 계산은 아래 (라)와 같이함

(라)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1) 반일연가 1회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2) 누계시간을 연가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누계시간을 연가일 단위 계산방법 예시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교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 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나. 병 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함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2) 병가일수의 계산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 실시 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같음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 1)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2)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함

※ 휴직 조치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나)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질병휴직중인 경우 휴직기간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 <『휴직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 지침』, 총무처 인가 12107-351, '96. 6. 11.>
- ※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병가일수를 초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 병가·연가 및 공무상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

※ 병가에 대한 질의·회신

- 【질의1】 교사가 질병으로 인하여 2월 미만의 병가원을 제출하여 병가를 허가 받은 다음 병가일 만료후 2~3일 출근하여 동일사유로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 재차 2월의 범위내에서 수차 반복 허가가 가능한지?
- 1 신】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바로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는 결근 또는 휴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질의2】 11월 1일에 질병으로 2월의 병가를 사용한 후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병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월을 계속 병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 2 신】 병가일수 계산은 병가실시 당해연도 1년단위로 계산하므로 다음년도의 병가 가능일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질의3】 '1월미만의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바, 27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계속 병세가 악화되어 계속 다시 병가원을 제출하여 15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에도 병가를 다시 사용하여야 할 경우의 공휴일의 계산 방법은?

- 3신】 병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가를 허가한 회수에 상관없이 병가가 계속되어 1월이상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례와 같이 공휴일수를 병가일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 3례】 · 27일 병가허가(공휴일 3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 계속 15일 병가허가(공휴일 2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 당해 교사의 총병가휴가일수→ 27+3+15+2=47일
- 【질의4】 '99년도에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6개월 사용하고 1년간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였으나 동일질병의 후유증으로 5~6개월의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다시 공무상 병가 6개월을 허가받을수 있는지?
- 4신】 공무상 병가를 180일 모두 사용하였으면 비록 연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다시 공무상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음
- 3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승인된 기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질의5】 공무상 병가기간(년6월)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여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년2월)를 사용할 수 있는지?
- 5신】 소속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의 요건과 기간을 별개의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적으로 볼 때 연간 허가 가능한 병가기간은 공무상 병가와 일반병가를 합한 240일이 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연180일 동안을 다 사용하여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으면, 일반병가도 허가할 수 있음
- 【질의·회신】 공상 승인 신청후 승인 이전에 병가기간 2개월이 지나게 되어 연가 10일을 사용하던 중 공상 승인이 난 경우에는 사용한 연가를 소급해서 병가처리로 환원하여 처리하여야 함
- 3조】 ○ 공무상 병가 사유발생 즉시 공상승인 신청 필요

다. 공가

- (1)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라)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마)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 진단을 할 때
 - (사)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아)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자)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가)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나)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 (다) 건강진단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 (라)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함
 - (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처리됨.
-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협의를 직접 참가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기

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3) 공가의 사례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단, 공무원 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 2】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 3】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 공가에 대한 질의 회신

【질의】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에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 출전하기 위한 합숙훈련 및 출전기간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처리는?

【회신】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은 공가로 취급함이 타당

【사례 5】

동 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의 사항으로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은 공가처리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이나 교섭관련협약이 아닌 교원노동조합의 자체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

사, 설명회, 기타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교육부,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님

라. 특별 휴가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조부모 · 외증조부모 · 외조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조부모 · 외증조부모 · 외조부모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나) 원격지일경우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다)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만, 휴가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됨

(라)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

1)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 · 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포함
- 양자 ·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 · 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마)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1)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않음

2)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2) 출산휴가

(가)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 의학적으로 임신 1월은 4주(28일)로 계산함

(나) 임신 4월(85일)부터 임신 7월 이하(196일)까지의 기간중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1)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신 4월미만 즉 84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3) 학교장은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를 하도록 지도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자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점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음.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음

(다) 보건휴가는 1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분리하여 2일 사용은 할 수 없음

(4) 육아시간

(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나)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중 1시간 활용)

(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1)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 “육아시간”으로 기재

2) “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기간을 기재

(5)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교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6) 포상휴가

(가) 사유

-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나) 휴가실시

- 1) 학교의 장은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수 있으나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휴업일중 실시를 원칙으로 함.

- 2) 동일공적의 중복 휴가(주요업무 공적휴가와 그로 인한 포상휴가)는 허가할 수 없음.
- 3) 수상시에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 4) 학교에 대한 포상의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담당 교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 인정범위

- 학교의 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의 요건판단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격자 선발에 유의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됨.
- 1) 계속적인 초과근무 등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 3) 기타 창안·제안 등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등 당해 학교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7) 장기재직휴가

- (가) 교원이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학교의 장은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 (나) 장기재직휴가는 1회 10일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적용함.
- (라) 장기재직휴가 허가시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카드(26) 비고란에 휴가를 허가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8) 재해구호휴가

-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 1) 피해를 입은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말함.
- 2)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지역에서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교원을 말함.

- (나) 학교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학생수업상의 지장유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9) 퇴직준비휴가

- (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퇴직과 교육공무원법 제36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나) 명예퇴직시 퇴직준비휴가는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또는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얻을 수 있음.

5.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
- (3)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실시 방법

- (1)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가)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다) 절차

-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할 수 있음.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 “국외자율연수”)

(가) 사유

- 교직원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수집 등
- ※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기간

- 휴업일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다) 절차

- 1) 학교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음.
- 2) 승인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예시) 실시사례

-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10일간)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함.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는 특별휴가 기간내에서 신청함.

다. 유의사항

- (1)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 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2)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 교원은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4) 여행기간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 (5)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6. 행정 사항

가. 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2003년 7월 8일부터 시행함.

나. 이 업무처리요령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등이 업무처리요령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 업무처리요령의 시행일부터 그 효력이 없음.

제 2 절 상훈(퇴직교원 정부포상)

1. 관련 법규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2. 포상 추천 대상

☐ 포상 대상

- 재직 중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정년·명예·의원 퇴직자
- 외국인 퇴직교원도 포상추천 가능
 - 상훈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포상 여부 결정

☐ 정년 퇴직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정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 사립학교의 인사규정(학교법인 정관)에 의하여 정년 퇴직하는 교원

☐ 명예 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의거 명예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거 명예 퇴직하는 교원

☐ 의원 퇴직

-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의원퇴직한 자(임기만료 퇴직자 및 사망자 포함)

3. 포상 추천 기준

☐ 훈격 결정 기준

- 근정 훈장 : 재직 년수에 해당하는 근정 훈장

구분	육조(5등급)	녹조(4등급)	홍조(3등급)	황조(2등급)	청조(1등급)
재직 년수	33년 이상~ 36년 미만	36년 이상~ 38년 미만	38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대학총장 경력자 특별 추천

※ 대학교 총장 경력자가 퇴직할 경우 위 훈격기준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단, 재직년수가 15년 미만인 경우 포상 추천 제외)

- 근 정 포 장 : 재직기간 30년 이상 ~ 33년 미만
- 대통령 표창 : 재직기간 28년 이상 ~ 30년 미만
-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 25년 이상 ~ 28년 미만
- 교육부장관표창 : 재직기간 15년 이상 ~ 25년 미만

□ 재직기간 산정 방법

-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 포함) 및 군복무기간

추천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결과와 훈격을 열람·확인토록 하여 포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확정 이후 훈격조정 불가)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및 방위소집에 의거 실역을 필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후 군인 및 군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군인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은 훈·포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1/2(훈장 16년 6월, 포장은 15년)범위 내에서만 산입하고, 표창은 재직기간 전부를 산입

☞ 예시 : 20년 재직 군인이 전역후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 | | |
|----------------------------------|-----------|
| - (16년 6월 + 교원 근무 경력) $\geq$ 33년 | 훈장 대상 |
| - (15년 + 교원 근무 경력) $\geq$ 30년 | 포장 대상 |
| - (20년 + 교원 근무 경력) $\geq$ 28년 | 대통령표창 대상 |
| - (20년 + 교원 근무 경력) $\geq$ 25년 | 국무총리표창 대상 |

- 휴직기간은 병역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육아휴직(1년)인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청원휴직(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경우 불산입
- 징계정직기간은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만 산입하며, 직위해제기간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 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산입
- 재직기간은 연월일로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하며,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재직기간을 최종 합산하여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 예를 들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 11월 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봄
- 임시교원, 초·중등학교의 강사, 준교사, 훈도 등의 경력은 임용권자가 도지사·교육감·교육장 또는 이사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교장 발령은 제외
- 기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경력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력
- 제외 경력
 - 촉탁(기관이나 단체에서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보는 사람), 인정경력 외 초·중등학교 강사(학교장 발령 전임강사, 시간강사 등)
 - 대학의 무급조교, 전임강사 대우, 시간강사 등 임시직 경력

□ 제외 대상

-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 등이 사면되거나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비위)가 아닌 징계가 말소된 경우(인사기록카드 등 확인)에는 포상할 수 있으며,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아도 포상 가능.
- ※ 형사 기소 또는 징계 요구 중인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되, 징계 결과 불문경고처분 또는 무혐의인 경우에만 퇴직 후 1년 이내에 포상 추천 가능

☞ 추천할 수 있는 경우

- ① 징계 및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나 불문경고처분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국무총리령),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행자부예규) 등
- 기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퇴직공무원 포상의 경우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은

-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함.
-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2년 이내(훈장을 받은 자는 훈장의 종류에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없음. 퇴직공무원의 경우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동종상위등급의 훈장 및 타종의 훈·포장과 표창수여 가능함.
- ※ 퇴직시(의원·명예퇴직) 정부포상을 수여 받은 자가 사립학교교원이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퇴직할 경우 포상추천을 하지 않도록 유의

4. 행정 사항

□ 추천 대상자 선발시 유의 사항

- 포상 대상자 선발시 반드시 객관적인 자체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심사·선정하여 포상 제외 대상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퇴직교원 포상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추천해 주시기 바람(사망퇴직 및 의원퇴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 재직기간 인정경력 범위에 제시되지 아니한 경력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람.
 - 대학교원의 경우 조교 경력 중 무급조교경력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유급조교 경력은 증빙서류를 제시받아 기록하시기 바람.
 - 임용결격 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특별채용 이후의 경력만 인정됨.
- 명예 퇴직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이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음.
- 정부포상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포상이 확정된 후 포상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천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라며(수상 거부할 경우 추천하지 말 것), 포상 대상자 추천 이후 발생한 징계 등으로 포상 추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원복지담당관실로 통보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에서 추천한 추천자료를 근거로 일괄 추천할 예정이니 훈격, 직급, 소속명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교장 임기 만료 후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교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재임기간 중 최상위 직급과 그 당시 학교명을 기재하여 추천함.

-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조서, 신원조사동의서,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추천하시기 바람.
-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후 사망할 경우 교원복지담당관실로 통보

□ 제출 서류

- '상훈관리프로그램'으로 출력한 '서훈추천자명부' 1부.
- '상훈관리프로그램'으로 출력한 '공적조서' 1부.
※ 추천 기관의 인사담당자와 담당과장 도장 및 직인 날인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 반드시 다음과 같은 양식에 의거 "담당과장"의 확인교무인(인쇄하여 붙여도 가능)을 자체공적심사의결서 사본에 확인 날인하여 제출

본 포상건의 포상추천대상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포상동의여부, 사회적 지탄대상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포상결격자가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소속 직위(급) 담당과장 성명 (인)

- 포상 추천 통계(엑셀파일) 1부.
- 상훈관리프로그램에 한자가 없는 교원 명단(훈글 파일) 1부.

훈격	추천순위	소속	성명(한글)	성명(한자)

- 원로교사 명단(훈글 파일) 1부.

훈격	추천순위	성명	교장으로 근무한 최종 학교명	현재 학교명

○ 추서자 명단(훈격 파일) 1부.

훈격	추천순위	성명(한글)	소속(학교명)	퇴직구분

※ 퇴직구분은 명예/의원퇴직 여부임

○ 명예퇴직교원 명단(훈격 파일) 1부.

훈격	추천순위	성명(한글)	퇴직전 직급	퇴직후 직급

※ 퇴직전/후 직급은 교사→교감, 교감→교장 승진여부 파악 자료임

○ 정부포상 관련 파일

- 상훈파일(정부포상 파일 및 장관표창 파일)

5. 포상 추천 절차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국립대학교 부설학교 포함) →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에 추천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복지담당관실로 추천
- 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추천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를 통해 교원복지담당관실로 추천
- 교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 포함)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를 통해 교원복지담당관실로 추천
- 전문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술대학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지원과를 통해 교원복지담당관실로 추천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및 직속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를 통해 교원복지담당관실로 추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산학협력원과를 통해 교원복지담당관실로 추천

6. 상훈관리프로그램 사용 안내

□ 입력시 유의 사항

- 정년퇴직
 - 정부포상 대상자(국무총리표창 이상)
 - 포상 코드 :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입력(예 : 00030228)
 - 포상 건명 : 정년퇴직교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표창 대상자
 - 포상 코드 :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입력(예 : 00030227)
 - 포상 건명 : 장관표창
- 「이름」 : 성과 이름은 반드시 붙여서 입력함
예) 김구(○), 김 구(×)
- 「한자」 : 한자 이름을 연속적으로 입력하되, 없는 한자는 호글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함
- 주소 입력 : 동, 읍, 면, 번지, 아파트 동수까지 정확히 입력
 - 주택 : 동, 읍, 면, 번지, 통/반까지 반드시 기록
 - 아파트 : 동, 읍, 면, 번지까지 반드시 기록
- 「추서여부」 : 사망자의 이름 앞에 '고'를 입력하지 않으며, 「추서여부」에 '추서'를 선택함.(※추서로 입력된 경우 훈장증 인쇄시 성명 앞에 '고

(故) 자동 인쇄됨.)

※ 각급 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서자' 명부와 상훈파일 입력 내용을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소속명」: 공식 학교명 및 기관명을 입력함.

- 반드시 공식 학교명 또는 기관명을 입력 후 엔터키(Enter)를 누름
(띄어 쓰기 유의)

< 입력 예시 >

- 유·초·중학교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서울수색초등학교 ←
(지역교육청)(한칸 띄우기)(학교명 또는 기관명)
- 고등학교 : 서울특별시교육청 둔촌고등학교 ←
(시·도교육청)(한칸 띄우기)(학교명 또는 기관명)
- 대학, 대학교 : 서울대학교 ←

※ 유의 사항

- 학교가 설·폐되거나 학교명이 변경되어 수정 사항이 발생한 기관에서는 수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 시·도교육청(대학)에서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행정표준 기관코드”를 신청하시기 바람.

<행정표준 기관코드 신청 방법>

1. <http://www.gcc.go.kr>(정부전산정보관리소)→자료센터→서식→8번(행정표준기관코드 부여신청서)로 차례로 접속하여 첨부파일을 다운받는다.(코드신청공문, 직제변경내역서)
2. 공문을 작성(직제변경내역서 첨부)하여 정부전산관리소에 FAX로 송부한다.(전화 02-3703-3296, 팩스02-3703-3392 행정표준코드담당)
3. <http://www.gcc.go.kr>→자료센터→상훈에 접속하여 소속코드업데이트 자료를 다운받아 코드업데이트를 한 후 사용

- 「훈증/훈격명」 : 훈격을 입력한 후 반드시 엔터키(Enter Key) 입력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의 훈격은 '기타'이며 코드는 '990'임.
- 「공적요지」 :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람(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50자 이내)

< 입력 예시 >

- 훈 · 포장

- “직급(퇴직일, 퇴직종류), 평생 2세 교육에 헌신 봉사함으로써 교육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

(예) 교사(2004.02.29, 정년퇴직), 평생 2세 교육에 헌신 봉사함으로써 교육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

-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 “직급(퇴직일, 퇴직종류), 평소 맡은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2세 교육을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예) 교사(2004.02.29, 정년퇴직), 평소 맡은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2세 교육을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 의원퇴직자 및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자의 경우 괄호안에 퇴직날짜 기록.

【교감(2001. 10. 15, 사망퇴직), 교사(2001. 10. 15, 의원퇴직)】

- 「공적내용」 : 정부포상임을 감안하여 그간의 주요 공적위주의 내용으로 5줄이상 작성하되, 특수문자(도형문자, “, ’ 등)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1장 이내에서 작성

- 퇴직종류 :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퇴직기타(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만 해당)

※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으로 입력

- 「직급명」 : 증서에 기재할 직급을 기재하고 반드시 엔터키 입력함

- 교육장, 원장의 경우 장학관으로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특별승진자의 경우 인사발령사항 확인

※ 명예퇴직 특별승진자는 승진직급을 입력하고 현직급승진일과 퇴직일을 함께 입력함.

○ 「퇴직일」 : 퇴직하는 날짜 기록

○ 경력사항

-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과거 재직한 기관 및 직급 기록

(예) '68. 3~'88. 2 : ○○초(중) 외 ○개교 교사(○○대학교 전임강사)

'88. 3~'95. 2 : ○○초(중) 외 ○개교 교감(○○대학교 부교수)

'96. 3~'03. 2 : ○○초(중) 외 ○개교 교장(○○대학교 교수)

- 퇴직교원의 경우 재직년수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므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이외의 외부경력 기재 불필요

○ 기록확인 : 작성자 및 확인자 반드시 입력

- 작성자 : 작성기관(시·도 및 대학)의 담당자 등 입력
- 확인자 : 작성기관(시·도 및 대학)의 담당과장 또는 국장 입력

제 3 절 징 계

1. 징계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 위반
-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 태만
- 직무 내·외 불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 행위

2. 징계 사유의 시효

- 징계 사유 발생 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3년)을 경과하면 징계 의결 요구 불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3. 징계의 종류와 효력

종 류		기 간	신 분	보수, 퇴직 급여 등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국 가 공 무 원법 제80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징 계	파면	—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퇴직급여액의 1/2 지급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 급여액의 1/4 지급)
	해임	—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퇴직 급여 전액 지급
	정직	1월 ~ 3월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 ▪ <18월+정직 처분 기간> 승진 제한 ▪ <처분 기간> 경력 평정에서 제외	▪ <18월 + 정직 처분 기간> 승급 제한 ▪ 보수의 2/3감액
경 징 계	감봉	1월 ~ 3월	▪ <12월 + 감봉 처분 기간> 승진 제한	▪ <12월 + 감봉 처분 기간> 승급 제한 ▪ 보수의 1/3감액
	견책	—	▪ 6월간 승진 제한	▪ 6월간 승급 제한

4. 징계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내지 제4조)

구 분	특 별 징 계 위 원 회	일 반 징 계 위 원 회
설치기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위원구성	위원장-교육인적자원부차관 위원-교육인적자원부소속 실장·국장·감사관	위원장-설치기관의 차순위자 위 원-설치기관의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다만,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은 위원 중 일부 관할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음
심의·의결 대상 징계사건	· 대학의 단과대학장·국립의 전문대학 의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교육장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장학관·교육연구관 · 시·도교육청 국장 이상 장학관	· 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은 징계사건 ·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사건

5. 징계의 절차(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참조)

6.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문란 나. 기타	파 면	해 임	정 직-감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9.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책임	정 직	감 봉	견 책

※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중점관리 대상 비위자는 엄중 문책하여야함

7. 징계 등 기록말소(교육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

가. 말소대상 기록

○ 징계사항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정직, 감봉, 견책
- 징계처분의 무효·취소로 확정된 파면, 해임

○ 직위해제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호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

○ 불문(경고)기록 :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된 불문(경고)

나. 말소권자 : 인사기록카드 정본, 부분 등을 보관·유지하고 있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다.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

○ 징계처분기록

구 분		말소제한기간	기 간 계 산
징 계	정 직	7년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감 봉	5년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견 책	3년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직 위 해 제		2년	직위해제처분 종료일부터
불 문(경고)		1년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 소청심사위원회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원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처분의 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내려진 때
- 법원에서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라. 말소절차

(말소사유 발생)징계등 처분기록 말소계획(신청)서 작성→말소권자의 결재→처분기록 말소→말소사실 통보(말소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말소기록관리대장 정리

8.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관련규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10조,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참조
- 설치 및 대상 :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며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함
- 청구기간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재심의 결정
 -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 재심결정의 유형 : 각하, 기각,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무효확인
 - 결정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

- 재심결정의 효력 : 처분권자를 기속
- 재심결정에 대한 불복 : 결정서 접수 후 60일이내에 행정소송제기
- 재심절차 : 재심청구→피청구인의 변명서 제출→심사기일 통지→재심위원회의 심사(당사자 출석하여 진술기회부여)→결정서 작성 및 결정서 송부



질의 회신 사례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교부에 대한 질의

【질의】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던바 혐의자 본인이 출타 부재중이어서 동거 가족(성인에 한함)에 교부하고자 한바,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는 소속기관장이 본인 앞에서 소속직원 등의 입회하에 동 통지서를 낭독하여 출석통지서의 내용을 주지시켰을 경우 징계혐의자가 동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동 업무를 처리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법무25000-139,86,8,5)

징계 혐의자의 출석통지서 교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출타 부재중일 때에는 배우자, 부모등 성인인 동거 가족에게 교부하여도 본인에 대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수령 또는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출석통지서 교부의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직원이 동 통지서를 낭독하고 주지시켰다면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 진행중지에 관한 질의

【질의】 교육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 중에 있을 때 별도로 징계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무 25001-82, 87.5.11)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특별권력에 의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특별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하는 바, 기소된 형사사건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제 규정에 위반되었거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또는 공직기강 및 사회정화 차원의 비행 등에 해당할 때에는 형사벌과는 별도로 마땅히 징계조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되었다 하여 당연히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다만,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관련됨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가 있는 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관련됨에 따라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로 인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징계요구 내지 징계절차의 진행 또는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공무원 징계의결에 관한 질의

【질의】 징계의결 요구된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법무 25001-150, 87.8.3)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중에 지급한 보수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이 되었다 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의 복직시기에 대한 질의

【질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

나 검찰의 항소제기로 인하여 2심에 계류중에 있을 때 복직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복직시기.

【회신】 (법무 25001-163, 87.9.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해제하여야 하는 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검찰의 항소제기에 의하여 소가 계속중일 때에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징계사유시효 등에 관한 질의

【질의】 사실과 다른 경력증명을 발급받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 임용되었다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 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법 제6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시효규정을 준용 할 수 있는지.

【회신】 (법무 25000-134, 89.7.15)

임용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시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명시된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에 해당되어 면직의 사유가 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법 제58조제1항에 “...면직시킬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면직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도의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 교육공무원 징계기한에 대한 질의

【질의】 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기한을 초과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무02143-244, 89.11.4)

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제1항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의 불안정한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징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가 그 처리를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할 것이므로, 그 기한(90일)은 불변기간으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은 단지 징계의결사안을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라는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처분권자」에 대한질의

【질의】 전주교육대학부속국민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이 동 대학에서 징계(견책) 처분을 받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전출된 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하여 그 징계처분이 취소된 결과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경우 어느 기관에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제처 02143-360, 91.12.19)

징계대상자의 소속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징계절차를 관장하여야 할 것임.

- 【이유】 1.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의하면 교육기관, 교육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상기 규정에서(교육) 기관의 장이라 함은 징계혐의자가 현재 소속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즉 본건의 전라북도교육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2. 참고로 전라북도교육청은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2항의 취지를 원용하여 해당공무원의 혐의사실을 전주교육대학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직위해제중에 있는자의 정년도래에 따른 인사관례에 대한 질의

【질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직위해제 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였을 경우 정년퇴직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총무처인제 203-2895, 1971. 12.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위해제기간에 관계없이 퇴직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판례】 1. 직위해제처분 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에 인한 파면처분을 할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79 누 65, 80.9.30).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대법원:82.7.13, 선고 85.2.26)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사표수리에 관한 질의

- 【질의】 1.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를 행하고 사표를 제출하였을 때 국가는 사표수리를 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징계사유 해당자 및 형사혐의자인 공무원의 사표수리는 타 사유(예:일신상 이유)에 의한 의원면직과 구별하여 법의 악용을 예방하고 범법자의 재임용(단시일내)의 길을 막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총무처총기획 292-119,1964. 5. 1)

1. 공무원에게 사임의 자유가 있고 국가에 사표수리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특별권력관계내의 질서유지와 관계가 없는 경우인 것이며, 이 때에도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특별권력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임명권자의 면직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최고한도는 비행 있는 공무원을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제하는 것, 즉 파면이므로 국가는 제출된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일응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국가가 징벌 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벌을 과하는 목적은 특별권력관계내의 질서를 유지코자 함에 있는 것이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법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 그러므로 국가는 특별권력관계내의 질서유지와 비행공무원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일단 사임을 하였다가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공무원관계내의 질서유지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사표수리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직위해제자의 중임심사 대상 여부

【질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에 의거 교장이 직위해제되어 1차 교장 임기만료가 도래하고, 판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중임심사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교원12140-355, 2003.6.16)

1. 직위해제 처분은 교원의 신분이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뿐이므로 중임 임용 제청의 대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2. 다만, 불구속 기소된 사안을 가지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 결과에 따른 교장 중임 임용 여부는 별론임

부 록

관 련 법 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교육공무원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30>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4.6, 2000.1.28>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②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3.12.27, 2000.1.2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

③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개정 1988.4.6, 1990.12.27, 1991.3.8, 1993.12.27, 1995.12.29, 2001.1.29>

④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라 함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⑦이 법에서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⑧이 법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⑨이 법에서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⑩이 법에서 “강임”이라 함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4조까지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12.27, 1996.12.30, 2001.1.29>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험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지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개정 1990.12.27, 1990.12.27, 1994.12.31, 2001.1.29>

④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①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한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3.12.27, 1996.12.30, 2000.1.28>

②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03.7.25>

제3장 자격

제6조 (교사의 자격)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제7조 (교장·교감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제8조 (교수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8.4.6>

제4장 임용

제10조 (임용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신설 1991.3.8>

제10조의2 (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제11조 (신규채용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③삭제<1999.1.29>

④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⑤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9.1.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89헌마89 1990.10.8 (1990.12.31 법률 제4304호)]

제11조의2 (계약제 임용등)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제11조의3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12조 (특별채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3조 (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3.8>

②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우수교육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한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교육풍토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교수·지도 및 연구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 ②제1항의 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전공분야·재교육경력·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다

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제19조 (겸직금지) 각급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자는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교무과장·학생과장·교장·교감·원장·원감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3.12.27, 2002.12.5>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5]

제20조 (인사교류)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에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다.<개정 1991.3.8>

제21조 (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교육연수기관등에의 교원의 배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3.12.27]

제22조의2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02.8.26]

제23조 (인사기록)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제23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5]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①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공립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27조까지 같다)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

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1990.12.27, 1991.3.8, 1993.12.27, 1994.12.31, 1996.12.30,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③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3.8, 1993.12.27, 1994.12.31>

④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6.12.30>

제25조 (교수등의 임용) ①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②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제26조 (전임강사·조교의 임용) ①전임강사·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1993.12.27>

②대학의 장이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제27조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개정 2002.12.5>) ①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2002.12.5>

제28조 (대학의 장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의 임기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장의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12.27, 1994.12.31, 1996.12.30, 2002.12.5>

1. 대학의 장:4년
2.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 2년

제29조 (장학관등의 임용) ①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시·도교육청 과장급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2. 시·도교육연수기관의 장
3. 시·도교육연구기관의 장
4. 시·도교원연수기관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외의 교육감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당해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당해 교육감이 행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3.12.27]

제29조의2 (교장의 임용) ①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1993.1.27, 2001.1.29>

②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개정 1995.12.29>

③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는 회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12.29>

④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⑤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⑦교장은 임기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1.3.8]

제30조 (교감·교사·장학사등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1990.12.27, 1991.3.8, 1993.12.27, 2001.1.29>

1. 제24조·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제31조 (초빙교원) ①대학은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중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④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1.29>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9.1.29>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3·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6.12.30>

제33조 (임용권의 위임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1.1.29>

②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 소속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0.1.28>

제5장 보수

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제36조 (명예퇴직) ①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중 교장이 임기만료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으로 본다.

③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8.14]

제6장 연수

제37조 (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38조 (연수와 교재비) ①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연수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특별연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중인 교육공무원이 연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별연수경비의 재원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1.1.29>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제42조 (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1.3.8>

②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 (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1994.12.31, 1996.8.14, 2000.1.28, 2001.1.29>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③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1996.12.30>

제45조 (휴직기간등) ①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1.28, 1994.12.31, 1996.8.14, 2000.1.28>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②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③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7.11.28, 1996.8.14>

제46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의 규정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개정 1996.12.30>

제47조 (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

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3.12.27>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49조 (고충처리) ①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01.1.29>

④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조교수이하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개정 2001.1.29>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소속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⑦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6.12.30>

②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징계위원회위원의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및 지방공

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직근감독청의 장이 이를 요구한다.

제52조 삭제 <1991.5.31>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공립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신설 1994.12.31, 1996.12.30>

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

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공립대학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2000.1.28>

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제54조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①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인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③위원은 7년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5조 (공립대학의 장등의 임용) ①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②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

를 구성할 수 없는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립대학의 장이 보한다. <개정 2002.12.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제24조제4항의 규정은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제25조”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6조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①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대학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교충위원회”라 한다)를, 공립대학에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교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④공립대학교충위원회는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이상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는 조교수이하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관에 관련되거나, 원소속기관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립대학교충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⑦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공립대학교총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의 “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

②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로 본다.

③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65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공립의 대학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④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지방공무원법 제6조·제7조 내지 제11조·제22조 내지 제24조·제29조의2 내지 제30조의2·제32조·제34조 내지 제37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 및 제74조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12.30]

부칙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장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의 부총장은 그 잔임기간중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장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

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휴직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육공무원과 종전의 제5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자격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원의 자격 또는 자격증은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면권자"로 본다.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문화보호법의 개정) 문화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고, 동법 부칙 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953호,19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 <제4009호,1988.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교육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 당시까지 시·군교육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시·도교육감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시·군교육장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교육감·교육장·”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군”을 “군 및 자치구”로 한다.

제9조중 “교육장·”을 삭제한다.

제22조중 “교육감”을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교육감·장학관등의 임용)”을 “(장학관등의 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감·교육장·” 및 동조제2항중 “(교육감을 제외한다)”와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중 교육장란을 삭제한다.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3조, 제40조제3항·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8호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9>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04호,1990.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년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년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47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4348호,1991.3.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 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총장·학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 및 학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④(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부칙(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4376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4620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841호,19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5호,1995.12.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8호,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7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가 있거나 기간을 정하

여 임용된 자의 임기 또는 임용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날로 한다.

③(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요구중에 있거나 직위해제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당해 대학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5717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중 생년월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 해당 호에 규정된 일자에 당연퇴직된다.

1. 1934년 2월 28일이전인 자 : 1999년 2월 28일

2. 1934년 3월 1일부터 1937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자: 1999년 8월 31일

제4조 (명예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에 퇴직하거나 그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생년월일이 1937년 9월 1일부터 1942년 8월 31일까지인 자가 2000년 8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부칙 <제6211호,200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본문, 제22조,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9조의2제1항·제7항, 제30조 본문,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0호,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1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2호,2003.7.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학인사위원회 여성위원회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없는 대학에 대하여는 당해 여성교원이 확보된 날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3.11>

제2조 삭제<1982.3.11>

제3조 (임용권의 위임) 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

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2.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4.2.17,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1. 교장의 임용
2. 삭제<1999.9.30>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
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9.9.30, 2001.1.29>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1982.3.11]

제4조 (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삭제<1982.3.11>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2월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⑥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본조신설 1999.9.30]

제5조 (임용시기) ①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3.11>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및 전임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④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5조의3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①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중에 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중에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9호 또는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5.29, 1997.2.25>

[본조신설 1991.8.8]

제5조의4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교원의 연구실적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④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당해 대학의 교원정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8.8]

제6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8.8, 1997.2.25>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삭제<1997.2.25>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2.3.11]

제6조의2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①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양성평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평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양성평등 또는 대학교원인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3급 이상의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

⑥그 밖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11.4]

제6조의3 (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①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계열구분에 의한다.

- ②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말한다)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개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를 둔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1.4]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8.2.24, 1997.2.25>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2.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특별연수 또는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국외연수를 위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학교·학과의 신설·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기관

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

- 가. 종별
- 나. 경력·학력·전공분야·자격
- 다. 연수실적
-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 마. 통솔능력
- 바. 성품 및 신망도
- 사. 청렴도
- 아. 건강
-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연수·국내위탁교육등 특별연수를 받았거나 6월이상의 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수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3.11]

제7조의2 (겸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9.9.30>

-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2.1, 1995.3.25, 2001.1.29>

1.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2. 학예·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간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4.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5.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장과 국립암센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3.25, 1995.5.29, 2001.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3.11]

제7조의3 (파견근무)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2.8.25, 1997.2.25, 1999.9.30, 2001.7.16, 2003.3.11>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 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7.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8.25, 1997.2.25, 2003.3.11>

1. 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 제3호·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에 대한 파견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6월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소속인 때에는 국무총리(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인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2.8.25, 1994.2.17,

1997.2.25, 1999.9.30, 2001.1.29>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파견의 발령은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하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전문개정 1982.3.11]

제7조의4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특별연수를 위한 파견외의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전문개정 1988.2.24]

제7조의5 (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 ①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기간의 적절성
3.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1]

제8조 (준용규정)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4.23>

[전문개정 1990.12.31]

제9조의2 (특별채용의 요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9.3.3, 1982.3.11, 1988.2.24, 1991.2.1, 1999.9.30, 2001.1.29>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자(교육공무원이던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그 퇴직후 1월 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이어야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자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교사와, 공업계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서 실과계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원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4.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7급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5.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

[본조신설 1978.2.9]

제9조의3 (교장등의 임용) ①교장으로 1차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잔여기간이 4년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②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법 제2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로의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9.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 및 교사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1.8.8]

제9조의4 (원로교사의 우대등) ①법 제29조의2제6항에서 "원로교사"라 함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1999.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의 경감·당직 근무의 면제·명예퇴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 기타 교내외 각종 행사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는 소속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8.8]

제10조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①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1.2.1, 2001.1.29>

②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전문개정 1973.3.14]

제11조 (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전문개정 1990.12.31]

제11조의2 (응시연령)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공개전형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8]

제11조의3 (응시자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5.29]

제11조의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8]

제12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제2장의2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신설 1991.8.8, 1994.2.17>

제12조의2 (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 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1.1.29>

[전문개정 1994.2.17]

제12조의3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①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2.17>

②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인이상 5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해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외의 인사를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2.17>

1. 위원회에서 직접 선정

2.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

⑤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정결과를 당해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2.17>

⑥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⑦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1994.2.17>

[본조신설 1991.8.8]

제2장의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원의 초빙 <신설 1996.6.3>

제12조의4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6.6.3]

제3장 기간제교원의 임용<개정 1982.3.11, 1997.2.25>

제13조 (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30>

1.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2.25]

제3장의2 전직 및 전보<신설 1975.11.13>

제13조의2 (전직등의 제한) ①법 제2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2.3.11, 1991.2.1, 2001.1.29>

1. 전보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삭제<1997.12.5>

[본조신설 1975.11.13]

제13조의3 (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3.3, 1982.3.11>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3.11>

④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신설 1978.2.9, 1982.3.11>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82.3.11, 1991.2.1, 1991.4.23, 1999.9.30, 2001.1.29>

[본조신설 1975.11.13]

제4장 승진 및 강임

제14조 (승진임용방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2.7, 1979.3.3, 1982.3.11, 1993.2.24, 1999.9.30>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특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농업계, 공업계, 수산·해운계, 예·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과출신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78.2.9, 1982.3.11, 1991.2.1, 2001.1.29>

제15조 (특별승진임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2.8.25, 1994.2.17, 2001.1.29>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4.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 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 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3.11]

제16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8.8>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④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3.11]

제17조 삭제<1982.3.11>

제18조 (강임의 순위) 교육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행한다. 다만, 본인이 강임을 원할 때에는 순위에 불구하고 강임할 수 있다.

제19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방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 동일 직위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위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개정 1997.2.25>

[전문개정 1982.3.11]

제5장 보칙

제20조 (직제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3.11>

제21조 (면직자의 명부제출)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1991.2.1, 2001.1.29>

②제1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78.7.4>

제22조 (면직자의 우선임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에 우선하여 이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제23조 (특수근무지의 범위) 법 별표의 비고 제2호에서 “특수지근무”라 함은 재외 공관에서의 근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2.3.11]

제24조 (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부칙 <제4303호,1969.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6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6호,1972.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2호,1972.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2호,197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1호,1973.6.1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원채용시험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본다.

부칙 <제7867호,1975.11.1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서·벽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부칙 <제7984호,19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0호,1977.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0호,1978.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9호,197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7호,1979.3.3>

이 영은 1979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56호,1982.3.1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 “라”목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호 “마”목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9호를 삭제한다.

15.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국·공립의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의 배치승인
제22조제15항제5호중 “교사임용 및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6. 국립의 각급 학교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8항제2호중 “임용권 및”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동조제14항제2호, 동조제16항제2호, 동조제17항제2호, 동조제18항제1의2호, 동조제19항제2호중 “4급이하”를 각각 “6급이하”로 한다.

제22조제14항제2호 및 제16호, 동조제16항제1호, 동조제17항제1호, 동조제18항제1호, 동조제19항제1호중 “3급공무원”을 각각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파견근무를 한 기간은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372호,19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승급·휴직”을 “승급·전보·겸임·휴직”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19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각각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연수원장”을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동항제3호중 “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을 “소속장학관”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406호,198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3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3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6호중 “교육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감 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7. 교육감 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제9조제2항중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도의 교육위원회간”을 “도간”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3448호,1991.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총장·학장임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총장 또는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이 영에 의한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 · 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임용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13717호,1992.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3860호,19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4167호,199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국립교육평가원과” 및 동조제3항중 “·국립교육평가원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4552호,199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5호,199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⑮내지 <32>생략

부칙 <제15012호,1996.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7호,1997.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9호,199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4호,1999.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용공고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09호,2000.11.28>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07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 본문·제6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4호·제5호,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제5호 및 제21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9>내지 <152>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470호,2001.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 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7930호,2003.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4호,2003.11.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제출일자는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4월 30일을 넘기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②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2장 경력평정

제3조 (평정의 기준)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평정의 기초)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5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제6조 (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7조 (경력종류)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눈다.

제8조 (경력평정기간) 기본경력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20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에는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제9조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경력별 평정점) ①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②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1조 (경력기간계산) 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00.2.23, 2001.7.7>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 한한다)·제2호·제4호·제6호(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다만, 동조동항제5호·제6호(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 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 ②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평정의 채점)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제13조 (평정표) ①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의 관할하에 있는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감과 교사의 경력평정표는 당해 교육장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6조 (평정의 기준)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 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제17조 (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는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교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제18조 (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19조 (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0조 (평정의 예외) ①교육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교육공무원이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③교육공무원이 2월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교육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교육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교육공무원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⑦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연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개정 2002.6.25>

제21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①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비율 또는 나머지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 | | |
|-------------------|-------|
| 1. 수(72점이상) | 20퍼센트 |
| 2. 우(64점이상 72점미만) | 40퍼센트 |
| 3. 미(56점이상 64점미만) | 30퍼센트 |
| 4. 양(56점미만) | 10퍼센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평정의 채점) ①근무성적의 평정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확인자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①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사와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 및 교사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제24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교육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 교육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

한다.

제26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등 인사관리
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 (특별근무성적평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제1절 총칙

제29조 (평정의 구분)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제30조 (평정자와 확인자) 연수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31조 (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①연수성적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②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절 교육성적평정

제32조 (교육성적평정) ①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1.1.29, 2002.6.25>

②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③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연수성적에 대한 평정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장자격연수성적
2.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감자격연수성적
3.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성적중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성적

④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0.2.28, 2002.6.25>

1. 직무연수성적
 - 가.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
 -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18점(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의 평정점은 6점으로 한다)
2. 자격연수성적 : 9점

제33조 (교육성적의 평정점) ①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5>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가.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2. 자격연수성적평정점 = 9점 - (연수성적만점 - 연수성적) × 0.05

②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③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0.2.28>

1.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 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④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2002.6.25>

성 적	평정점
A학점이상	만점의 90퍼센트
B학점이상	만점의 85퍼센트
D학점이상	만점의 80퍼센트

제3절 연구실적평정

제34조 (연구실적평정)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제35조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①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

직 이전의 직위중의 입상실적(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의 입상실적은 교감 자격증을 받은 후의 연구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입상한 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2002.6.25>

1.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도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②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제36조 (학위취득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중의 학위취득실적(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의 학위취득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6.25>

제37조 (연구실적평정점) ①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학위취득실적평정점은 2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6.25>

②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연구대회입상실적은 1년에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입상등급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규모연구대회
1등급	1.00점	0.50점
2등급	0.75점	0.375점
3등급	0.50점	0.25점

③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2.6.25>

박 사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2점
	기타의 학위	1점
석 사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1점
	기타의 학위	0.5점

제4절 평정결과의 보고 및 공개

제38조 (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평정결과의 공개) 제15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제40조 (명부의 작성) ①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제2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의 경우에는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당해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은 55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41조 (가산점)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이 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가산하되,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에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 교육전문직원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01.7.7>

②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7.7>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7.7>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종 동 규정 제8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

당 0.01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08점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④선택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1.7.7, 2002.6.25>

1. 1급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학생 전체가 한센병환자자녀인 학교(분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읍·면·동지역의 농어촌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월 0.01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또는 선박직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9.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생활지도 또는 특별활동지도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서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는 경우

⑤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중의 경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7.7>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2.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 근무경력과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3.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 근무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4.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5.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환자자녀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6.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 또는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7. 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환자자녀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또는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8.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9.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환자자녀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10.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 또는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11. 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 및 실적이 다른 가산점 취득사유와 중복된다고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⑥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⑦가산점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 ⑧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 (명부의 작성권자) ①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7.7>

제43조 (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44조 (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0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때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

제45조 (동점자의 순위결정) ①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순위를 결정한다.

제46조 (명부의 제출) 명부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명부를 작성시기로부터 10일이 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조정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47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

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

부칙 <제15424호,1997.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고,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기본경력은 20년으로, 초과경력은 8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초과경력을 8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구 분	등 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초과경력	가경력	6.00	0.0625
	나경력	5.00	0.0520
	다경력	4.00	0.0416

제3조 (연수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교육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할 때까지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취득한 연구대회입상실적은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4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영에 의한 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에 의한 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의 사이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할 때의 각종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7년12

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719호,2000.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16733호,2000.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교원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으로, “교원연수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일반연수(직무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평정점”을 “직무연수성적평정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호중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②생략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16>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중 교감의 나경력 경력종별란의 제2호 및 장학사·교육연구사의 나경력 경력

종별란의 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92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택가산점의 항목 및 점수의 공개시기)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가산점의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개한다.

제3조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4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적용중인 명부는 200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635호,2002.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2항·제4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적용중인 명부는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3조(신규임용교사의 배치) ①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규임용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신규임용교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원로교사의 배치)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승진임용

제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 승진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별표와 같다.

제6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평정시의 평정

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되, 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근무성적평정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평정하되 남녀 차별적인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조정) ①승진규정 제1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정요소별 평정점의 조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무성적 평정요소별로 4점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 조정하되 근무성적평정 만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무성적 평정점은 승진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사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한 평정요소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및담당업무”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정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 1년전에 조정 요소와 사유를 평정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실적평정대상 연구대회) ①승진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연구대회는 다음과 같다.

1.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대한체육회)
2. 전국교육자료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3.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5.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교육인적자원부)
6.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교육인적자원부)
7. 전국과학전람회/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8.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특허청)
9. 과학교육연구대회(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10.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한국농업교육협회)
11. 교육방송연구대회(한국교육방송원)
12.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 ICT활용교육연구대회(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 특수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15. 전국열린교육연구발표대회(한국열린교육협의회)

16. 올해의스승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교육인적자원부)

②승진규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연구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회입상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하되, 입상편수는 최종 출품작품 수의 40%이내가 되도록 하고, 등급별 입상비율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1:2:3의 비율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대회의 특수성, 예선대회 개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대회 인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구대회심사기준에는 현장교육에의 기여도,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참신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평정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구대회 입상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정한다.

1. 최상위등급 입상실적 : 1등급

2. 차상위등급 입상실적 : 2등급

3. 기타 등급 또는 입상 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는 입상실적 : 3등급

제10조(연구실적 입상 확인 및 기록) 임용권자가 연구대회 입상실적을 교육공무원인 사기록카드에 등재할 때에는 연구대회 개최기관·단체로부터 통보된 입상자명단·등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점) 승진규정 제41조제4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평정 대상기간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당해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2조(교감·원감 및 교장·원장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작성) ①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감·원감 및 교장·원장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 작성시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교감·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 1급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

2. 교장·원장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 : 교(원)감자격연수성적

②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장·원장, 교감·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장 전직임용

제13조(교원의 학교급별 전직) 시·도교육감은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 있는 학교급의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①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임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2.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하되, 전형기준·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6년이상이고 만36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②교장을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한다.

제15조(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①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

- ②교육경력 10년이상이고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속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교원·교육전문직공무원간의 전직 등) ①교육전문직공무원간의 전직이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상호간 또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상호간에 전직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시·도교육감은 교원·교육전문직공무원의 전직 및 인사교류 등에 있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현장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전직 등의 제한)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위해제후 복직된 자
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제5장 전보임용

제18조(전보계획)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보를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보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원전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지역내의 국립학교 소속 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학교의 장은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인사원칙에 따라야 하며,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제19조(전보구역 등) 임용권자는 전보를 함에 있어 거리·교통 등 지리적 요건과 문화시설의 보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인사구역 및 인사구역별 근무기간 등을 정한 전보기준을 전보발령 3개월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정기전보) ①교원의 학교간 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동일직위에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무를 하게 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우”이상이어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실업계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장·교감 및 전문교과 담당 교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1조(비정기전보) 임용권자는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제22조(전직·전보의 제한)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거나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비경합지구에 속하는 학교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생활근거지가 경합지역에 속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전보의 특례)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장·교감중 1인은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여자학교의 교장·교감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전보권자는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 노부모·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24조(휴직의 결정)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휴직기간 연장) 휴직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휴직자 동태파악) ①휴직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

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7장 교육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

제27조(설치) 시·도 교육청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28조(조직)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인사중에서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교원 및 외부인사 3인(위원수가 7인인 경우에는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외부인사에는 당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학부모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9조(회의 소집)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심의 사항) ①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교육공무원의 승진·전직 및 전보 등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3. 임용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장 중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전보
6. 보직 장학관·보직 교육연구관, 초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교장 임용 적격자 선정을 위한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제1항제3호에 의한 교장 중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2.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3. 그 밖에 교장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③제1항제3호중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2. 기타 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교장 중임 또는 원로교사의 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32조(회의결과의 공개) 인사위원회의 회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제8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제34조(설치) 임용권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운영)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부 칙(2003. 8. 21.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4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9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전문직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 이전에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속하고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이상인 자는 교(원)장, 17년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 조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 적용한다.

(별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및 작성권자 (제5조 관련)

승진대상 직명	작성 대상자	작성 단위	작성권자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육인적자원부	장 관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인적자원부	장 관
국립대학교·국립전문대학 소속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인적자원부	장 관
국립직속학교 소속 교장·교감	교감·교사	교육인적자원부	장 관
국립특수교육원 소속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육인적자원부	장 관
국제교육진흥원 소속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국제교육진흥원	원 장
국립대학(교)부설학교 소속 교장·교감	교감·교사	국립대학(교)별	국립대학(교)의 장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시·도교육청별	시·도교육감
시·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장·교감	교감·교사	시·도교육청별	시·도교육감

만든 사람들

이영만(교원정책심의관) 황호진(교원정책과장) 이만호(교육행정사무관) 강병구(교육행정사무관) 이주희(교육행정사무관) 이인석(교육행정주사) 이경남(교육행정주사) 전홍인(교육행정주사보)	이영식(교육연구관) 장인영(교육연구사) 윤승유(교육연구사)
--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발행일 2003년 12월 30일

발행처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B
전화 : 02)720-3318
팩스 : 02)733-8424

인쇄처 선명인쇄(주)
전화 : 02)2288-4743

《무단복제 금지》